

연구보고 2016-09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양미선 이규립 정지운 김정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개년(2006~2010년)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늘린다는 「새로마지플랜 2010」,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도입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2009-2012」과 3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아교육 분야도 공교육 확충을 위해 2007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2012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그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추진 경과와 현황,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공급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 및 평가하며, 공무원 및 원장, 부모 등의 공보육교육 공급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청과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지원센터 등 공보육교육 공급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및 직장어린이집 이용부모,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공무원,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 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9
4. 선행연구	17
5. 용어의 정의	25
II.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과 제도 변화	26
1. 공보육 공급 정책 및 제도	26
2. 공교육 공급 정책 및 제도	47
III. 공보육·교육 공급 및 이용 현황	57
1. 공보육 공급 현황	57
2. 공교육 공급 현황	82
3. 시사점	90
IV.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분석틀 개발 및 평가	92
1. 분석틀 개발	92
2. 공보육 공급 정책 평가	96
3. 공교육 공급 정책 평가	123
4. 시사점	135
V. 공보육·교육 공급 관련 의견 및 요구	139
1. 공보육	139
2. 공립유치원	168
3. 시사점	175
VI. 정책 제언	178
1. 공보육·교육 공급 형평성 제고 방안	178

2. 공보육 공급 정책 개선 방안	181
3. 공교육 공급 정책 개선 방안	187
참고문헌	191
Abstract	200
부 록	203
부록 1. 부록 표	205
부록 2. 조사표	217

표 차례

〈표 I-3- 1〉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조사내용	11
〈표 I-3-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사 응답자 특성	11
〈표 I-3- 3〉 시도 및 시군구 조사 응답자 특성	12
〈표 I-3- 4〉 기관장 조사 조사내용: 직장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13
〈표 I-3- 5〉 직장어린이집 원장조사 응답자 특성	14
〈표 I-3- 6〉 공립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15
〈표 I-3- 7〉 부모 조사내용	15
〈표 I-3- 8〉 부모조사 응답자 특성	16
〈표 I-4 1〉 국가 단위 보육관련 주요 지표	17
〈표 I-4 2〉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변수	18
〈표 I-4 3〉 직장어린이집 편익분석 관련 연구	19
〈표 I-4 4〉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 지표	19
〈표 I-4 5〉 보육정책 평가 관련 선행연구 1	20
〈표 I-4 6〉 보육정책 효과성 평가 선행연구 2	21
〈표 I-4 7〉 유아교육 성과지표	23
〈표 I-4 8〉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24
〈표 II-1- 1〉 공보육 확충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 비교	32
〈표 II-1- 2〉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 상의 주요 지표	32
〈표 II-1-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33
〈표 II-1- 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규모	34
〈표 II-1- 5〉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35
〈표 II-1- 6〉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6
〈표 II-1- 7〉 운영비 지원	37
〈표 II-1- 8〉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 2007~2016	39
〈표 II-1- 9〉 직장어린이집 간접지원	40
〈표 II-1-10〉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41
〈표 II-1-1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	42
〈표 II-1-1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2015~현재	45

〈표 II-1-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2011~2015	46
〈표 II-2- 1〉	공교육 확충 관련 중장기 유아교육 계획 비교	51
〈표 II-2- 2〉	중장기 유아교육계획 추진 상의 주요 지표	52
〈표 II-2- 3〉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	53
〈표 II-2- 4〉	시도별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 개요	54
〈표 II-2- 5〉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56
〈표 III-1- 1〉	연도별 어린이집 수	58
〈표 III-1- 2〉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59
〈표 III-1- 3〉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61
〈표 III-1- 4〉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62
〈표 III-1- 5〉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5년	63
〈표 III-1- 6〉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5	64
〈표 III-1- 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65
〈표 III-1- 8〉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67
〈표 III-1- 9〉	중앙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2011~2015년	68
〈표 III-1-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69
〈표 III-1-11〉	직장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69
〈표 III-1-1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70
〈표 III-1-13〉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71
〈표 III-1-14〉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73
〈표 III-1-15〉	사업장 규모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2014년	73
〈표 III-1-16〉	직장어린이집 운영 형태 및 위탁체 종류	74
〈표 III-1-17〉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	74
〈표 III-1-18〉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현황: 직장어린이집	75
〈표 III-1-19〉	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 실적	75
〈표 III-1-20〉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현황: 2011~2015	76
〈표 III-1-21〉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2016년	77
〈표 III-1-22〉	지역 및 시설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수 및 비율	77
〈표 III-1-23〉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정원, 현원, 보육교사 수	78
〈표 III-1-24〉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항목별 접수 개요	79
〈표 III-1-2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접수: 총점	81

〈표 III-1-26〉	공공형어린이집 예산	82
〈표 III-2- 1〉	연도별 유치원 수	82
〈표 III-2- 2〉	연도별 학급 수	83
〈표 III-2- 3〉	유치원 취원아 수	84
〈표 III-2- 4〉	유치원 취원률	85
〈표 III-2- 5〉	연령별 취원율: 2015	86
〈표 III-2- 6〉	공립유치원 경쟁률	87
〈표 III-2- 7〉	연도별 교육여건 개선 예산 규모	88
〈표 III-2- 8〉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세부사업 예산	89
〈표 III-2- 9〉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	89
〈표 IV-1- 1〉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 분석틀	95
〈표 IV-2- 1〉	공보육 공급정책 성과평가	98
〈표 IV-2- 2〉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	99
〈표 IV-2- 3〉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99
〈표 IV-2- 4〉	향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100
〈표 IV-2- 5〉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101
〈표 IV-2- 6〉	어린이집 이용시간	103
〈표 IV-2- 7〉	취약보육 운영	104
〈표 IV-2- 8〉	취약보육 이용	105
〈표 IV-2- 9〉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아동 수 및 비율	105
〈표 IV-2-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106
〈표 IV-2-11〉	평가인증 유지율	107
〈표 IV-2-12〉	평가인증 통과 점수	107
〈표 IV-2-13〉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점수	107
〈표 IV-2-14〉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점수	108
〈표 IV-2-15〉	1급 보육교사 비율	108
〈표 IV-2-16〉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09
〈표 IV-2-17〉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110
〈표 IV-2-18〉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2016	111
〈표 IV-2-19〉	분석에 사용된 변수	112
〈표 IV-2-20〉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	112

〈표 IV-2-21〉 아동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
〈표 IV-2-22〉 아동 1인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114
〈표 IV-2-23〉 아동 1인당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115
〈표 IV-2-24〉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116
〈표 IV-2-25〉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20인 이하	117
〈표 IV-2-26〉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21~49인	118
〈표 IV-2-27〉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50~79인	119
〈표 IV-2-28〉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80인 이상	119
〈표 IV-2-29〉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산(A)	121
〈표 IV-2-30〉 공공형과 비공공형의 격차(B)	121
〈표 IV-2-31〉 공공형어린이집 편익 총액	122
〈표 IV-2-32〉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이용자의 순편익과 편익비	122
〈표 IV-3- 1〉 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개요	124
〈표 IV-3- 2〉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	126
〈표 IV-3- 3〉 향후 지속 추진 과제	126
〈표 IV-3- 4〉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7
〈표 IV-3- 5〉 공립유치원 취원률	128
〈표 IV-3- 6〉 1개원당 학급수	129
〈표 IV-3- 7〉 유치원 이용 시간	130
〈표 IV-3- 8〉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	130
〈표 IV-3- 9〉 유치원 평가 참여율	131
〈표 IV-3-10〉 학급 당 원아 수	132
〈표 IV-3-11〉 교원 1인당 원아 수	132
〈표 IV-3-12〉 직원 1인당 원아 수	133
〈표 IV-3-13〉 아동 1인당 교육비용	134
〈표 IV-3-14〉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 예산	134
〈표 IV-3-15〉 유치원 아동 1인당 세출비용	135
〈표 V-1- 1〉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및 추가 확충량	140
〈표 V-1-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41
〈표 V-1- 3〉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141
〈표 V-1- 4〉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1+2순위	142

〈표 V-1- 5〉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1순위	143
〈표 V-1-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143
〈표 V-1-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	144
〈표 V-1- 8〉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개요	145
〈표 V-1- 9〉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적정 지원수준: 신축 개소당 330m ² ...	145
〈표 V-1-10〉	국공립어린이집 30% 보육비율의 적절성	146
〈표 V-1-1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 적절성	147
〈표 V-1-1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적절성	147
〈표 V-1-13〉	사업장 만족도 및 효과 높은 직장어린이집 간접 지원 방식 ..	148
〈표 V-1-14〉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 적절성	148
〈표 V-1-15〉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적절성	149
〈표 V-1-16〉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형태 축소 조치의 적절성	149
〈표 V-1-17〉	위탁보육 기준 적절성	150
〈표 V-1-18〉	미이행사업장 이행강제금 인상의 적절성	150
〈표 V-1-19〉	사업장 규모 대비 정원의 충분성 및 증원 비율	151
〈표 V-1-20〉	정원충족률 80% 미만 시 정원충족률이 낮은 이유	152
〈표 V-1-21〉	지역주민 재원 및 대기아동 여부	152
〈표 V-1-22〉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및 이용 위한 이사 고민 여부	153
〈표 V-1-23〉	입소아동 우선순위: 1~5순위	154
〈표 V-1-24〉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 및 입소아동 선정기준	155
〈표 V-1-25〉	직장어린이집 대기 경험 여부	155
〈표 V-1-26〉	직장어린이집 이용 후 변화 및 기여 정도	156
〈표 V-1-27〉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1	157
〈표 V-1-28〉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2	158
〈표 V-1-29〉	직장 근무 결정 및 지속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향	159
〈표 V-1-30〉	일·가정양립 도움 정도	159
〈표 V-1-31〉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부담 절감 규모	160
〈표 V-1-32〉	직장어린이집의 추가 출산 영향정도	161
〈표 V-1-33〉	추가 출산 계획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향 정도	162
〈표 V-1-34〉	추가 출산 계획 및 현 자녀양육 방법의 긍정적 영향	162
〈표 V-1-35〉	사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도와 설치 확대 관련 의견 ..	163

〈표 V-1-36〉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위한 미이용 근로자 지원	164
〈표 V-1-37〉	자녀양육 관련 사업체 지원	165
〈표 V-1-38〉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 '필요하다' 비율 ...	166
〈표 V-1-39〉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적절성	167
〈표 V-1-40〉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	168
〈표 V-2- 1〉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169
〈표 V-2- 2〉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170
〈표 V-2- 3〉	공립유치원 증설 필요지역: 1순위	171
〈표 V-2- 4〉	단설 및 병설유치원 적정규모	171
〈표 V-2- 5〉	17개 시도 학급당 원아수 동일 기준 적용 찬반의견	172
〈표 V-2- 6〉	공립유치원 기본 배치인력	172
〈표 V-2- 7〉	입학 우선순위	173
〈표 V-2- 8〉	입학 우선순위제도 도입 찬반 의견	173
〈표 V-2- 9〉	공공형유치원 도입 찬반 의견	174
〈표 V-2-10〉	공공형유치원 도입 반대 이유	175
〈표 V-2-11〉	공공형유치원 도입 시 중점사항	175

그림 차례

[그림 III-1- 1]	연도별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5	58
[그림 III-1- 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5	60
[그림 III-1- 3]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	61
[그림 III-1- 4]	국공립 공급률·이용률	61
[그림 III-1- 5]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증축률: 2001~2015	62
[그림 III-1- 6]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5	63
[그림 III-1- 7]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2016년 3월 기준	66
[그림 III-1- 8]	어린이집 유형별 1개소당 입소대기 아동 수: 2014~2015	67
[그림 III-1- 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현황	71
[그림 III-1-10]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72
[그림 III-1-11]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분포: 2016년	77
[그림 III-1-12]	연도별 총점	80
[그림 III-1-13]	연도 및 시설유형별 총점	80
[그림 III-2- 1]	유치원 및 학급 수와 설립유형별 비율: 2000~2015	84
[그림 III-2- 2]	유치원 취원아수 및 기관유형별 비율: 2000~2015	85
[그림 III-2- 3]	네이버 트렌드	87
[그림 III-2- 4]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2011~2016	90
[그림 IV-2- 1]	공보육 공급정책 성과 평가	98
[그림 IV-2- 2]	향후 지속 추진 과제	100
[그림 IV-2- 3]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102
[그림 IV-2- 4]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 비율: 2014-2015년	105
[그림 IV-2- 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	109
[그림 IV-2- 6]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111
[그림 IV-2- 7]	아동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14
[그림 IV-3- 1]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 성과평가: 공무원, 원장	125
[그림 IV-3- 2]	향후 지속 추진 과제: 공무원, 원장	127
[그림 IV-3- 3]	공립유치원 취원률	129
[그림 V-1- 1]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비교: 2012, 2016년	140

[그림 V-1-2]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 1+2순위	142
[그림 V-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144
[그림 V-1-4]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이용 및 미이용 부모	158
[그림 V-1-5]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관련 의견	164
[그림 V-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의 '개선 필요' 비율	167
[그림 V-2-1]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169
[그림 V-2-2]	공립유치원 증설지역: 1+2순위	170
[그림 VI-1-1]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설치 지역 현황	180

부록 표·그림 차례

<부록 표 IV-2- 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205
<부록 표 IV-2- 2>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대도시	206
<부록 표 IV-2- 3>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중소도시	207
<부록 표 IV-2- 4>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읍면	208
<부록 표 IV-2- 5>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특광역시	209
<부록 표 IV-2- 6>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시도	210
<부록 표 V-1- 1>	직장어린이집 이용 사유	211
<부록 표 V-1- 2>	어린이집 등원방법	211
<부록 표 V-1- 3>	어린이집 하원방법	212
<부록 표 V-1- 4>	어린이집 등·하원 교통수단	212
<부록 표 V-1- 5>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어려움	213
<부록 표 V-1- 6>	직장어린이집 요구사항	213
<부록 표 V-1- 7>	직장어린이집 계속 이용 의향 및 중단 시 이유	214
<부록 표 V-1- 8>	일·자녀양육 시 어려움	214
<부록 표 V-1- 9>	설치 현황	215
<부록 표 V-1-10>	운영 형태 및 위탁체 유형	215
<부록 표 V-1-11>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216
[부록 그림 III-2-1]	구글 트렌드	205

요 약

1. 서론

-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추진 경과와 현황,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공급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여 평가하며, 공보육·교육 공급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둬.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법 및 제도, 예산, 통계자료,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등을 수집·검토
 -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현황 검토 및 문제점 진단
 -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평가를 위한 분석틀과 세부지표 개발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설치와 공공형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단·중장기 방안 제시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선행연구, 관련법 및 제도 등 고찰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의 승인 통계자료 수집·분석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양미선 외, 2013a, 2014a) 자료 분석하여 어린이집의 이용자 만족도와 아동 1인당 비용 등 산출
 - 어린이집 기본정보와 재무회계 보고 자료 수집하여 지역 및 규모, 민간/가정 시설유형별, 공공형/비공공형 어린이집의 세출 규모와 차이 분석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130명, 시도교육청 전문직 공무원 등 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의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 공립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조사 실시

- 기관장, 이용 부모 등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 실시

2.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

가. 분석틀 개발

-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공동목표를 살펴보면,
 -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부모 비용부담 경감임.
 - 세부목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 직장어린이집은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노동력 창출,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임.
- 적절성,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등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평가요소별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을 실시함.
 - 적절성 지표는 정부의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설계를 살펴봄.
 - 보편성 지표는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효과성 지표는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봄.
 - 효율성 지표는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을 의미함.

나.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

1) 공보육·교육공급정책 평가

- 적절성은 질적 분석과 성과 평가 2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 보편성은 공급률과 이용률, 취약보육 운영률과 이용률, 입소대기아동 비율 등을 산출하여 분석함.
- 효과성은 평가인증률, 1급 보육교사 비율,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어린이집 이

용시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산출하여 평가함.

- 효율성은 아동 1인당 확충 및 설치 예산과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비교 분석함.

2) 공교육 공급정책 평가

- 적절성은 질적분석과 성과 평가를 실시함.
- 보편성은 취원율, 돌봄교실 운영률, 1개원당 학급수를 제시함.
- 효과성은 평가참여율과 유치원 이용시간, 교직원 1인당 아동수, 학급당 원아수를 제시함.
- 효율성은 아동 1인당 교육여건 개선비, 인적자원, 급식관리, 기본적교육활동비 등의 공립과 사립 자료를 분석함.

3. 공보육·교육 공급 관련 의견 및 요구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47.1%임.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많다는 비율은 5%p 정도 증가함.
 - 부족하다는 경우, 추가 확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평균 49.2개소로, 2012년에 비해 무려 7배 정도 많은 수치임.
-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은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각각 34.7%, 30.6%로 대부분임.
 -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비율은 높아지고, 농산어촌과 취약지역은 낮아짐.
-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은 신축과 민간어린이집 전환이 각각 26.0%로 높고, 공공주택어린이집 전환 19.2%,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15.4% 순임.
-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 1, 2 순위를 합산하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이 49.1%, 신축 46.2%, 민간어린이집 전환 39.5%,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32.7% 순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으로 예산부족이 69.2%, 부지 확보 51.0%, 민간어린이집 반대 46.2% 순임.

– 2012년과 비교하여 예산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은 줄고, 민간어린이집 반대와 아동인구 감소는 늘었음.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비율 30%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적절함, 34.6%는 낮음, 9.6%는 높다고 응답함.

나. 직장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인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나 높다는 의견도 20% 내외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 80% 상회함.

세제 혜택 중 사업체 만족도가 높은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50.0%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8.1%,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21.9% 순임.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무상지원보다는 융자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을 삭제한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임

위탁보육 시, 50% 이상의 보육비용 지원과 위탁률 30% 이상 기준에 대해 보육비용 지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81.3%로 높으나, 위탁률 30% 이상은 64.1%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2%로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직장어린이집 규모에 대해 영유아 5인 이상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원장의 60%는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40%는 부족하다

고 응답함.

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이 27.8%로 높고, 보육교사 전공과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25.9% 순임.
- 현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개 항목 모두 걱정하다가 80%대로 높으나, 보육교사 급여 상여분은 낮다는 의견이 11.1%, 교육환경 개선비가 낮다는 의견은 14.8%로 높음.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종일반 1개당 40~50만원, 교육환경개선비는 재원아동 1인당 2~3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높은 선정기준이 44.4%, 낮은 인건비 및 운영비 25.9%, 운영관리 기준 11.1% 순임.

라. 공립유치원 증설

- 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28.6%가 충분하다고 하였고, 특광역시보다 시도에서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반면 원장의 80% 가까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한 지역 1, 2순위를 합하면,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이 높음.
- 공립유치원 적정규모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단설 7.24학급, 병설 2.91학급, 원장은 단설 8.71학급, 병설 3.64학급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순위에 대해 95%가 적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단설이 98.5%로 병설 93.3%보다 높음.
- 공공형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의 70%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원장은 80% 정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 공공형유치원 도입 시, 중점 두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은 회계 투명성 확보 37.7%, 교육의 질 확보 32.1% 순임. 원장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질 확보가 각각 33.3%, 교사의 전문성 확보 23.1%임.

4. 정책 제언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추진
- 적정 공보육·교육 공급률 산출
- 공보육·교육 우선 공급지역 기준 마련
-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수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역균형 배치
 - 보육수급계획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 다변화와 신축비 지원규모 및 단가 현실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설치비 분담비율 조정
-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
 -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능 강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및 의무이행 위탁기준 상향 조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수준 개선
 -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모 사업장 내 지원 대상 근로자 수요 고려
 -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안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규모 고려하여 차등화
 - 공공형어린이집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
- 공립유치원 증설 방안
 -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유아 수 동일 기준 적용
 - 지역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공립유치원 설립 적정 모형 개발
 - 농산어촌에 적합한 공립유치원 규모 및 운영모델 개발
 - 유치원 취학우선순위 제도 도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¹⁾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이후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고, 특히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 하에 2006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2006~2010」(여성가족부, 2006c:1)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10년까지 2,700개소,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늘린다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대한민국정부, 2010)²⁾을 발표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양미선·임지희, 2012:9).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고 대신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이선화되면서(보건복지가족부, 2009a)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연 30개소로 제한하는 등 국공립 확충 정책은 한동안 추진력을 잃었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년 사이에 10%p 이상 늘어나는 등 난립현상이 나타났고(보건복지부, 2011b, 2012c), 여기에 어린이집 급간식 사고와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공공성이 높은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충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및 확충 등을 포함시키는 등 공보육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섰다(보건복지부, 2013e). 2015년 발표

1)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06에서 1984년 1.74로 떨어졌고, 2001년에는 1.3이하로 떨어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39임(통계청, 1983, 1984, 2001, 2015).

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³⁾도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보육 확충에 힘을 실어 주었다(대한민국정부, 2015).

유아교육 분야도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2007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치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공립유치원에 취원 우선순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후 2009년에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적정 규모를 육성하겠다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놓았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2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러한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005년 1,473개소에서 2015년 2,629개소로 증가하였고(보건복지부, 2015c; 여성가족부, 2005), 국공립유치원은 2005년 4,412개원에서 2015년 4,678개원까지 증설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5, 2015). 직장어린이집은 설치기준 완화와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사업장 이행률이 75%까지 상승하였으며, 시설수도 2005년 263개소에서 2015년 785개소까지 늘어났다(보건복지부, 2015c; 여성가족부, 2005b). 또한 2011년 679개소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2015년 1,456개소까지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1b, 2015c).

본 연구는 그간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추진과정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 및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보육·교육 공급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3)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2015년 28%, 2020년 37%, 2025년 4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대한민국정부, 2015).

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및 제도, 통계자료,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2차 중장기보육계획(여성가족부, 2006c, 보건복지부 2013e)과 아이사랑플랜(보건복지가족부, 2009a),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 상에 나타난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등 각 유형별 공급 및 이용 현황,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넷째,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내실화하기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관련 관련법 및 제도와 국내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등의 승인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기존자료 분석

1) 어린이집 관련 자료 분석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a)와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양미선 외, 2013a, 2014a) 자료를 분석하여 국공립과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의 이용자만족도와 아동 1인당 비용 등을 산출하였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시행되는 승인통계

자료로, 전국 영유아 가구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한 표본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수요 및 요구 등 정책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서문희 외, 2012a). 또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국정과제 평가 목적으로 2013년부터 자료를 생산하여 왔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구 중 1,000여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 비용, 요구 등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 분석

공공형과 비공공형 어린이집의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개월 간의 어린이집 기본정보와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 1인당 월 비용을 환산한 후 공공형어린이집 편입 분석을 실시한다. 공공형과 비공공형 어린이집 간 주요 항목별(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지출액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지역 및 규모, 민간/가정 시설유형별 공공형/비공공형 어린이집의 세출 규모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 조사연구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교육청 전문직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직장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원장, 직장어린이집 이용/미이용 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각 조사별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조사

가) 조사 개요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담당공무원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치원 수용계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공무원의 경우,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담당자가 다르

4) 공보육(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및 부모 조사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표본이 소수이고,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조사내용이 부재하여 별도 진행하였다.

기 때문에 해당 질문만을 응답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국공립·직장·공공형 및 공립유치원 공급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설치 및 운영 관련 의견,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I-3-1 참조).

〈표 I-3-1〉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보육	공급 정책 성과평가 및 지속추진의 필요성, 성과 부진 이유 국공립: 국공립어린이집 적정수준, 부족 시 추가 확충 규모, 적정 확충방법, 확충의 어려움,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등
	직장: 의무이행 기준의 적절성,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적정수준, 간접지원 효과, 의무이행형태 기준 조정의 적절성, 위탁보육 기준의 적절성, 이행강제금 상향조정의 적절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공공형: 선정 및 지원기준의 적절성, 운영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 등
유아교육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성과평가 및 지속추진의 필요성, 성과 부진 이유, 공립유치원 적정 규모, 공립유치원 적정 확충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아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제 도입 관련 의견, 공공형유치원 도입 의견 및 찬반 이유, 공공형유치원 선정기준 등
공통	개인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직급 등

나) 조사 결과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사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총 7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3-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55.8(43)	고졸	6.5(5)
남자	44.2(34)	대학졸(3년제 이하)	9.1(7)
직급		4년제 대졸	81.8(63)
9급	6.5(5)	대학원 졸	2.6(2)
8급	28.6(22)	연령	
7급	59.7(46)	35세 미만	40.3(31)
6급	3.9(3)	35~40세 미만	35.1(27)
5급	1.3(1)	40~45세 미만	14.3(11)
		45세 이상	10.4(8)
전체	100.0(77)	전체	100.0(77)

주: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은 시도교육청이 주로 담당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 소수 참여함.

응답자중 절반 이상이 여자이고, 35세 미만 40.3%, 35~40세 미만 35.1%, 40~45세 미만 14.3%, 45세 이상 10.4%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다수인 81.8%을 차지하고, 대학졸(3년제 이하) 9.1%, 대학원 졸이 2.6%이다. 직급은 7급이 59.7%, 8급 28.6%로 7, 8급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3-2 참조).

(2)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조사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교육공무원 중 총 13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여자가 60%로 많고, 연령은 45~50세 미만이 26.2%로 많고, 다음으로 40~45세 미만 21.5%, 35세 미만 20.8%, 35~40세 18.5%, 50세 이상 13.1% 순이었다. 4년제 대졸자가 83.8%로 다수이고, 대학졸(3년제 이하)과 대학원 졸이 각각 6.2%, 7.7%, 고졸은 2.3%로 소수이었다. 직급은 7급이 40.0%, 6급 32.3%, 8급 이하는 27.7% 정도이었다. 교육업무 담당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88.5%로 대부분이고, 3년 이상은 11.5%로 적었다(표 I-3-3 참조).

〈표 I-3-3〉 시도 및 시군구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60.0(78)	고졸	2.3(3)
남자	40.0(62)	대학졸(3년제 이하)	6.2(8)
연령		4년제 대졸	83.8(109)
35세 미만	20.8(27)	대학원 졸	7.7(10)
35~40세 미만	18.5(24)	직급	
40~45세 미만	21.5(28)	9급	8.5(11)
45~50세 미만	26.2(34)	8급	19.2(25)
50세 이상	13.1(17)	7급	40.0(52)
담당업무		6급	32.3(42)
국공립	80.0(104)	교육업무 담당경력	
직장	13.1(17)	3년 미만	88.5(115)
공공형	6.9(9)	3년 이상	11.5(15)
전체	100.0(130)	전체	100.0(130)

2) 기관장 조사: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가) 조사 개요

원장조사는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원장조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 협조로 직장어린이

이집 원장연수에 참여한 원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145명이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 문항이 다수인 9명의 조사표를 제외한 136명의 응답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공립유치원 원장조사도 유치원행정협의회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원행정협의회를 통해 조사개요 및 내용 등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URL) 등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조사기간 중 유치원 방학과 원장 연수 등의 일정으로 조사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고, 조사독려를 위하여 조사업체를 통해 유치원에 조사 참여 독려 전화를 진행하였다.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은 <표 1-3-4>와 같다. 직장어린이집 조사는 사업체 및 설치유형, 설치 및 운영 형태, 입소우선순위, 지역주민 채용 여부 및 아동수, 정원규모의 충분성, 설치 효과 및 목적, 직장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운영 애로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3-4> 기관장 조사 조사내용: 직장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구분	조사 내용
직장어린이집	-사업체유형, 설치유형, 설치장소, 설치형태, 운영형태, 맞춤형 및 종일반 아동수 -입소우선순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우선순위, 지역주민 아동 채용 여부 및 아동수, 대기아동 여부 및 아동수, 정원규모의 충분성, 정원충족률, 정원충족률 낮은 이유 -설치 효과, 설치 목적, 직장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애로
공립유치원	-유치원 일반사항: 기관유형, 연령별 학급수 및 원아수, 재직 교원 수 -성과평가: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향후 지속추진 필요성, 성과 미달 이유 -유치원 설치 및 운영: 공립유치원 적정성, 적정규모, 인력배치, 적정 확충지역, 취원아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제 도입 필요성, 공공형유치원 도입 의견 및 찬반이유, 공공형유치원 선정조건
일반사항	기관특성: 기관유형, 정원, 현원, 지역규모 등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경력, 최종학력, 원장 및 교사 경력

공립유치원 기관장 조사는 공립유치원 성과평가 및 지속추진 필요성, 성과부진 이유, 공립유치원 적정성, 인력배치, 적정 확충지역, 취원아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제 도입 필요성, 공공형유치원 도입 의견 및 찬반이유, 공공형유치원 선정조건 등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기관장 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136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원장 다수가 여자이고, 과반수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현 재직 기간이 3년 미만인 42.1%, 3~5년 이하 27.8%, 6~10년 이하가 16.5% 정도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체 유형은 기업이 41.2%로 다수를 차지하고, 지자체 32.4%, 국가 22.8%이고, 지역은 대도시가 49.3%, 중소도시 39.0%, 읍면지역 11.8% 순이며, 정원은 40~79인 이하가 47.1%, 39인 이하와 80인 이상이 각각 23.5%, 29.4% 이었다(표 I-3-5 참조).

〈표 I-3-5〉 직장어린이집 원장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원장 성별		사업체 유형	
여자	98.5(134)	국가	22.8(31)
남자	1.5(2)	지자체	32.4(44)
원장 학력		학교	3.7(5)
대졸(3년제 이하)	3.0(4)	기업	41.2(56)
4년제 졸	21.5(29)	지역규모	
대학원 이상	75.6(102)	대도시	49.3(67)
원장 현 재직기간		중소도시	39.0(53)
3년 미만	42.1(56)	읍면지역	11.8(16)
3~5년 이하	27.8(37)	정원	
6~10년 이하	16.5(22)	39인 이하	23.5(32)
11년 이상	13.5(18)	40~79인	47.1(64)
전체	100.0(136)	80인 이상	29.4(40)
		전체	100.0(136)

(2)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기관장 조사에 참여한 원장은 총 202명이다. 공립유치원도 여자가 99.0%로 대다수이고, 79.6%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며, 직급은 원감과 원장이 각각 40% 내외이다. 유치원 규모는 단설이 67.2%, 병설 32.8%이고, 유치원 소재 지역은 중소도시가 48.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대도시 31.8%, 읍면지역 19.9% 순이다. 정원은 50명 이하가 13.9%, 51~100명 이하 55.4%, 101~150명 25.2% 정도이다(표 I-3-6 참조).

〈표 1-3-6〉 공립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원장 성별		기관 유형	
여자	99.0(199)	병설	32.8(66)
남자	1.0(2)	단설	67.2(135)
원장 학력		지역규모	
대졸(3년제 이하)	2.5(5)	대도시	31.8(64)
4년제 졸	17.9(36)	중소도시	48.3(97)
대학원 이상	79.6(160)	읍면지역	19.9(40)
직급		정원	
부장교사	14.9(30)	50명 이하	13.9(28)
원감	40.3(81)	51~100명 이하	55.4(112)
원장	38.3(77)	101~150명	25.2(51)
기타	6.5(13)	151명 이상	5.4(11)
전체	100.0(202)	전체	100.0(202)

3) 부모 조사: 직장어린이집

가) 조사 개요

직장어린이집 부모조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 소속 기관장의 협조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 1개소당 각각 5명씩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관장을 통해 해당 부모들에게 온라인주소(URL)를 배포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의 업무효율성, 육아부담 경감 등의 도움정도, 어린이집 이용행태 및 요구 등이다.

〈표 1-3-7〉 부모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의 직장 근무 결정 시 영향정도, 일-자녀양육 병행 도움정도
	직장어린이집 이용 후 변화, 사업자·근로자·아동에 미치는 효과 등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이용 이유, 대기 경험, 미이용 시 추가 지원
미이용 부모	아동 특성: 이용 아동수, 연령,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이용 이유
	부모 특성: 연령, 학력, 취업상태, 직종, 현 직장 근무경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 사용 여부, 가구소득
	어린이집 이용 여부, 어린이집 유형, 직장어린이집 대기 경험, 미이용 이유, 미이용 시 추가지원 여부 및 유형
미이용 부모	아동 특성: 영유아 자녀 수, 연령,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아동 특성: 이용 아동수, 연령,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이용 이유
	부모 특성: 연령, 학력, 취업상태, 직종, 현 직장 근무경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 사용 여부, 가구소득

나)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아버지는 35~40세 미만 52.5%, 40세 이상이 29.7%이고, 4년제 대학이 59.8%이고, 전문대와 대학원 이상이 각각 15% 내외 정도이었다. 95%가 취업상태이고, 95.9%가 정규직이었다. 어머니는 35~40세 49.8%, 35세 미만 37.4%로 30대가 대부분이고, 4년제 대학이 55.3%, 전문대가 22.8%이며, 취업모는 86.8%이고 이중 정규직은 90.4%이다. 가구소득은 500~600만원이 32.9%, 600만원 이상이 31.1%이었다.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의 경우, 아버지는 35~40세 미만 51.5%, 40세 이상이 25.0%이고, 4년제 대학이 60.3%로 과반수 차지하고, 전문대와 대학원 이상이 각각 15% 이상이며 95.6%가 취업상태 이고 이중 95.6%가 정규직이었다. 어머니는 35~40세 45.6%, 35세 미만 42.6%로 30대가 과반수이고, 4년제 대학이 48.5%, 대학원 이상이 26.5%이며, 취업모 82.4%중 정규직은 91.2%이었다. 가구소득은 500~600만원과 600만원 이상이 각각 30.9%이다(표 I-3-8 참조).

〈표 I-3-8〉 부모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연령					직종				
35세 미만	17.8(39)	37.4(82)	23.5(16)	42.6(29)	사무직	58.0(127)	56.6(124)	63.2(43)	57.4(39)
35~40세미만	52.5(115)	49.8(109)	51.5(35)	45.6(31)	생산직	5.9(13)	2.7(6)	4.4(3)	
40세 이상	29.7(65)	12.8(28)	25.0(17)	11.8(8)	전문직	20.1(44)	29.7(65)	19.1(13)	25.0(17)
학력					서비스·판매직	7.8(17)	5.9(13)	10.3(7)	16.2(11)
고졸 이하	8.7(19)	6.8(15)	5.9(4)	7.4(5)	무직	8.2(18)	5.0(11)	2.9(2)	1.5(1)
전문대	16.9(37)	22.8(50)	17.6(12)	17.6(12)	근무형태				
4년제대학	59.8(131)	55.3(121)	60.3(41)	48.5(33)	정규직	95.9(210)	90.4(198)	95.6(65)	91.2(62)
대학원 이상	14.6(32)	15.1(33)	16.2(11)	26.5(18)	비정규직	3.7(8)	3.7(8)	4.4(3)	4.4(3)
취업상태					시간제	0.5(1)	5.9(13)		4.4(3)
취업	95.0(208)	86.8(190)	95.6(65)	82.4(56)	가구소득				
휴직중		9.1(20)		11.8(8)	400만원 미만	17.4(38)		19.1(13)	
재택작업	0.5(1)	1.4(3)			400~500미만	18.7(41)		19.1(13)	
자영업	4.6(4)	2.7(6)	4.4(3)	5.9(4)	500~600미만	32.9(72)		30.9(21)	
미취업					600만원 이상	31.1(68)		30.9(21)	
계(수)	100.0(219)		100.0(68)			100.0(219)		100.0(68)	

라. 집단면담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관장,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도출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보완하였다.

마.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담당관,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석방법 및 연구결과,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4. 선행연구

사회복지 및 교육 제도의 발전 및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 연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가는 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정책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강신욱 외, 2015:49).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및 관련 정책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책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분야

서문희 외(2010, 2011, 2012b, 2013)는 국가 단위 보육관련 주요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4-1〉 국가 단위 보육관련 주요 지표

영역	세부지표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 재정비율, 아동1인당 총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 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수당, 수당지급 교사 비율,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중

자료: 서문희 외(2010, 2011, 2012b,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보육분야 성과지표로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 보육재정, 공급 및 이용, 시간 연장보육, 평가인증, 교사 근무환경 등 7개 영역 19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표 I-4-1 참조).

서문희 외(2014a)는 2004년, 2009년, 2012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조사연도 및 비용지원 수혜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개인단위에서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표 I-4-2〉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효과성 분석 변수

구분	영역	변수
독립변수	시점	조사연도
	비용지원 수혜	보육교육비 등 지원 수혜 여부
	교차항	조사연도와 비용지원 여부의 상호작용
독립/ 통계변수	가구 특성	지역, 가구형태, 자녀수,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아동 특성	연령, 성별, 출생순위, 질병 장애여부
	부모 특성	연령, 학력, 소득, 근로, 질병 장애여부, 유배우 여부, 취업상태
종속변수	기관 이용	기관 이용, 이용시간, 항목별 만족도
	비용 부담	총 보육교육비 및 소득대비 비율, 기관 이용 비용, 기관 이용 비용 부담 인식, 비용 만족도 및 비용지원 정책 만족도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영향에 대한 인식
	추가 출산	추가 출산 의사, 지원이 출산효과에 대한 인식

자료: 서문희 외(2014a).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김미정 외(2012, 2013, 2014)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분석을 2012년부터 3년간 수행하였다.

2012년에는 대기업 설치의무 기업, 2013년에는 중소기업 및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근로자 고용촉진, 직원의 근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증진,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에 따른 아동의 건강한 발달도모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비용 편익분석 자료로 기업의 생산성과 여성고용률을 활용하였다. 2014년 연구는 2013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편익분석을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표 I-4-3 참조).

〈표 1-4-3〉 직장어린이집 편익분석 관련 연구

김미정·원종욱(2013)		김미정·원종욱·윤자영(2014)	
구분	변수	구분	변수
설치·운영 투자비용	초기 설치비, 연간 이자비용, 사업주 부담 운영비, 운영비 사업주 운영비 지원	설치·운영 투자비용	대·중소기업 공동 운영 투자 비용 (초기 시설비, 운영비)
기업의 생산성	자녀 관련 소비시간 절감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후생복지 투자비용
여성 고용률	채용·이직 및 훈련 비용 절감	직접편익	업무 몰입시간, 초임 연봉
		간접편익	자녀양육 관련 월 비용 절감액 어린이집 추가 지불 가능금액 직장 이직 시 필요한 임금 상승액

자료: 김미정·원종욱(2013).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분석.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김미정·원종욱·윤자영(2014).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분석II.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신운정(2008)은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및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통계자료와 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모형을 통하여 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 출산율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표 1-4-4〉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 지표

정책 구분	지표 및 산출기준
현금지원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육지원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정부 지원 전후 보육 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휴가 지원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 총 육아휴직기간 -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자료: 신운정 외(2013).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신운정 외, 2013)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현금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지원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세부정책별 평가지표는 프랑스 사회보장청과 OECD Family database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학계에서도 보육사업의 성과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권기성·강영욱(2006)은 영유아 보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4개 차원으로 설정하고, 유치원 현황 자료와 육아지원 정책 방안, 보육사업안내, 2004년도 보육교육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5〉 보육정책 평가 관련 선행연구 1

연구자	분석자료/조사대상	분석틀	
권기성, 강영욱 (2006)	-유치원 현황(매년도) -육아지원정책방안(2002) -보육사업안내(2000, 2002, 2004, 2005) -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2005)	능률성	취원 아동수비/공공(중앙, 지방정부) 보육예산 취원 아동수비/보호자부담액 취원 아동수비/교사수 취원 아동수비/시설종사자수
		효과성	취원 아동 확대 정도 교사대 적정 아동수의 질적 향상도 보호자 경제활동 참가율 보호자 사회활동 참여율
		형평성	지역별 취원율 계층별 취원율 취원자수 대비 소득증가율 취원자수 대비 보육부담 경감율
		대응성	정부의 재정 대응성 보호자 재정 대응성 지역별 서비스 차별화 소득계층별 재원차별화
백선희 (2009)	-보육통계(각 년도) -보육사업안내(각 년도)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200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 -전국보육실태조사(2002)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2005) -인구사회통계자료	접근성	보육수요 대비 보육공급 현황: 보육시설아동정원/(보육대상아동수×보육수요율)×100 지역별 균형 분포: 읍면동 단위 보육시설공급률
		비용부담 적절성	총 보육재정 중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 질	보육인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 보육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규정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정
		서비스 다양성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
		공공성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의 확대와 수급자 규모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 감독 기능

자료: 권기성·강영욱(2006).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27-53.

백선희(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비판사회정책. (28), 95-14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을 평가한 백선희(2009)는 보육통계, 보육사업 안내,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 전국보육실태조사(2002),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2005), 인구사회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정책의 접근성, 비용부담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다양성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표 1-4-6〉 보육정책 효과성 평가 선행연구 2

연구자	분석자료/조사대상	분석틀	
박미옥 (2010)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2004) 보육통계(2006) 새싹플랜(안)에 대한 공청회 참고문헌(2006)	정책 환경과 투입	보육정책의 성과: 공공보육시설의 현황, 공공보육시설의 아동보육 규모, 보육시설 형태
		정책 과정	취약보육기능: 영아 및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연장형(휴일, 방과후) 공공보육의 재정적 지원: 시설설치 및 규모별 지원
		산출과 환경	보육기능의 효과성 보육비용부담의 능률성 보육서비스의 대응성 소망성: 정책공급의 만족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저렴한 보육비용, 사회성 함양, 보육환경(교사, 질, 위생 등)
박미경, 조민효 (2014)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만0~5세 영유아 가구	종속변수	자녀보육비용
		정책변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통제변수	모 특성요인 가구 특성요인
허아람, 김예린, 김근세 (2015)	OECD 회원국 22개국	종속변수	여성 고용률
		정책변수	보육서비스: 아동의 공식적 보육시설 등록비율(3세 이하), 아동의 유아교육시설 등록비율(3세-5세) 재정지원: 정부지출대비 보육재정지출비율,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현금 및 현물 비율 휴가정책: 모성휴가, 부성휴가(유급), 출산휴가(유급)

자료: 박미옥(2010). 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분석: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55-89.

박미경, 조민효(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허아람 외(2015).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09-344.

박미옥(2010)은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강화 중심으로 보육정책의 실태를 분석

하였다. 정책환경과 투입, 정책과정, 산출과 환경 성과평가 3단계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박미경·조민효(2014)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만 0~5세 영유아 가구자료, 허아랑 외(2015)는 OECD 22개 회원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도 이재무·이재성(2014)은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효율성을 투입과 산출간 대비 비율로 보고, 투입에는 보육예산, 총 교직원수, 보육시설 크기, 보육아동 현원, 산출에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재성·김재일(2014)은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투입과 산출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교직원의 수, 보육시설의 크기,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이며, 산출변수는 총수입이다.

강영욱(2004)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으로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소득요인과 가족형태를 매개변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능률성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입과 산출 비율로 간주하였으며, 투입은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예산 투입에 대한 수혜 아동수이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로서, 보육의 목표를 공공성으로 설정하고, 영유아 보육의 목표를 취원대상 영유아를 최대한 영유아 시설에 취원시킴으로서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형평성은 지역별 영유아의 취원율과 소득계층별 영유아의 취원율 상대적 비중, 취원자를 둔 가구의 평균 소득증가율, 대응성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기대 부담액 등으로 분석하였다.

나. 유아교육 분야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먼저, 나정·장명림(2001)은 OECD 교육지표를 근거로 유아교육 지표를 개발하였다. 투입, 과정, 산출, 배경 4개 영역, 14개 요소, 총 83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투입 영역에는 인적자원과 물리적 환경이 속하고, 과정 영역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운영, 행정지도 3개 요소, 산출 영역은 유아·가정·사회에 대한 효과, 배

경에는 가족 배경, 인구구조,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국가배경 등을 배치하였다.

장명립 외(2007)는 한국의 육아지표를 기초로, 유아교육·보육, 자녀양육 및 영유아 복지 분야 3개 영역, 총 110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중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지표가 58개이며, 각 지표의 개념과 산식을 제시하였다.

〈표 1-4-7〉 유아교육 성과지표

구분	변수	지표명
나정·장명립 외(2001)	투입	인적자원(유아, 교직원), 물리적 환경(기관/학급, 공간), 재정(공교육비, 사교육비)
	과정	교육과정 운영(교육 내용, 교육방법), 기관운영, 행정지도
	산출	유아에 대한 효과(교육기회, 발달, 안전·적응), 교직원에 대한 효과(제직, 급여, 만족), 가정에 대한 효과, 사회에 대한 효과
	배경	가족배경, 인구구조,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국가 배경
장명립 외(2007)	유아교육	기관현황, 교직원 및 종사자,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건강·안전, 부모교육, 교육의 효과,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 비용
최은영 외(2014)	교육재정	유아 1인당 교육예산, 3·5세 유아학비 지원율,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예산,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 지원액, 유아교육 예산 대비 방과후과정 지원 비율
	교육환경	교사 1인당 유아수, 학급당 유아수, 방과후과정 운영비율, 교사 1인당 연수지원액, 연구 및 자료개발 지원율, 사립유치원 교사 월평균 급여, 4년제 대학 출신 교사 비율, 유아교육 전담장학사 수 및 장학사당 담당유치원 수
	교육인프라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현황 및 이용률, 공립 단설유치원 현황, 협력네트워크 현황
최은영 외(2015)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유아교육 재정	GDP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비율, 총 교육재정대비 유아교육 재정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원 급여(공립/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수당액,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 비율
	방과후과정 운영	방과후과정 운영률,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비율

자료: 나정·장명립(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립·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b).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외(2015b)는 2015년 유아교육 정책 성과 평가를 위해 김은영 외(2011)

와 유사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 기타 인프라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 18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육아정책연구소(최은영 외, 2014)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의뢰로 유아교육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성과분석을 교육재정, 교육환경, 교육인프라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다.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정책평가 방법 관련 학술 연구가 소수 수행되었다.

유은수(2008)는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평가기준은 내용상 평가기준과 과정상 평가기준 이분하고, 내용상 평가기준은 정책목표와 정책 대상자, 과정상 평가기준은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집행단계, 정책집행 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1-4-8〉 교육복지정책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평가내용	
내용상 평가기준	정책목표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정책대상자	선정의 공평성
과정상 평가기준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	정책형성의 합리성, 정책결정의 민주성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의 균형성, 환류의 적시성
	정책집행 후 집행단계	정책의 효과성, 정책대상자의 만족도

자료: 유은수(2008).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만(2014)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SWOT분석법과 내용분석, 델파이 조사법 등을 통해 유아교육정책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유아교육정책의 공공성, 민주성, 적합성, 경제성 4개 범주, 13개 평가준거로 구성하였다. 유아교육정책의 공공성은 공익성, 충족성, 책무성, 유아교육정책의 민주성은 수용성, 자율성, 다양성, 유아교육정책의 적합성은 실현가능성, 적시성, 대응성, 지역성, 유아교육정책의 경제성은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이 포함된다.

오석선(2010)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준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대 추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도 지속추진, 구도심 공동화 학교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유도, 지방교육재정의 성과평가 강화 분야에 대한 효과성과 용이성을 분석하였다.

5. 용어의 정의

공보육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개념을 사용한 것은 2005년 보육사업지침에서부터 이다(보건복지부, 2005). 이 당시 정부는 보육정책의 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정하고, 세부내용으로 국공립보육시설⁵⁾ 확충,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양미선 외, 2013b:24).

표갑수(2006:306)는 “공보육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육서비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사인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을 법인화한 시설이거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민간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주요 추진정책으로 지목한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3개 유형만을 공보육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교육

나정·신동주·김재웅(1996)은 공교육의 개념을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것과 교육내용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국가의 관리감독이 따르는 것,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성과 취학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할 경우, 공교육에는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보육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설립·운영하여 관리하는 교육시설로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립유치원을 공교육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5) 본 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수행된 연구는 연구내용에 따라 ‘보육시설’로 표기함.

II.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과 제도 변화

제2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제2차 중장기보육정책 수립 시기까지의 공보육 공급정책 관련 계획과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1. 공보육 공급 정책 및 제도

가. 중장기 보육정책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 하에 2006년부터 중장기보육 계획(여성가족부, 2006c)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각 시기별 중장기 보육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 과제,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관련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사업 초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보육사업 초기, 정부는 2가지 축으로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하였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일반지역은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보건사회부, 1991a).

1991년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충 추진계획을 보면, 1992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등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1995년까지는 빈곤선(평균 가구소비지출 50% 이하) 이하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며, 2000년까지 평균 가구소비지출 60% 이하의 저소득 보육대상 아동에게 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확충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새마을유아원등 기존 시설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충 규

모로 1992년 1,240개소, 1995년 2,010개를 발표하였으나(보건사회부, 1991a:9~10), 실제로 1992년 국공립은 217개소가 신축되었고, 사회복지법인은 425개소가 늘었다(보건사회부, 1991b, 1992b).

1992년에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92~'96) 중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를 포함한 일반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1992년부터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 계층의 보육대상 아동에게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근로 여성의 자녀교육 및 기혼 유희 여성 인력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년도와 달리 정부지원시설 확충 계획이 1991년보다 좀더 현실화 되어서 1992년 300개소, 1993년 135개소, 1994~1996년 연 50개소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사회부, 1992a:11).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확충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3~1997)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을 신경제 5개년 계획('93~'97)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신경제 5개년 계획('93~'97)은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일반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보건사회부, 1994).

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공 보육시설을 1993년 1,637개소에서 1997년까지 2,03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보건사회부, 1994:10).

그러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1995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97년까지 3개년 간 약 1조 3천억원을 투·융자하여 7,590개소를 확충하여 아동 427천명을 추가 보육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방법은 공공보육시설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민간보육시설 확충 유도 3가지이다. 먼저, 공공 보육시설은 지자체별 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읍면동)별 적정 배치 유도 및 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하고, 농어촌 등 보육대상 아동 희소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종교·학교시설 부설 설치를 유도하며, 공단지역 등 중소·영세사업장 밀집지역은 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공사)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둘째, 직장보육시설은 공공기관내 자율적 설치 원칙 내에서 최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법상 설치의무가 있는 대기업은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운영하되 사업주의 비용 의무부담(80/100 이상)은 완화하며, 중소기업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시설비를 최우선 용자지원하고 운영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1995:10-11).

1996년에는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1997년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국가기관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사업주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까지 240개소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보건복지부, 1996:11).

3) 새싹플랜(2006~2010년)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인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편주의 이념의 적용, 공공성 확보, 보육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새싹플랜(2006~2010)을 수립하였다(유승현, 2011).

새싹플랜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이라는 비전 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목표를 세웠고,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5대 정책과제와 20개 세부 추진내용을 담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c).

이중 공보육 공급과 가장 관련된 과제는 공보육 기반 조성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수를 2010년까지 2배로 확충하고, 향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30% 수준까지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국공립보육시설을 20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까지 늘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며,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축비 지원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화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이다(표 II-1-1 참조).

정부는 당시 새싹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6조 4,579억원의 보육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정책과제별로 부모 육아 부담 경감이 53.5%, 공보육 기반 조성 36.7%, 나머지는 각각 5% 내외 정도이었다. 그러나 새싹플랜이 발표될 당시 소요 재원 조달방안이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성효용, 2006).

또한 새싹플랜은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30%까지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두 번째 정책과제인 부모 육아부담 경감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참여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보다는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영아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였지만, 사실상 가정어린이집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법의 비현실성이다. 당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 표갑수(2006:73)는 지방분권에 따른 업무 지방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등의 부담과 정원 미달로 인한 기존 보육시설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여 쉽게 신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편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충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새싹플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가 이상적이고, 추진방법의 실효성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제1차 아이사랑플랜(2009~2012)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새 정부의 선거공약 및 국

정철학과 보육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한 '제1차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마련하였다(유승현, 2011 재인용). 참여정부의 새싹플랜은 '공보육'을 강조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 '국가책임제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의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의 효율화, 보육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등 6대 추진과제와 다양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표 II-1-1 참조).

아이사랑플랜은 기본적으로 새싹플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새싹플랜은 국공립보육시설을 2배로 확충하여 이용 아동의 30%를 수용하고자 하였던 반면,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전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한다는 방향이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이 부모들의 선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민간시설의 질 제고를 통해 모든 시설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0a).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서비스 계약제를 도입·검토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로 구체화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며,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부모협동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직장보육시설에는 세계 지원을 확대하여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민간, 가족, 기업(직장보육),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성희자, 2013).

서문희 외(2012b:18)는 제1차 아이사랑플랜이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면서 부모 요구가 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배치라는 어려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공급체제와 운영자 요구에 무게를 두었고, 이는 정부와 민간과의 신뢰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년)

박근혜정부의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은 제1차 아이사랑플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은 '아이의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 3개 전략과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e). 제2차 아이사랑플랜은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6대 추진과제 중 보육시설 공급 관련 과제는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이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하여 진입 장벽을 낮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질 관리에 있어 민간어린이집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진입·퇴출 등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2차 아이사랑플랜은 현행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부채를 수반한 민간 생계형 시설 진입을 제한하고,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17년까지 약 33%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e).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6)은 민간시설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 제1차 아이사랑플랜과 방향성은 같지만, 공공 투자를 늘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으로 지역별 균등 배치를 위해 2017년까지 총 780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민가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서비스 질 수준 보장을 위해 현행 위탁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계획을 세웠다. 직장어린이집은 건물 신·증축 시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업이 설치 및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 등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며, 의무 미이행 명단 공표제를 강화하고, 정부사업 인센티브 부여 및 의무 이행 대체수단을 정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만족도나 체감도가 높은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위해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과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표 II-1-1 참조).

<표 II-1-2>는 제1,2차 중장기보육계획 및 아이사랑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보육시설 관련 지표 및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은 국공립보육시설 수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2010년까지 각각 2,750개소, 125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육통계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0년

기준 2,034개소이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1,279,91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06년 이후 지원 확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표 II-1-1〉 공보육 확충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 비교

구분	정책과제	세부내용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2006~2010)	공보육 기반 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배치	· 보육수요 추계 통한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 서비스 계약제 도입 검토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부모협동 보육시설 확산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 민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지원 확대 -부모 선호도,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자료: 여성가족부(2006c).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09)-. 보건복지가족부(2009a).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부(2013f).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표 II-1-2〉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 상의 주요 지표

단위: 개소, 만명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		제1차 아이사랑플랜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			
주요 지표	2005	2010	주요 지표	2009	2012	주요 지표	2013	2017
국공립보육시설수	1,352	2,750	소규모 보육시설	10	135	-	-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7	125						

자료: 여성가족부(2006c).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09)-. 보건복지가족부(2009a).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부(2013f).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나. 공보육 설치·운영 및 지원 제도

1)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어린이집 수급계획⁶⁾

6) 지방자치단체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한 경우,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와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의 취약보육 운영비,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a).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와 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능보강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단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국공립시설 신축,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은 <표 II-1-3>와 같다.

<표 II-1-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신축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지원
기존 시설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존 건물 매입·리모델링, 기부 채납 등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 운영
장애아 전문시설 신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
기자재 구입비	연내 준공 가능 또는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또는 민간 시설 매입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범위와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신축은 개소당 최대 330㎡까지 지원한다. 2002년까지 1개소당 264㎡(80평)이었으나 2003년 개소당 198㎡로 줄었다가 2004년 다시 264㎡로 확대되었다. 2005년 지원면적이 개소당 330㎡(100평)으로 늘어난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

지원단가는 2004년까지 1㎡당 725,000원이었다. 2007년 1㎡당 1,093,940원,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보건복지부, 2016a).

2008년 1,201,300원으로 인상된 후 한동안 동결되었다가 2014년 1,270,000원으로 5%p 정도 인상되고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II-1-4 참조).

기존 시설전환비는 2007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7년 국비 최대 216,600천원까지 지원하였는데, 지원단가는 2012년까지 동일하였다. 2013년 최대 지원 한도액이 237,857천원으로 인상되고, 2014년에는 신축비와 동일 인상을 적용하여 251,460천원으로 올랐고, 이후 동결되었다.

〈표 II-1-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규모

구분	신축,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기존 시설 전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비
2003	-198㎡/개소 지원 -725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	-
2000~ 2002, 2004	-264㎡/개소 지원 -725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	-
2005	-330㎡/개소 지원 (495㎡까지 탄력지원)	-	-	-
2006	-330㎡/개소 지원 (396㎡까지 탄력지원) ※국비지원한도액 216,600천원	-	-	-
2007	-1,093,940원/㎡ (국비,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 (216,600천원) 지원	-50,000천원/개소 (신규) -30,000천원/개소 (기존)	-신축: 60,000천원 -민간매입:20,000천원 -신규공동주택:40,000천원 -기존공동주택:10,000천원
2008 -2012	-1,201,300원/㎡ (국비,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 237,857천원(설계용역 비 제외)	상동	-50,000천원/개소 (국비,지방비 포함)	-장애아전문시설신축: 80,000천원 -일반시설신축:60,000천원 -이전 또는 대체 신축: 30,000천원 -민간매입:20,000천원 -공동주택:40,000천원
2013	상동	-국비지원한도액 (237,857천원) 지원	상동	상동
2014	-1,270,000원/㎡ (국비,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 251,460천원(설계용역 비 제외)	-국비지원한도액 (251,460천원) 지원	상동	상동
2015 -2016	상동	상동	상동	-신축(전환등포함):10,000 천원/개소 -공동주택:30,000천원/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00a, 2001a, 2002a, 2003a, 2004, 2005). 보육사업지침.

여성가족부(2006a, 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보육사업안내.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도 2007년부터 지원하였다. 당시 신규분양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다가 2008년 개소당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아전문시설 신축비는 국공립 신축비와 동일한 지원단가가 적용된다. 기자재 구입비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장애아전문시설 또는 일반 시설 신축, 이전 또는 대체 신축, 민간시설 매입, 공동주택 등 설치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신축은 개소당 10,000천원, 공동주택은 30,000천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표 II-1-4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증개축비,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3가지 형태로 지원한다(가).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은 <표 II-1-5>와 같다.

<표 II-1-5>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증개축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단 인근지역 영세시설 우선 선정 지원
시설개보수비	노후화 및 안전성 등 문제 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 영세시설 우선 지원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¹⁾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 필요한 경우
장비비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 영세시설 우선 지원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 필요한 경우

주: 장애아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은 제외함.

1) 다중이용시설내공기질관리법: 연면적 430㎡ 이상 모든 어린이집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증개축비 지원은 2001년부터이고, 개소당 132㎡까지 1㎡당 725,000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범위나 단가는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05년 평당 2,392천원, 2006년 2,480천원으로 인상되었고, 2007년 법정계량단위 변경에 따라 1㎡당 751,440만원으로 지원기준이 개정되었다. 이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시설개보수비는 지원이 시작된 2001년 신축단가의 15%를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 시설 규모, 개보수 필요정도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원단가는 신축단가의 15%를 유지하였다. 이후 이 기준이 유지되다가 2005년 지원단가가 개소당 최대 30,000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7)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의 보육사업안내 참조하여 작성.

있다. 장비비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천원이다. 지원 초창기 개소당 2,000천원 지원하다가 2003년 개소당 2,010천원, 2004년 2,125천원으로 인상된 후 2005년 2,000천원으로 다시 인하되었다. 장비비 지원기준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6 참조).

〈표 II-1-6〉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구분	증개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2000	-	-	-2000천원/개소 (국비,비장비 포함)
2001	-개소당 132m ² -725,000원/m ²	-신축단가의 15%	상동
2002	상동	-시설규모, 개보수 필요정도에 따라 지원 -신축단가의 15%	-2,010천원/개소 (국비,지방비 포함)
2003	상동	상동	상동
2004	상동	상동	-2,125천원/개소 (국비,지방비 포함)
2005	-개소당 132m ² -2,392천원/3.3m ²	-30,000천원/개소당 (국비,지방비 포함)	-2,000천원/개소 (국비,지방비 포함)
2006	-2,480천원/3.3m ²	상동	상동
2007 ~2015	-751,440원/m ²	상동	상동
2016	상동	상동	상동

자료: 보건복지부(2000a, 2001a, 2002a, 2003a, 2004, 2005). 보육사업지침.
여성가족부(2006a, 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보육사업안내.

(2)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이다⁸⁾.

영아교사는 인건비 80%, 유아교사는 30%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2004년까지 소요 현원에 대한 월 보수 총액의 50%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인건비 80%, 유아반 인건비 30% 지원으로 부담이 큰 영아교사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 추가로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 도서벽지 등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 100%를 각 1명씩 지원하고, 그 외 차량운영비를 1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8)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의 보육사업안내 참조하여 작성함.

시설규모별로는 20인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원장 인건비 80%와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취사부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지만 20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원장 인건비는 2004년까지 40인 이상 시설에 한하여 100%를 지원하다가 2005년 80%로 지원수준을 낮췄고, 이후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에 혼합반의 낮은 연령 기준으로 인건비 80%가 지원된다(표 II-1-7 참조).

〈표 II-1-7〉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2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인건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21인 이상 어린이집	- 원장 인건비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 추가지원 : 농어촌, 도서벽지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별도 채용 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 방과후 보육 인건비 50%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 혼합반 낮은 연령 기준 인건비 8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원장(18명 이상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인건비 80% - 보육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인건비 80%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 특수교사 수당 10만원 - 치료사 인건비 100%, 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 9명기준)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 취사부 인건비 1명 100% -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주: 방과후보육은 2004년 이전 지정 어린이집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양미선 외(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46.

프로그램별 지원은 시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이 해당된다⁹⁾.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은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특히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율이 2004년까지 90%이

었으나(보건복지부, 2004), 2005년 80%로 줄어들었다(여성가족부, 2005). 24시간보육 인건비는 2006년까지 인건비 명목이 아닌 월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다가 2007년 24시간보육이 지정제도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여성가족부, 2006a, 2007), 이때부터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80%를 지원하고 있다. 휴일보육은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한다(표 II-1-7 참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전담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며,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 현원 9명 이상,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일 경우 원장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아동 3명 기준으로 2명까지 인건비 80%를 지원하며, 특수교사는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으로 장애아동 9명 기준으로 치료사 1명의 인건비 100%,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취사부 1명의 인건비 100%와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표 II-1-7 참조).

또한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휴가자 대체 교직원은 출산휴가자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및 산재휴직 등의 대체 교직원은 대체교사의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a).

2)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¹⁰⁾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6~7).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은 1991년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1995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전길양 외, 2006:10~12).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의무설치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설치의무 이행수단은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9)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의 보육사업안내 참조하여 작성.

10)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이상이 설치 사업장의 자녀, 또는 정원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자녀이어야 함(보건복지부, 2016a:6).

50% 이상을 부담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수당 지급은 2014년까지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동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의무 이행을 명하고,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7~9).

〈표 II-1-8〉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 2007~2016

구분	설치비				운영비	
	무상지원			유자지원	인건비	중소기업 운영비
	시설 전환비	산단형 시설 전환비	교재교구비 (유구비품비)	시설건립비 매입비,임차비 개보수비,전환비		
2007~2009	단독 1억 공동 2억	-	5천만원 (3년 단위)	단독 5억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월 80만	-
2010	단독 2억 공동 5억	-	3천만원 (3년 단위)	단독 7억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상동	-
2011	상동	-	상동	상동	상동	- 49인이하 120만 - 50-99인 320만 - 100인이상 480만
2012~2013	상동	-	5천만 (교체비 3년 단위 3천만)	상동	월 80만 (중소기업 100만)	- 20인미만 120만 - 20-39인 200만 - 40-59인 280만 - 60-79인 360만 - 80-99인 440만 - 100인이상 520만
2014~2015	단독 3억 공동 6억	15억(90%)	상동	상동	월 80만 (중소기업 120만)	상동
2016	상동	15억(90%) 시설매입비 40%	상동	단독 7억 공동 9억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상동	- 40인미만 200만 - 40-59인 280만 - 60-79인 360만 - 80-99인 440만 - 100인이상 520만

주: 1) 무상지원(시설전환비,교재교구비)는 대기업 소요금액의 60%, 우선지원기업 및 영아 장애아어린이집 80%임.
 2) 유자지원 시, 토지매입비는 유자대상에서 제외, 이율 대기업 2%, 중소기업 1%임.
 3) 인건비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대상으로 1인당 월 상한 지원금액임.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보육사업안내.

정부는 사업장의 법적 책임성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치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용자지원 2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시설전환비, 산단형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 등은 무상 지원되며,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는 용자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1a, 2012a, 2013a, 2014a, 2016a). 무상지원 세부항목인 시설전환비 지원한도는 2016년 기준 단독 3억, 공동 6억원이다(보건복지부, 2016a). 2013년까지 단독 2억/공동 5억을 지원하였으나 설치 독려를 위하여 2014년 각각 1억원씩 상향 조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2014). 산단형 시설전환비는 2014년 신설된 지원 항목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5억이며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40%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a, 2015a, 2016a). 교재교구비는 지원단가가 2011년까지 3년 단위 3천만원 지원에서 2012년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1a, 2012a). 용자지원은 2015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단독 7억원까지 지원하였다가 2016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단독 7억, 공동 9억으로 지원금이 늘었다(보건복지부, 2015a, 2016a). 운영비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이 두드러진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인건비 1인 80만원에서 100만원, 2014년에는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2014). 이 외에 어린이집 매월 말일 현원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이 세분화되었으며, 지원금 상한선이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정부 지원 상한액이 높아지고, 중소기업 운영비와 산단형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II-1-8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 외에 간접지원도 이루어진다. <표 II-1-9>와 같이,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 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의 필요경비 인정 등이다(보건복지부, 2016a:11).

<표 II-1-9> 직장어린이집 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8.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

특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자료: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또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물류단지, 과학연구단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은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7개소 이상 구성된 사업주 단체인 경우 가능하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개 이상이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는 <표 II-1-10>에 제시하였다.

<표 II-1-10>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구분	지원종류	한도액	지원비율
무상지원	시설건립(전환)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40%
	교재교구비	-5천만원(교체비: 3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용자지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 이율 1%

자료: 근로복지공단(2016a). 직장어린이집 등 지원사업안내 브로슈어.

보건복지부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간연장보육 지정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2006년까지 민간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부터 정부지원시설 보수기준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다(보건복지부, 2016a; 여성가족부, 2006a, 2007).

3)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우수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¹¹⁾(보건복지부, 2016a:377).

가) 선정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11) 이하 내용은 보건복지부(2016b).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II-1-1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표

배점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점수	35			35			35			35			35		
○ 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35			35											
○ 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0			32											
○ 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28			30											
○ 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5			28											
○ 평가인증 점수 90점~100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환산점수=(평가인증총점·90)+25)							25~ 35			25~ 35			25~ 35		
□ 놀이터 구비 (기본 신청자격)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본 신청자격)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	10		20	10		20	8		20	8		20	5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20			20			20			20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			15			10			10			10		
○ 관리동 어린이집										10			10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			10			5			5			5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			5			0			0			0		
○ 월임료 및 용·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3			2			2			2			2
○ 월임료 및 용·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			3			5			5			5
○ 월임료 및 용·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			7			8			8			
○ 월임료 및 용·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			10									
□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2	5	35	5	5	35	6		35	8		35	8	
○ 1급 보육교사 비율	20			30			30			30			30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20			30			30			30			30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14			24			24			25			25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8			13			13			15			15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			5			7			7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				0			0			3			3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			5			5			5			5		
- 15년 이상	10			5			5			5			5		
- 7년 이상 15년 미만	7			3			3			3			3		
- 7년 미만	5			1			1			1			1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2	5		5	5		6			8			8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 당 1점 감점			최대 5			최대 5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2			3			3			3			3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한 보육 교사가 60% 이상										1			1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			1			2			2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			2			2			2		

(표 II-1-11 계속)

배점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기 본	가 점	감 점	기 본	가 점	감 점	기 본	가 점	감 점	기 본	가 점	감 점	기 본	가 점	감 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0			5			8	3		6	3		6	3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보육 중							8			6					
- 4개 실시							8								
- 3개 이상 실시										6					
- 3개 실시							6								
- 2개 실시							4			4					
- 2개 이상 실시	10			5											
- 1개 실시	7			3			2			2					
- 미실시	4			1			0			0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6	
- 장애아보육 실시														3	
- 시간연장보육 실시														2	
- 휴일보육 실시														1	
○맞벌이 자녀 재원을							3			3				3	
- 50%이상(*농어촌 40% 이상)							3			3				3	
- 40%이상 50%미만(*농어촌 35%이상 40%미만)							2			2				2	
- 30%이상 40%미만(*농어촌 30%이상 35%미만)							1			1				1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4			4										
- 모두 공개		4			4										
- 3~4개 공개		1			1										
- 3개 미만 공개					0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			5			2			4				4	
<input type="checkbox"/>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			3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		3				3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			3	5			5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여부															1
<input type="checkbox"/>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 대 10			최 대 5			최 대 5		최 대 5
계	100	12	15	100	28	15	100	20	11	100	21	8	100	16	9

자료: 보건복지부(2012b, 2013b, 2014b, 2015b, 2016b).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20-21.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위해서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

상이고,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준수 등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기본요건이 갖추어지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단,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점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표 II-1-11>과 같다. 평가인증,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기본 점수와 가감점 등이 배점되어 있다. 주요 항목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인증 점수는 2011년에는 평가인증 점수 배점을 85점 이상으로 하되, 85점 미만은 기본 점수 35점을 주고, 85점 이상이면 모두 45점을 부여하며 90점 이상은 5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었다(서문희 외, 2014b). 2012년에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에 대해서만 25~35점을 배점하였고, 2014년에는 평가인증 총점을 산식(환산점수=평가인증총점-90+25)에 따라 환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부여하였다.

건물소유형태는 2011년 기본점수 20점에 보육료 수입 대비 월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에 따라 감점 2~10점을 부여하였으나, 단계적으로 감점을 줄이고, 기준도 세분화하다가 2016년에는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과 5%이상~10% 미만을 각각 2, 5점으로 조정하였다.

반면에 보육교직원 전문성은 2011년 기본점수 30점에 가점 2점과 감점 5점이 배점되어 있었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가점을 5점으로 높였고, 2014년에는 다시 6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점은 없었으며 2015년에는 8점까지 높였다. 또한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은 2011년 10점이 배점되어 있었으나 2012년 이후 5점으로 배점을 낮췄다. 이 외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항목은 가점을 8점까지 올리고 감점은 2014년 삭제하였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는 운영 중인 서비스 개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취약서비스 유형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2014년에 맞벌이 자녀 재원을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과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등은 2013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는 2016년에 추가되었다. 이에 반해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과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은 2013년 신설되었다가 이후 제외되었다.

나) 지원 기준

(1) (신) 운영비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체계가 교사 수에 관계없이 아동 정원에 따라 지급됨에 따라 어린이집 규모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문희 외, 2014b), 운영비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 운영비 기준은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및 지급하는 방식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3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b).

(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종일반 개소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종일반이 아닌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보육 등은 제외한다. 겸직 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 장애아종일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전담교사 인건비도 기존대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b).

(나) 유아반 운영비

유아 혼합반을 포함하여 만 3~5세반 개소당 6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만 3세반, 3~4세 혼합반의 경우 현원 8인 이상은 60만원, 현원 5~7인은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만2~3세 혼합반은 대상이 아니다. 만 4세반, 5세반, 4~5세 혼합반의 경우 현원 11인 이상은 60만원, 현원 5인~10인은 3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6b).

〈표 II-1-1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2015~현재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35만원	종일반 1개당	- 현원 1명당, 담임교사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장애아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 현원 8인 이상인 반(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 수를 채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준(방과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16b).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매뉴얼.

(다) 교육환경개선비

재원아동(현원) 1인당 1.5만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을 지급하며,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200명까지 인정)(보건복지부, 2016b).

(2) (구) 운영비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운영비가 지원된다. 2013~2014년 사이에 선정된 어린이집 중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방식으로 운영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한 기관에 대해 적용하며, 운영비 지급월 직전 6개월 평균이 정원충족률 80%(농어촌 50%)를 충족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운영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부터 124인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뉘고, 월 116~87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정원 구간별 중앙값을 적용하여 아동 1인당 지원액을 산정하면, 아동 1인당 6~9만원 정도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보건복지부, 2016b)(표 II-1-13 참조).

〈표 II-1-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2011~2015

정원	단위: 만원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아동 1인당		9.0	6.4	8.1	6.8	7.0	6.3	8.0	7.2	7.1

주: 아동 1인당 비용은 월 지원액을 구간 평균 정원으로 나눈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b).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매뉴얼.

다)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형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85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되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 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된 다음 월부터 담임교사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다. 다섯째,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시 30분까지 의무운영(아동이 하원한 경우에도 19시 30분까지는 당직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수요에 대비) 해야 하며, 지역 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해서는 안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된다. 여섯째,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곱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은 가능하다.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b).

2. 공교육 공급 정책 및 제도

가. 공교육 공급 정책

1)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로 인해 생활이 안정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6년 정부는 공립유치원을 서울에 4개원, 부산에 1개원 최초 설립하였고,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전국 69개 초등학교에 병설 시범유치원을 설치·운영하였다(이상금, 1992:157; 임재택, 1992:11). 특히, 1981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아교육에 개입한 해'로 일컬어진다(나정·장명림·이은주, 1994:7).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유아교육진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 대도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쇄하고 낙후된 읍면지역 유아가 우선적으로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을 확대하였다(나정·장명립·이은주, 1994:8). 이로써 1970년대에 6개였던 공립유치원은 1980년대 말 해마다 500여 개원씩 증가하여 1992년에는 4,600여 개원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연구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정·천세영·장명립(1996)는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공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를 포함시켰다(나정 외, 1996). 1997년 6월 2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에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이 포함되었으며(나정, 1997; 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 1997), 1999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유아가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관심을 가져왔다(이보미, 2010). 이후 나정·유희정·김정래·김안나·박은실(2001)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저소득층이 있는 읍면지역에 대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나정·장명립, 2001). 그러나 이 시기는 이제 막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 입안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2)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7~2011)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유아에게는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을 제공하며, 최적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3대 과제와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유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 유치원 확충과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를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 우선순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취지로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은 2007년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보육계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위 19개의 세부과제 중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의 하나인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 확대’ 방안이 보육계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이일주, 2007:1). 이 사안은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인 ‘2세 유치원 취원 허용’(2014, 3단계 중 1단계 과제)으로도 이어져 다시 제안된 바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불합치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 또한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3) 유아교육 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선진화는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3대 목표와 3대 세부 추진전략, 5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는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 규모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학생감소로 발생한 학교 유휴시설은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활용하며, 농산어촌은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완화하며, 직장보육시설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한다는 추진 내용도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교육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아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더불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의무 규정 제시를 촉구하였다(한겨레신문, 2010. 7. 23 기사).

황해익·김병만(2011:261)은 공사립유치원 교원은 정부가 제시한 여타의 정책 분야에 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현장의 교사들이 추진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과정 자율화와 책무성이라는 용어가 추진계획에 핵심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설명이나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

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지현, 2011:286).

김은영·최은영(2012:119-120)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2년이 경과된 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전문직, 교사와 원장,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명료한 편이고 추진계획 내용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선진화 정책 방향이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정책 전달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둘째, 추진계획의 하위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특히,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이 포함된 유아학비부담경감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우수교원 배치 및 활용이 가장 낮았다. 셋째, 필요성도 유아학비부담경감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은 유아교육의 질을 전격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장의 기대와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기대를 모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과제별 추진 내용 및 향후 집행 계획을 재정비하는 평가 작업의 결과로서 발간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실적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유아학비부담경감' 분야 중 핵심과제인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은 정상추진 및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지부진한 추진현황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 26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은 향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으로 흡수 및 통일되었다(장명림·황성온·김미나, 2012:32). 이로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은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비전으로 세우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2대 목표와 5대 분야 2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a).

유아교육 기회 확대 추진을 위해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사립유치원 설치 비율 균형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에 직장유치원 설립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명립 외(2012)는 2013-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추후 5년마다 지속적으로 제시될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 영역 중 '공공인프라 확대 및 기관 관리, 지원 강화'를 정하고 핵심내용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을 2~3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2012년 22.3%인 원아 분담율을 매년 2.5%p씩 증가시켜 3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등 새롭게 유아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농어촌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를 마련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추진된 후 정책 실행 정도를 평가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표 II-2-1〉 공교육 확충 관련 중장기 유아교육 계획 비교

구분	정책과제	세부내용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접근성 제고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위주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설치 · 공립유치원의 취원 우선순위 적용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 도시지역 한계사립유치원 정상화 ·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 당해기관 내 부설유치원 자율설립 · 직장보육시설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유아수용계획수립 · 유치원 수용계획 위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3a).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서문희 외(2014a).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2>는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상에 나타난 공립유치원 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2-2〉 중장기 유아교육계획 추진 상의 주요 지표

단위 : 개원, 명, 억원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¹⁾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주요지표	2007	2011	주요지표	2013	2015
공립유치원수	4,445	4,499	무상교육 대상 확대 ²⁾	15,879	38,850
공립유치원 원아수	118,161	125,855			

주: 1) 2009년 12월 세부계획 범제화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추진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추진계획의 실행 기간이 중복됨.

2): 5세아 무상교육은 '97년부터, 3·4세아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12년 3월 범제화됨

자료: 교육부(20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내부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11). 교육통계연보.

나. 유치원 설치

1) 유아수용계획

유치원 설치에 유아교육법 제8조에 법적근거를 둔다. 동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법 또는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11.30. 인출).

이는 2012년 3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 방식이 이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된 것이며, 예외적 금지 조항에 유아수용계획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은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으로 전환, 통폐합의 경우는 수요조사 결과

와 관계없이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유아수용계획수립 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학 권역내 유치원 취학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학수요에 부합하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사립유치원 설립, 변경 인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취학 권역내 유치원 취학수요가 전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수요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3b).

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정부는 2013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를 개정하여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으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11.30인출).

〈표 II-2-3〉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

구분	내용
조사 시기	- 유아수용계획 수립 전(3년마다 또는 필요시)
조사의 지역적 범위	- 취학권역별 실시 원칙
조사 대상	-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5세(만0세~만4세 권장) 영유아 보호자
조사 항목	-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및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 기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사에 따른 요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조사 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하되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내**에 있어야 함 *취학권역내 취학 수요조사 대상자 수가 표본 수보다 적은 경우(예 : 표본 수가 500명인데 전체 취학 수요조사 대상자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 등(예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 범위내) - 필요시 전문조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b).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포함.

이 외에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표 II-2-3>과 같이, 조사시기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에 따른 요청, 조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시기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취학권역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0~5세(0~4세 권장) 영유아 보호자를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조사항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유치원 취학희망 여부와 취학희망 유치원의 유형으로 구성하며, 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2-4>는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4년 사이에 실시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2-4〉 시도별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 개요

시도	수용계획 수립기간	주민등록인구 (기준시점)	조사시기	조사대상	표본설계	표본수	조사 방법
서울	2013-2015	-	2013.10.10	만0~4세	권역 및 연령별 균등 배분	41,611	전화
	2014-2016		-11.30	영유아 보호자			
	2015-2017						
	2016-2018						
부산	2014-2016	-	2013.9.3 -9.23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9,500	전화
대구	2014-2016	126,424 (2013.4.1)	2013.12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	전화
인천	2014-2016	-	2013.7.3 -7.27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4,007 전화2,004, 면접1,915, 보완88	전화, 면접
광주	2013-2018	71,734 (2012.12)	2013.3.4	만0~4세	지역별 체계적 표본추출	1,500	전화
	2017-2019		-3.12	영유아 보호자			
대전	2014-2016	-	2013.11.19 -12.6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무작위 할당표집	5,585	전화
울산	2014-2016	58,180	2013.9.5 -9.17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구별 취학권역별, 동별 비례추출	1,727	전화
세종	2014-2016	6,422 (2013.4)	2013.5.9 -5.24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6,422	가구방문 면접
경기	2014-2016	0~4세633,899, 세대주512,671 (2013.8)	2013.11.5 -12.12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취학권역별 읍면동 층화계통추출	56,749	가구방문 면접

(표 II-2-4 계속)

시도	수용계획 수립기간	주민등록인구 (기준시점)	조사시기	조사대상	표본설계	표본수	조사방법
강원	2014-2016	만0~4세 62,722 (2013.12)	2014.4.22 -5.13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취학권역별 층화계통추출	1,734	우편
충북	2014-2016 2015-2017 2016-2018	-	-	-	-	-	-
충남	2014-2016	-	2013.8-12	만0~5세 영유아 보호자	-	-	우편, 전화
전북	2014-2016	81,465 (2014.3)	2013.10-12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표본조사, 전수조사(표본 수보다 대상자 수 적은 지역)	23,874	전화 (정읍우편 병행)
전남	2014-2016 2015-2017 2016-2018	-	-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	전화, 우편
경북	2014-2016	-	2013.7-8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	-
경남	2014-2016 2015-2017	-	-	-	-	-	-
제주	2013~2016	28,990 (2012.12.31)	2013.10.2 -10.31	만0~4세 영유아 보호자	-	3,069	-

주: 충북, 경남은 유아수용계획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시도교육청(2013, 2014, 2015, 2016a),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내부자료.

수용계획 수립기간은 2013~2016년까지 수립하고 있다. 서울은 3년 단위의 수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만0~4세 영유아 보호자이고, 표본설계 및 표본수, 조사방법 등은 교육청에 따라 취학수용조사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다르다.

3) 학급 편성기준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 원장은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적근거에 따라 각 교육청은 매년 학급당 원아 수를 정하여 발

표하고 있다. <표 II-2-5>는 2016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과정의 경우, 만3세는 학급당 12~20명으로 지역 간에 5명 정도 차이가 난다. 충북 외 학급당 12~15명으로 가장 적다. 경북은 학급당 원아수가 공립 16명, 사립 18명으로 공사립 간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관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주가 학급당 20명으로 가장 원아수가 많다. 만4세는 학급당 20~26명, 만5세는 학급당 21~28명으로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II-2-5>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단위: 명

구분	기본과정			방과후과정			혼합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서울	17	23	27		20		22	22	22
부산	18	26	28	18	26	28	22	26	24
대구	18	24	28	18	24	28	20	24	26
인천	18	26	28		20 내외		24	24	24
광주	18	22	25	18	22	25	22	22	22
대전	15	23	27	15	23	27	23	23	23
울산	18	24	28	18	24	28	24	24	24
세종	15	20	25	15	20	25	24	24	24
경기	16	22	26	16	22	26	16	22	20
강원	16	22	24		20 내외		16	20	18
충북	12~15	17~20	21~24	12~15	17~20	21~24	8~20	8~20	8~20
충남	15	20	25	15	20	25	25	25	25
전북	16	20	25	16	20	25	18	24	18
전남	15	20	23	15	20	23	시: 22, 읍면: 18		
경북	공립:16 사립:18	22	28	공립:16 사립:18	22	28	26	26	26
경남	16/19	24/25	26/28	16/19	24/25	26/28	22/24	22/24	22/24
제주	20	22	26	별도 기준 없음			20	22	18

자료: 시도 교육청(2016c).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내부자료.

혼합연령은 단일연령보다 높은 학급당 원아수가 편성되어 있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연령과 상관없이 혼합연령 편성기준이 동일하다. 전남은 시와 읍면지역이 각각 학급당 22명, 18명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 주고 있고, 충북은 8~20명으로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Ⅲ. 공보육·교육 공급 및 이용 현황

제3장은 공보육교육 공급 현황과 예산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기관 수 및 이용 아동수 등 공급률과 이용률 등을 살펴보고, 미설치지역, 입소대기아동, 입학경쟁률, 예산 등을 제시하였다.

1. 공보육 공급 현황

1절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및 예산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a).

1) 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5년 기준 2,6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2%를 차지한다. 어린이집 수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3,690개소에서 2015년 42,517개소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는 절반도 채 못 미친다(보건사회부, 1991b; 보건복지부, 2015c)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991년 13.6%로 10%를 상회하였다(보건사회부, 1991b).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정부의 국민연금 용자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공립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5%대까지 하락한 후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2013년부터 추진된 박근혜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전략'¹²⁾에 힘입어 2015년 국공립 비율은 6%대에 진입하였다.

〈표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수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785	155
(비율)	(100.0)	(6.2)	(3.3)	(2.0)	(34.4)	(51.9)	(1.8)	(0.4)
2014	43,742	2,489	1,420	852	14,882	23,381	692	149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401	74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
1995	9,085	1,029	928	2	3,175	3,844	87	-
1991	3,690	503	-	-	12,371	1,931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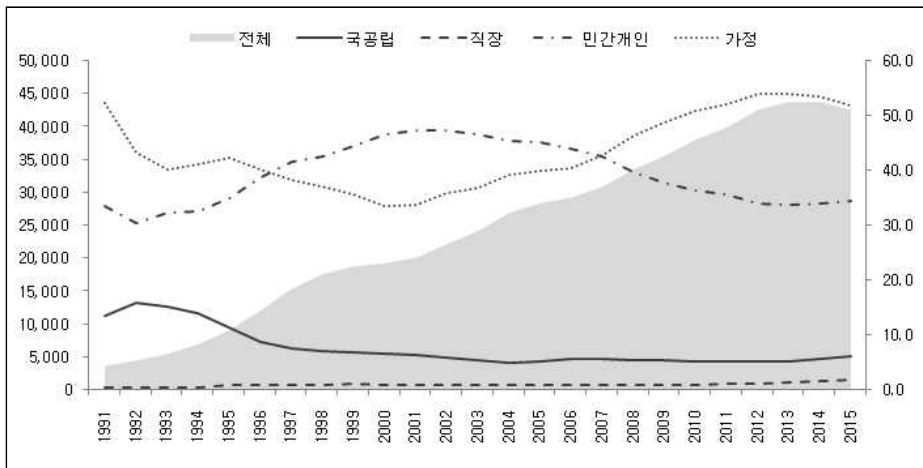
주: 법인단체, 민간개인 어린이집 미분류

자료: 보건사회부(1991b).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b, 2000b,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그림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5

한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2015년 각각 34.4%, 51.9%로 전체 어린이집의

- 1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추가 확충하는 계획을 말함(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16).

85% 이상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5c). 민간어린이집은 1991년 전체 어린이집의 33.5%에서 2002년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으나(보건사회부, 1991b; 보건복지부, 2002), 2006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30%대로 떨어졌고(여성가족부, 2006c)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어린이집과 정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0~5세 전체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c).

2) 이용 아동 수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65,743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11.4%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91년 9만명에서 2015년 16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991년 3만 7천명 정도에서 4배 정도만 늘어났다(보건사회부, 1991b; 보건복지부, 2015c).

〈표 III-1-2〉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구분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5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4,765	4,127
(비율)	(100.0)	(11.4)	(6.9)	(3.2)	(51.5)	(23.7)	(3.1)	(0.3)
2014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9,265	3,774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
1991	89,441	37,017	-	-	36,099	15,613	712	-

자료: 보건사회부(1991b).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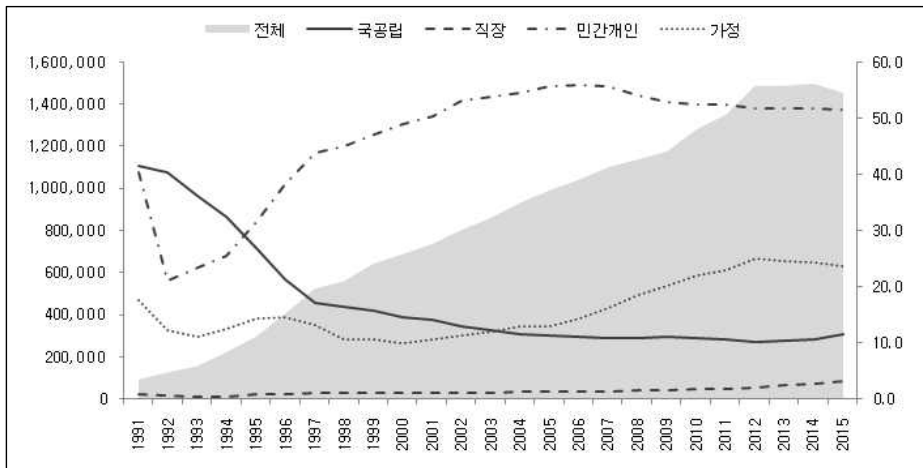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b, 2000b,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991년 41.4%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5를 차지하였으나(보건사회부, 1991b), 1995년 국민연금 융자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늘면서 이용 아동수가 크게 증가하자 국공립 이용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보건사회부, 1991b).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7년 10% 대까지 떨어진 후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b). 최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국공립 비중이 2015년 11.4%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다(보건복지부, 2015c).

이에 반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국공립과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2015년 기준 민간개인 747,598명, 가정 344,007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4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5c). 민간어린이집은 2001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50%를 넘어선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이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01b). 가정어린이집은 1991년 17.5%에서 2000년 9.9%까지 하락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보건사회부, 1991b; 보건복지부, 2000b).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2년 이용 아동수가 25%까지 늘어났으나, 이듬해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c, 2013c).



[그림 III-1-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및 유형별 비율: 1991~2015

3) 공급과 이용

0~5세 영유아 수는 2015년 기준 총 3,187,718명이다(보건복지부, 2015c). 출산

을 하락¹³⁾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2010년 320여만명에 비해 2만명 정도 줄었다(행정자치부, 2010,2015). 전체 영유아수 대비 공급률과 이용률을 산출하면, 2015년 각각 56.2%, 45.6%이다. 그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2012년 0~2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2015년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표 III-1-3〉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단위: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0~6세)	어린이집				국공립			
		정원	현원	공급률	이용률	정원	현원	공급률	이용률
2015	3,187,718	1,790,821	1,452,813	56.2	45.6	188,661	165,743	5.9	5.2
2014	3,210,156	1,800,659	1,496,671	56.1	46.6	179,939	159,241	5.6	5.0
2013	3,264,476	1,782,459	1,486,980	54.6	45.6	170,050	154,465	5.2	4.7
2012	3,265,160	1,721,917	1,487,361	52.7	45.6	162,926	149,677	5.0	4.6
2011	3,212,933	1,621,948	1,348,729	50.5	42.0	157,478	143,035	4.9	4.5
2010	3,208,694	1,556,808	1,279,910	48.5	39.9	153,792	137,604	4.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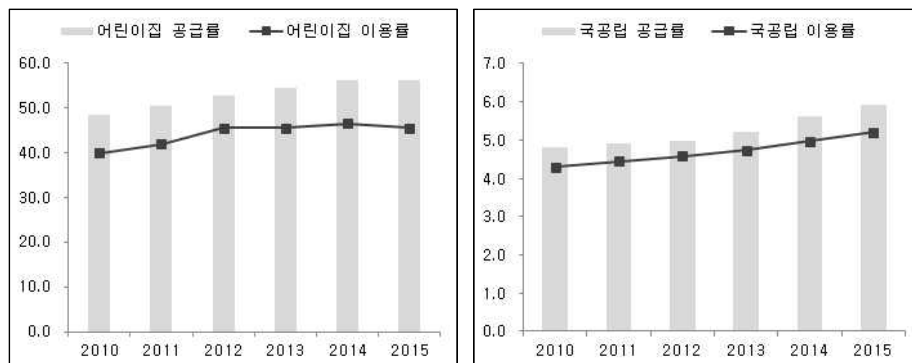
주: 공급률은 정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이용률은 현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전체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은 2015년 5.9%, 이용률은 5.2%로 2008년에 비해 1~2% 정도만 상승하였다(여성가족부, 2008b; 보건복지부, 2015).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 이용률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다.



[그림 III-1-3]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 [그림 III-1-4] 국공립 공급률·이용률

13)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임

4) 정원 대비 현원

<표 III-1-4>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로, 2015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1.1%, 국공립은 87.9%이다(보건복지부, 2015c). 국공립어린이집은 2001년 95.2%에서 2010년 90% 이하로 떨어졌다가 보육료 지원 확대로 90%선까지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01b; 보건복지가족부, 2010).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 86.4%까지 상승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2c),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4>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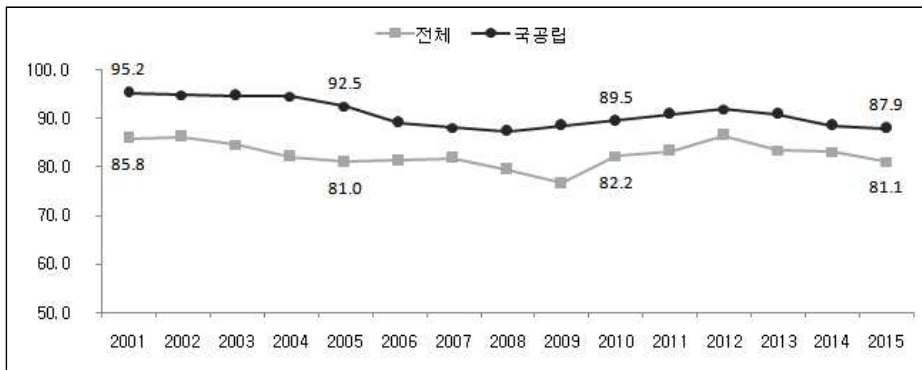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 가정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인	가정
2015	1,790,821	1,452,813	81.1	188,661	165,743	87.9	79.4	86.1
2014	1,800,659	1,496,671	83.1	179,939	159,241	88.5	81.9	87.1
2013	1,782,459	1,486,980	83.4	170,050	154,465	90.8	82.1	86.0
2012	1,721,917	1,487,361	86.4	162,926	149,677	91.9	84.9	90.9
2011	1,621,948	1,348,729	83.2	157,478	143,035	90.8	82.0	84.9
2010	1,556,808	1,279,910	82.2	153,792	137,604	89.5	81.1	83.3
2005	1,221,006	989,390	81.0	120,969	111,911	92.5	81.5	67.4
2001	855,305	734,192	85.8	107,312	102,118	95.2		

자료: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01b,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그림 III-1-5]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01~2015

5) 지역별 공급과 이용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을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83.6%, 중소도시 81.8%, 농어촌 76.5% 순으로 도시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나 농어촌은 5%p 이상 낮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대도시 88.5%, 중소도시 89.8%, 농어촌 83.3%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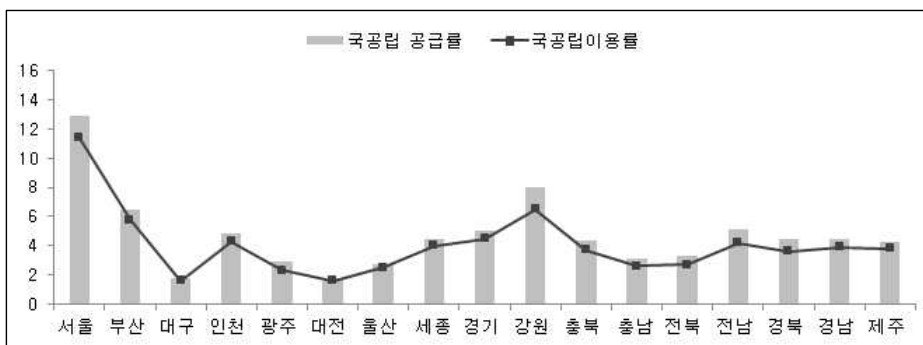
<표 III-1-5>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5년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정원								
대도시	667,994	98,766	38,778	17,044	344,981	139,610	26,451	2,364
중소도시	677,543	52,511	26,132	17,263	352,717	205,117	22,077	1,726
농어촌	445,284	37,384	70,831	26,202	244,405	54,922	10,717	823
전체	1,790,821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59,245	4,913
현원								
대도시	558,183	87,444	29,073	14,114	283,995	121,270	20,319	1,968
중소도시	554,167	47,143	20,085	13,690	279,392	175,877	16,509	1,471
농어촌	340,463	31,156	50,557	19,054	184,211	46,860	7,937	688
전체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4,765	4,127
정원충족률								
대도시	83.6	88.5	75.0	82.8	82.3	86.9	76.8	83.2
중소도시	81.8	89.8	76.9	79.3	79.2	85.7	74.8	85.2
농어촌	76.5	83.3	71.4	72.7	75.4	85.3	74.1	83.6
전체	81.1	87.9	73.5	77.4	79.4	86.1	75.6	84.0

자료: 보건복지부(2015c). 보육통계.

<표 III-1-6>은 0~6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을 나타낸다.



[그림 III-1-6]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5

17개 시도 중 제주의 공급률과 이용률이 각각 76.2%, 62.9%로 가장 높다. 반면, 부산은 공급률 48.0%, 이용률 39.4%로 가장 낮다(표 III-1-6 참조).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이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 추진 성과로 공급률이 12.9%, 이용률 11.4%로 시도 중 가장 높고, 대구와 대전은 공급률과 이용률이 각각 1%대로 가장 저조하다.

〈표 III-1-6〉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2015

단위: 명, %

구분	0~6세 영유아수 (a)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b)	현원 (c)	공급 률 (b/a)	이용 률 (c/a)	정원 충족 률 (c/b)	정원 (d)	현원 (e)	공급 률 (d/a)	이용 률 (e/a)	정원 충족 률 (e/d)
전체	3,187,718	1,790,821	1,452,813	56.2	45.6	81.1	188,661	165,743	5.9	5.2	87.9
서울	546,824	274,132	238,103	50.1	43.5	86.9	70,561	62,556	12.9	11.4	88.7
부산	187,693	90,014	74,003	48.0	39.4	82.2	12,266	10,841	6.5	5.8	88.4
대구	142,823	77,547	59,449	54.3	41.6	76.7	2,626	2,254	1.8	1.6	85.8
인천	189,521	94,735	81,353	50.0	42.9	85.9	9,146	8,202	4.8	4.3	89.7
광주	97,599	63,471	48,529	65.0	49.7	76.5	2,807	2,274	2.9	2.3	81.0
대전	99,724	55,635	44,691	55.8	44.8	80.3	1,755	1,547	1.8	1.6	88.1
울산	81,922	40,899	34,676	49.9	42.3	84.8	2,228	2,059	2.7	2.5	92.4
세종	20,941	10,913	8,723	52.1	41.7	79.9	937	835	4.5	4.0	89.1
경기	862,159	474,619	389,398	55.1	45.2	82.0	42,848	39,052	5.0	4.5	91.1
강원	83,855	55,718	42,238	66.4	50.4	75.8	6,676	5,424	8.0	6.5	81.2
충북	98,631	63,601	49,787	64.5	50.5	78.3	4,387	3,629	4.4	3.7	82.7
충남	136,809	87,524	68,750	64.0	50.3	78.5	4,276	3,611	3.1	2.6	84.4
전북	108,996	73,738	55,226	67.7	50.7	74.9	3,641	2,986	3.3	2.7	82.0
전남	109,694	70,802	54,647	64.5	49.8	77.2	5,635	4,617	5.1	4.2	81.9
경북	156,764	93,978	70,860	59.9	45.2	75.4	7,091	5,662	4.5	3.6	79.8
경남	220,697	130,665	105,271	59.2	47.7	80.6	9,933	8,571	4.5	3.9	86.3
제주	43,066	32,830	27,109	76.2	62.9	82.6	1,848	1,623	4.3	3.8	87.8

자료: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5c). 보육통계.

시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5~85% 대에 분포하여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보다 높은 편이나, 이 또한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이 92.4%로 가장 높고, 경북이 79.8%로 15%p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처럼 어린이집 공

급률과 이용률에서 지역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표 III-1-6 참조).

<표 III-1-7>은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2016년 3월 기준 총 459개 지역이다(보건복지부, 2016d).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2009년 491개 지역에서 매년 감소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쇄됨에 따라 미설치 지역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단위: 읍면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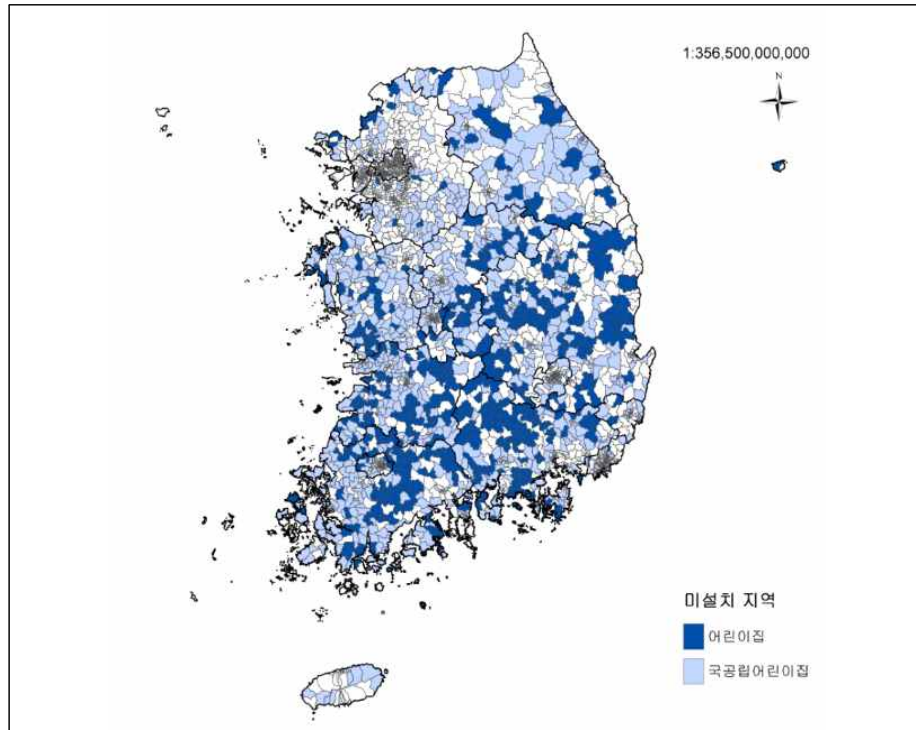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기준 영유아 인구
							전체	국공립	
전체	471	474	453	441	445	466	459	1,856	(2,739,901)
서울	2	2	1	1	1	1	1	18	(472,648)
부산	5	7	7	6	4	7	7	98	(162,479)
대구	1	-	1	1	1	-	-	100	(122,626)
인천	10	10	9	5	5	4	4	49	(162,895)
광주	3	3	3	4	3	3	3	70	(83,026)
대전	2	1	2	3	2	2	2	51	(85,620)
울산	5	4	4	5	4	3	2	27	(70,709)
세종	-	-	1	1	-	1	-	8	(17,888)
경기	18	18	17	13	15	20	15	198	(738,754)
강원	25	25	25	26	26	25	25	117	(71,392)
충북	32	32	29	29	30	32	32	112	(84,670)
충남	41	53	37	34	34	36	37	146	(117,546)
전북	67	64	65	63	65	66	68	199	(93,151)
전남	81	79	79	77	79	79	79	223	(94,460)
경북	96	93	90	87	87	93	90	213	(135,507)
경남	82	82	82	85	88	93	92	204	(189,730)
제주	1	1	1	1	1	1	2	23	(36,800)

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고성군 수동면은 인구 미거주 지역임.

자료: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6d).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내부자료.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총 1,856개 지역으로, 경상과 전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15개 지역인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98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부분에서 어린이집 공급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7 참조).



[그림 III-1-7]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2016년 3월 기준

6) 입소대기 아동

정부는 2013년 하반기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014년부터 서울¹⁴⁾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까지는 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3개소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채용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다니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개소 즉, 2개소까지 추가적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2016.11.30.인출).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은 2015년 말 기준 513,652명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14.3명이다. 2014년 평균 9.8명보다 5명 정도 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37.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 23.9명, 부산 21.6명, 인천 19.5명 순이다.

14) 서울시는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iseoul.seoul.go.kr)를 통해 입소대기신청 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2년 입소대기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시도 모두 2014년보다 입소대기 아동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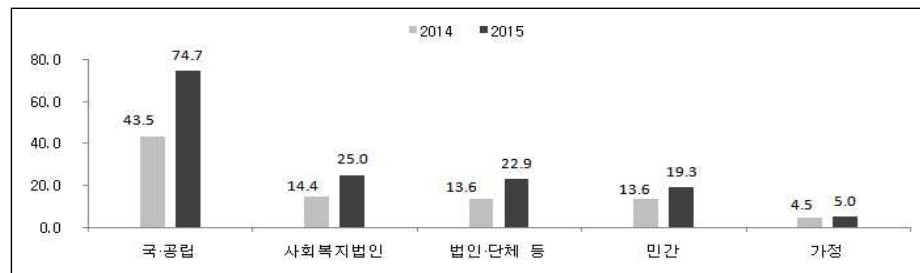
〈표 III-1-8〉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율	1개소당 대기자수	전체	국공립	국공립 비율	1개소당 대기자수
전체	362,759	71,506	19.7	9.8	513,652	127,472	24.8	14.3
부산	27,562	5,812	21.1	14.1	20,685	11,516	55.7	21.6
대구	12,071	892	7.4	7.6	44,468	2,045	4.6	13.4
인천	36,852	7,685	20.9	16.0	8,537	12,445	145.8	19.5
광주	6,083	594	9.8	4.8	15,386	1,303	8.5	6.8
대전	10,426	653	6.3	6.1	18,028	1,390	7.7	9.2
울산	10,733	1,541	14.4	11.3	8,076	2,623	32.5	19.3
세종	5,205	1,917	36.8	32.5	206,633	3,453	1.7	37.4
경기	165,208	40,559	24.6	12.5	14,135	6,693	47.4	16.3
강원	10,333	2,312	22.4	8.2	18,865	3,883	20.6	11.5
충북	8,584	1,029	12.0	7.0	25,971	2,872	11.1	15.3
충남	15,697	1,347	8.6	7.6	11,318	3,342	29.5	13.1
전북	7,535	742	9.8	4.6	14,696	1,384	9.4	7.0
전남	7,652	1,254	16.4	6.2	16,936	2,942	17.4	11.9
경북	7,832	1,383	17.7	3.5	33,535	3,477	10.4	8.0
경남	19,754	2,924	14.8	5.6	13,730	6,561	47.8	10.0
제주	11,232	862	7.7	18.8	513,652	1,543	0.3	23.9

주: 서울은 자체 입소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e).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 내부자료.

한편, 전체 대기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4.8%로 2014년 19.7%보다 5%p 이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인천시가 145.8%로 높고, 부산 55.7%, 경남 47.8%, 경기 47.4%, 충남 29.5% 순이다.



자료: 보건복지부(2016e).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 내부자료.

[그림 III-1-8] 어린이집 유형별 1개소당 입소대기 아동 수: 2014~2015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대기아동 수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이 평균 74.7명, 사회복지법인 평균 25.0명, 법인단체등 평균 22.9명, 민간 평균 19.3명, 가정 평균 5.0명 순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평균 43.5명에서 30명 정도가 늘었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전년도보다 평균 5~10명 정도가 증가하였다(그림 III-1-8 참조).

7) 예산

중앙정부가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신축, 장애아전담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3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규모는 이명박정부 시기인 2012년까지는 연 30개소 정도이었다(양미선 외, 2012).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신축이 135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 전담 2개소로 총 293억원이 예산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 2016a).

〈표 III-1-9〉 중앙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2011~2015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전체	30	2,695	31	2,933	96	15,815	171	32,408	171	31,905
국공립 신축	10	1,982	10	1,982	75	14,864	150	31,430	150	31,430
장애아전담 신축	1	238	2	476	19	476	19	503	19	-
공동주택리모델링	19	475	19	475	2	475	2	475	2	475

자료: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보육사업안내.

<표 III-1-10>은 2015년 시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신축, 이전신축, 대체신축, 민간매입, 기존 건물 리모델링은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경기도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확충방법별로 1~2개소 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1-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시도	단위: 개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0	76	4	8	9	3	2	3	3	22	2	0	3	2	6	1	4	2
신축	44	31	1	1	2	-	-	1	-	5	-	-	1	-	1	-	1	-
이전신축	8	-	-	-	-	1	-	-	-	1	1	-	1	-	2	-	1	1
대체신축	5	2	-	-	-	-	-	-	-	2	1	-	-	-	-	-	-	-
민간매입	19	17	-	-	-	-	-	-	-	-	-	-	-	1	-	1	-	-
기존건물 리모델링	24	16	-	-	-	-	-	1	1	3	-	-	-	-	1	1	1	1
공동주택 리모델링	50	10	3	7	7	2	2	1	2	11	-	-	1	2	2	-	-	-

자료: 보건복지부(2015g).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부자료.

나.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a).

1) 의무 및 임의 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 78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8%로 소수이다.

〈표 III-1-11〉 직장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구분	어린이집			보육 아동			정원충족률		
	전체	직장	비율	전체	직장	비율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2015	42,517	785	1.8	1,452,813	44,765	3.1	59,245	44,765	75.6
2014	43,742	692	1.6	1,496,671	39,265	2.6	51,667	39,265	76.0
2013	43,770	619	1.4	1,486,980	34,479	2.3	44,783	34,479	77.0
2012	42,527	523	1.2	1,487,361	29,881	2.0	38,404	29,881	77.8
2011	39,842	449	1.1	1,348,729	24,987	1.9	32,536	24,987	76.8
2010	38,021	401	1.1	1,279,910	21,901	1.7	28,316	21,901	77.3
2005	28,367	263	0.9	989,390	12,985	1.3	16,370	12,985	79.3
2000	19,276	204	1.1	686,000	7,807	1.1	-	-	-
1995	9,085	87	1.0	293,747	2,388	0.8	-	-	-
1991	3,690	19	0.5	89,441	712	0.8	-	-	-

자료: 보건사회부(1991b).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2010년 401개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50~100개소씩 증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5년 44,765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비 3.1%로 극히 소수이다.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5년 75.6%로 통계 생산 이후 매년 75~80% 대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보건복지부, 2015c).

2) 설치 의무 이행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규모와 의무 이행 어린이집 규모는 아래 <표 III-2-12>에 제시하였다. 2015년 기준 의무사업장은 1,143개소로, 이중 52.9%인 605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중 다수인 578개소 95.5%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 형태이다(보건복지부, 2015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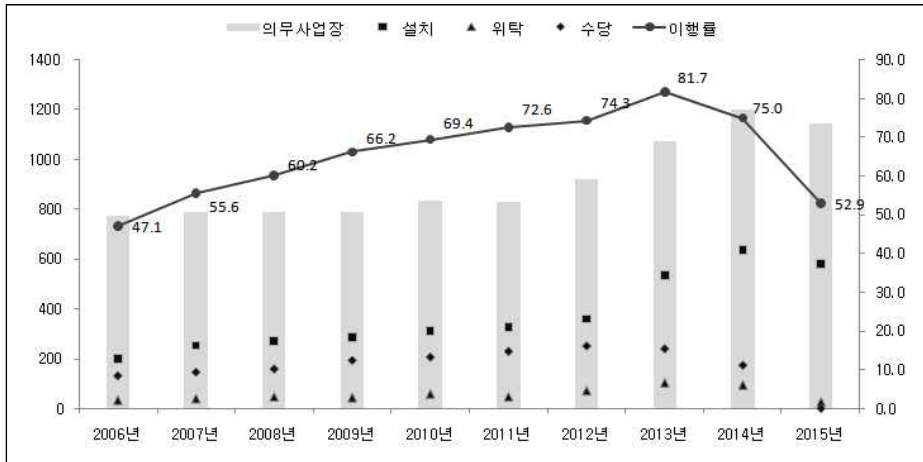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2006년 47.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80%대에 진입하였으나, 2015년부터 의무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을 제외하고,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 지원할 경우에만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등 의무이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행률이 52.9%로 전년대비 20%p 이상 떨어졌다(보건복지부, 2013d, 2014d, 2015f, 2016f).

<표 III-1-1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

연도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계	설치	위탁	수당	
2015	1,143	605	578	27	-	52.9
2014	1,204	903	635	93	175	75.0
2013	1,074	877	534	101	242	81.7
2012. 9.	919	683	359	71	253	74.3
2011. 6.	832	604	326	47	231	72.6
2010	833	578	312	58	208	69.4
2009	790	523	284	44	195	66.2
2008	791	476	269	47	160	60.2
2007	791	440	253	40	147	55.6
2006	775	365	199	34	132	47.1

주: 2015년은 보육수당 의무이행 수단에서 제외,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 30% 이상 위탁 보육 시 의무이행 간주
 자료: 보건복지부(2013d, 2014d, 2015f, 2016f).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보도자료.



[그림 III-1-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현황

<표 III-1-13>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의무 사업장	이행				의무 사업장	이행				의무 사업장	이행			
		계	설치	위탁	수당		계	설치	위탁	수당		계	설치	위탁	수당
전체	919	683	359	71	253	1,074	877	534	101	242	1,204	903	635	93	175
서울	278	214	130	11	73	363	299	208	25	66	405	320	236	19	65
부산	53	42	15	11	16	64	51	25	11	15	69	52	28	12	12
대구	30	22	7	5	10	35	26	12	7	7	40	28	16	6	6
인천	34	24	14	1	9	40	31	24	1	6	51	38	30	1	7
광주	23	20	8	2	10	21	20	10	1	9	29	20	18	2	-
대전	46	40	30	6	4	48	45	30	7	8	51	47	34	5	8
울산	26	18	10	3	5	33	26	13	1	12	31	18	13	-	5
세종	4	2	-	1	1	17	15	11	1	3	15	13	11	1	1
경기	150	109	68	15	26	154	123	80	21	22	199	143	105	21	17
강원	29	20	6	2	12	36	30	13	3	14	38	26	21	3	2
충북	31	22	10	1	11	36	29	16	3	10	34	25	15	5	5
충남	42	30	0	7	13	41	36	18	7	11	48	37	20	8	9
전북	26	22	6	1	15	30	27	11	2	14	32	27	13	3	11
전남	20	12	7	-	5	27	22	11	2	9	26	17	13	1	3
경북	64	43	14	3	26	56	44	18	7	19	56	42	24	3	15
경남	54	36	20	2	14	65	46	29	2	15	71	42	31	3	8
제주	9	7	4	-	3	8	7	5	-	2	9	8	7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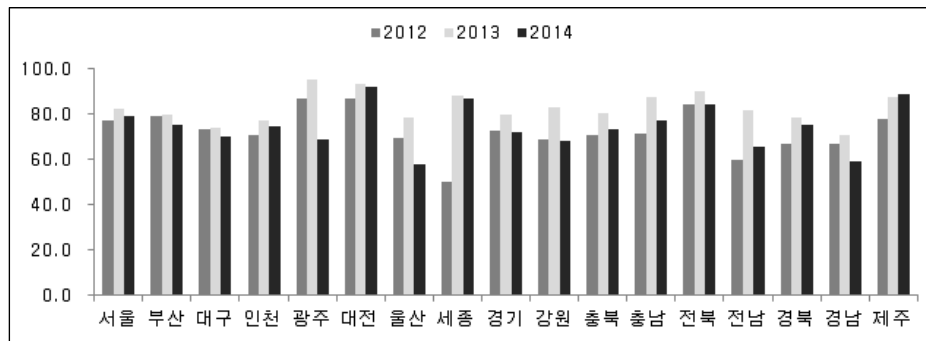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4d).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5f).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6f).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도자료.

의무이행 수단은 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수당은 2013년 이후 감소하였다.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대전이 9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 전북, 제주가 80%대이다. 경남, 전남, 광주, 강원 소재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이 60% 내외로 가장 저조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7개 시도 중 제주 지역만 이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2013년 이행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무이행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II-1-10]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3) 의무설치 사업장 유형

<표 III-1-14>는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을 나타낸다.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중에서 국가기관의 이행률이 매년 가장 높다. 사업장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이행률이 2013년 90%대에서 80% 정도로 하락하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2013년 98.1%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나, 2015년 70% 정도로 낮아졌다. 학교는 2013년 76.8%에서 2015년 20%대, 기업은 77.3%에서 50% 정도로 낮아졌다. 학교와 기업 등은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수당에 의존하여 설치 의무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이행기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4〉 사업장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의무 사업장	의무				의무 사업장	의무				의무 사업장	의무		
		계	설치	위탁	수당		계	설치	위탁	수당		계	설치	위탁
전체	1,074	877	534	101	242	1,204	903	635	93	175	1,143	605	578	27
국가기관	110	100	83	10	7	146	126	122	3	1	153	122	118	4
지자체	155	152	78	4	70	154	122	99	8	15	144	100	94	7
학교	95	73	33	7	33	136	110	47	20	43	100	21	16	5
기업	714	552	340	80	132	768	545	367	62	116	746	361	350	11

자료: 보건복지부(2014d).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5f).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6f).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도자료.

〈표 III-1-15〉 사업장 규모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현황: 2014년

단위: 개소, %

구분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	이행 사업장	이행률	의무 사업장	이행 사업장	이행률	의무 사업장	이행 사업장	이행률
계	27	11	40.7	483	282	58.4	528	465	88.1
국가	1	-	-	51	36	70.6	30	27	90.0
지자체	-	-	-	39	21	53.8	94	83	88.3
학교	2	2	100.0	48	31	64.6	76	68	89.5
기업	24	9	37.5	345	194	56.2	328	287	87.5
2013	8	8	100.0	567	417	73.5	499	452	90.6
2012	7	3	42.9	481	308	64.0	431	372	86.3

자료: 보건복지부(2015f).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보도자료.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행률이 높다.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이행률이 40.7%로 절반 미만이지만,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58.4%, 근로자 1,000인 이상은 88.1%로 높다. 특히,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장 유형에 상관없이 90% 내외의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

4) 운영 형태

직장어린이집 중 78.1%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1.9%는 직영으로 운영한다. 위탁체는 법인 및 단체가 47%로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과 대학이 각각

16.2%, 14.9%로 비등하다.

〈표 III-1-16〉 직장어린이집 운영 형태 및 위탁체 종류

단위: 개소, (%)

운영 형태	전체	직영	위탁유형					미정의
			계	법인 및 단체	대학	개인	기타	
2016	880		428	274	47	88	19	499
(비율)	(100.0)		(48.5)	(31.0)	(5.3)	(10.0)	(2.2)	(56.7)
2015	785	172	613	369	117	127	-	
(비율)	(100.0)	(21.9)	(78.1)	(47.0)	(14.9)	(16.2)	-	

자료: 근로복지공단(2016b). 201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현황.

보건복지부(2016g). 어린이집 일람현황(2016. 3월말 기준)

5) 예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2015년 기준 총 지원 예산은 90,911백만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되어 39,621백만원이고,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2015년 기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이 51,574백만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28,709백만원,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8,978백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650백만원 순이다. 특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비 지원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표 III-1-17〉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6,441	39,621	40,088	45,839	64,111	69,440	90,911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	-	-	-	5,082	9,074	8,978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	-	-	23,134	16,796	28,709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	-	-	34,592	41,984	51,57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	-	-	1,303	1,586	1,650

주: 2013~2014년 예산은 실 집행액 기준임.

2009~2012년 전체 예산만 제시함.

자료: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및 국가기금운용 개요.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등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를 용자 지원한다.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7억원(공동 9억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리 1%, 대기업은 연리 2%

이자율을 적용한다. 직장어린이집 용자지원 사업장은 2015년 6개소로, 3개소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다. 지원금은 총 1,096백만원이고, 이중 396백만원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지원한다.

〈표 III-1-18〉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 현황: 직장어린이집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장	4	9	2	6 (5)	11 (4)	8 (5)	4 (2)	11 (2)	4 (1)	6 (3)
지원금	511	2,700	300	1,777 (1,277)	3,225 (1,356)	1,326 (649)	1,512 (612)	3,253 (850)	1,308 (350)	1,096 (396)

주: ()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수임.
 자료: 근로복지공단(2016c).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보도자료.

이 외에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나 교재교구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 예산은 2015년 총 28,709백만원으로, 시설전환비 지원액이 25,073백만원, 교재교구비는 3,636백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따라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비 무상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II-1-19〉 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전체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	
	사업장	지원금	사업장	지원금	사업장	지원금
2015	114(27)	28,709(9,518)	88(21)	25,073(8,851)	103(23)	3,636(667)
2014	93(29)	23,676(12,659)	71(23)	20,724(11,819)	85(25)	2,952(840)
2013	103(26)	23,134(10,921)	80(18)	19,899(10,115)	96(25)	3,235(806)
2012	82(18)	15,457(5,082)	62(14)	12,988(4,652)	78(16)	2,469(430)
2011	65(19)	11,057(4,121)	44(16)	9,142(3,543)	60(17)	1,915(578)
2010	61(11)	6,635(1,356)	29	4,785	57	1,850
2009	31(10)	2,351(691)	14	1,134	29	1,217
2008	27	3,229	17	2,055	26	1,174
2007	21	2,675	15	1,862	21	813
2006	33	3,245	22	2,192	32	1,053

주: ()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수 및 지원금을 의미함.
 자료: 근로복지공단(2016c).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보도자료.

다.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

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6a).

1) 규모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1년에는 민간 452개소와 가정 224개소, 법인단체 3개소 총 679개소가 선정되었다. 본 사업으로 전환된 2012년에는 선정기관이 1/4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2013년에는 2011년 수준인 총 764개소가 선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 법인단체가 각각 467개소, 292개소, 5개소이다. 2014년 이후에는 선정기관 수를 조절하여 매년 200~300개소 정도씩만 선정하고 있다(표 III-1-20 참조).

〈표 III-1-20〉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현황: 2011~2015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계	민간	가정	법인단체
전체	679	452	224	3	136	88	46	2	764	467	292	5	210	164	45	1	272	134	137	1
부산	20	8	11	1	31	12	19	-	40	14	25	1	16	10	6	-	21	13	8	-
대구	45	40	5	-	12	9	3	-	36	28	8	-	13	11	2	-	12	6	6	-
인천	32	23	9	-	1	1	-	-	38	27	11	-	11	9	2	-	15	6	9	-
광주	21	19	2	-	5	2	3	-	18	12	6	-	6	6	-	-	13	2	11	-
대전	43	30	13	-	7	3	3	1	41	23	18	-	15	13	2	-	16	10	6	-
울산	40	27	13	-	-	-	-	-	23	15	8	-	4	4	-	-	8	2	6	-
세종	-	-	-	-	-	-	-	-	6	4	2	-	2	2	-	-	2	-	2	-
경기	184	80	102	2	24	19	4	1	226	95	129	2	57	34	22	1	89	44	44	1
강원	32	22	10	-	12	6	6	-	51	29	22	-	6	6	-	-	12	6	6	-
충북	31	27	4	-	-	-	-	-	37	31	6	-	7	7	-	-	8	4	4	-
충남	23	20	3	-	7	5	2	-	73	44	29	-	5	5	-	-	10	5	5	-
전북	40	22	18	-	-	-	-	-	31	20	11	-	16	13	3	-	13	6	7	-
전남	27	22	5	-	4	3	1	-	20	17	3	-	6	5	1	-	10	7	3	-
경북	41	39	2	-	8	8	-	-	34	34	-	-	25	24	1	-	17	9	8	-
경남	72	48	24	-	19	17	2	-	40	34	6	-	6	5	1	-	16	8	8	-
제주	28	25	3	-	6	3	3	-	50	40	8	2	15	10	5	-	10	6	4	-

주: 법인단체에는 사회복지법인 1개소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53.

2016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767개소로, 민간이 1,152개소, 가정 603개소, 법인단체 12개소로 민간이 다수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8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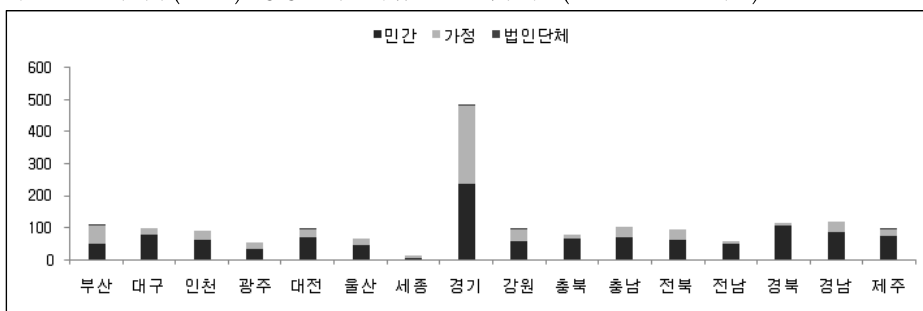
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과 경북 순이다. 특히 경기도는 가정 245개소, 민간 236개소로 타 시도와 다르게 가정이 민간보다 많다.

〈표 III-1-21〉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2016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67	109	99	91	54	98	65	11	487	97	78	101	92	56	115	118	96
민간	1,152	51	79	60	34	70	46	6	236	59	66	70	60	48	106	87	74
가정	603	56	20	31	20	27	19	5	245	37	12	31	32	8	9	31	20
법인단체	12	2	-	-	-	1	-	-	6	1	-	-	-	-	-	-	2

자료: 보건복지부(2016h),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2016년 4월말 기준).



〔그림 III-1-11〕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분포: 2016년

〈표 III-1-22〉 지역 및 시설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5. 4		
	계	민간	가정	계	민간	가정	계	민간	가정	계	민간	가정
시설수												
대도시	166	125	40	46	24	21	174	108	65	493	110	383
중소도시	284	169	114	36	24	11	365	208	154	384	126	258
읍면	132	105	26	45	37	8	214	146	67	579	269	310
전체	582	399	180	127	85	40	753	462	286	1,456	505	951
비율												
대도시	28.5	31.3	22.2	36.2	28.2	52.5	23.1	23.4	22.7	33.9	21.8	40.3
중소도시	48.8	42.4	63.3	28.3	28.2	27.5	48.5	45.0	53.8	26.4	25	27.1
읍면	22.7	26.3	14.4	35.4	43.5	20.0	28.4	31.6	23.4	39.8	53.3	3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1~2014년은 선정 개소수를 의미하고, 2015년은 운영 어린이집 의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a), 어린이집 일람현황(2015년 4월 기준).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서문희 외(2014b),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2.

이를 지역 및 시설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 대도시가 21.8%, 중소도시 25%, 읍면지역 53.3%로 읍면지역이 절반 이상 분포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 중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분포와 달리 대도시가 40.3%로 높고, 다음으로 읍면지역 32.6%, 중소도시 27.1% 순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읍면지역과 대도시가 각각 30%대로 유사하고,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적다.

<표 III-1-23>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규모별 정·현원 및 보육교사, 유아반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는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20인 이하가 34.1%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36~49인 13.2%로 많다. 112~123인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는 6~8%대로 비등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은 57.5명이고, 현원은 50.2명이다. 124인 이상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149.2명, 131.7명으로 커서, 150명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II-1-23>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정원, 현원, 보육교사 수

구분	단위: 명, 개소(%)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합계
시설수	603	110	233	124	126	114	130	147	44	136	1,767
(비율)	(34.1)	(6.2)	(13.2)	(7.0)	(7.1)	(6.5)	(7.4)	(8.3)	(2.5)	(7.7)	(100.0)
정원											
평균	18.6	29.0	42.8	56.1	69.1	81.4	92.1	101.4	117.1	149.2	57.5
표준편차	2.3	4.0	4.6	4.0	4.0	2.9	3.0	4.0	3.2	25.9	41.1
총계	11,224	3,191	9,977	6,961	8,704	9,283	11,973	14,903	5,152	20,286	101,654
현원											
평균	16.3	25.0	36.5	48.5	59.2	71.4	80.4	89.9	101.5	131.7	50.2
표준편차	3.7	6.0	8.2	9.7	10.8	11.1	13.2	13.8	16.6	28.5	37.4
총계	9,849	2,753	8,509	6,014	7,462	8,144	10,446	13,211	4,466	17,906	88,760
보육교사											
평균	4.0	4.6	5.5	6.6	7.8	8.8	9.6	10.4	12.1	14.2	6.9
표준편차	1.1	1.3	1.7	1.6	1.8	1.7	1.9	2.1	3.2	3.2	3.6
총계	2,387	505	1,287	819	985	1,007	1,246	1,523	531	1,927	12,217
유아반											
평균	0.0	0.7	1.4	2.2	2.6	3.3	3.7	4.1	4.5	5.8	2.0
표준편차	0.1	0.6	0.7	0.8	0.8	0.9	0.9	1.1	1.0	1.4	2.0
총계	5	84	335	271	328	373	488	620	203	807	3,514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2016년 4월 기준).

2015년 변경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인 보육교사와 유아반 규모를

보면, 우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6.9명이고, 전체 교사수는 12,217명이다. 규모별로 20인 이하는 평균 4명으로 가장 적고, 21~35인과 36~49인은 4~5명 정도, 98인 이상 규모는 보육교사가 10명이 넘는다. 유아반은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2개 반이고, 총 3,514개 반이 운영 중이다. 규모별로는 50~62인은 유아반이 2개반 정도, 77~97인은 3개반, 98인 이상은 4개반, 124인 이상은 5개반 이상이다(표 III-1-23 참조).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90점 이상),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지표, 등의 선정기준에 의한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 이어야 공공형으로 선정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3년 752개소, 2014년 205개소, 2015년 266개소가 선정되었고, 이들이 선정 시 부여받은 항목별 점수는 <표 III-1-24>와 같다.

<표 III-1-24>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항목별 점수 개요

단위: 점(개소)

구분	2013					2014					2015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총점	96.25	7.83	80	119	(752)	92.42	5.19	85	108	(205)	97.63	5.24	85	113	(266)
평가인증점수	31.08	2.34	28.00	35.00	(752)	30.52	2.63	25.00	34.69	(205)	32.06	2.09	25.28	34.74	(266)
건물소유형태	15.43	4.87	5.00	20.00	(752)	17.54	4.61	5.00	20.00	(205)	19.06	3.14	0.00	20.00	(266)
건물이용형태(임대료 및상환액)(-)	2.04	1.88	0.00	10.00	(752)	-1.83	2.08	-8.00	0.00	(205)	-1.62	1.70	-5.00	0.00	(266)
보육교직원 전문성															
1급 보육교사 비율	26.98	5.13	0.00	30.00	(752)	28.92	2.31	24.00	30.00	(205)	29.61	1.55	15.00	30.00	(266)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2.46	1.31	1.00	5.00	(752)	2.93	1.47	1.00	5.00	(205)	2.86	1.29	1.00	5.00	(266)
현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교사 30% 이상	0.34	0.79	0.00	5.00	(752)	1.65	1.50	0.00	3.00	(205)	2.03	1.40	0.00	3.00	(266)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60% 이상	-	-	-	-	-	-	-	-	-	-	0.25	0.43	0.00	1.00	(266)
원장 영유아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보육경력 3년 이상	0.26	0.44	0.00	1.00	(752)	0.27	0.45	0.00	1.00	(205)	0.59	0.92	0.00	2.00	(266)
현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무 원장	0.25	0.43	0.00	1.00	(752)	0.77	0.98	0.00	2.00	(205)	0.79	0.98	0.00	2.00	(266)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취약보육서비스	2.66	1.43	1.00	5.00	(752)	2.27	1.54	0.00	6.00	(205)	2.18	1.68	0.00	6.00	(266)
어린이집정보공개여부	2.28	1.68	0.00	4.00	(752)	-	-	-	-	-	-	-	-	-	-
맞벌이자녀재원율	-	-	-	-	(752)	1.60	1.36	0.00	3.00	(205)	1.61	1.32	0.00	3.00	(266)

(표 III-1-2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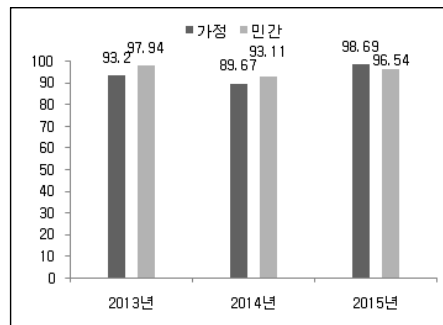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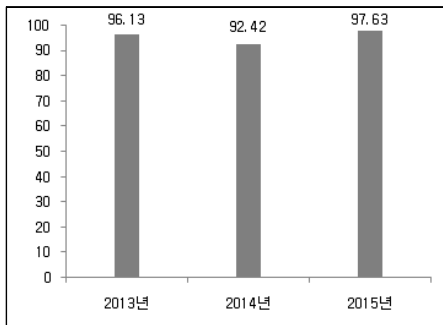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수)
지자체 특성화 지표	3.35	1.91	0.00	5.00	(752)	1.60	0.73	0.00	2.00	(205)	2.19	1.31	0.00	4.00	(266)
현원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1.61	1.50	0.00	3.00	(752)	2.18	1.34	0.00	3.00	(205)	-	-	-	-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2.21	1.32	0.00	3.00	(752)	-	-	-	-	-	-	-	-	-	-
최근3년간대표자변경	-	-	-	-	-	-0.25	0.83	-3.00	0.00	(205)	-0.16	0.67	-3.00	0.00	(266)
대표자·원장 동일인	2.53	1.09	0.00	3.00	(752)	2.59	1.03	0.00	3.00	(205)	4.64	1.29	0.00	5.00	(266)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1.39	2.31	0.00	10.00	(752)	1.65	1.53	0.00	5.00	(205)	1.51	1.63	0.00	5.00	(266)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35.

총점은 2013년 96.25점, 2014년 92.42점, 2015년 97.63점으로 2014년 다소 점수가 낮아졌으나 대체로 95점 이상을 상회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서 기본항목 총점은 100점, 가점 총 16점, 감점 총 9점이 배점되어 있어서 최대 점수가 100점을 상회하고, 총점이 8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1-25>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총점을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분석한 것이다. 2015년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총점 95점 이상 100점 미만 39.8%로 높고, 다음으로 100점 이상이 31.2%, 90점 이상 95점 미만 21.8%, 85점 이상 90점 미만 7.1% 순이다.



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38.

[그림 III-1-12] 연도별 총점

[그림 III-1-13] 연도 및 시설유형별 총점

시설유형별로 보면, 가정은 95~100점 미만이 50.4%로 높으나 민간은 29.0%로 차이를 보인다. 지역규모별로는 95~100점 미만이 40% 내외로 다빈도를 나타낸다. 정원규모별로는 20인 이하는 95~100점 미만이 50.4%로 절반 정도이고, 21~49인은 27.5%, 50~76인과 77~97인은 30% 대를 나타낸다.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총점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2015년 선정기관은 시설유형에 따라서만 차이가 유의하고, 2013년과 2014년 선정기관은 시설유형, 지역 및 정원규모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I-1-2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총점

단위: %(수), 점

구분	85~90점 미만	90~95점 미만	95~100 점 미만	100점 이상	계(수)	평균	2014년	2013년
전체	7.1%	21.8	39.8	31.2	100.0(266)	97.63	92.42	96.13
시설유형								
가정	1.5	15.6	50.4	32.6	100.0(135)	98.69	89.67	93.20
민간	13.0	28.2	29.0	29.8	100.0(131)	96.54	93.11	97.94
X ² (df)/t		24.99(3) ^{***}				5.6 ^{***}	-3.9 ^{***}	-8.6 ^{***}
지역규모								
대도시	7.4	28.4	35.8	28.4	100.0(81)	97.01	91.15	96.10
중소도시	6.0	10.7	45.2	38.1	100.0(84)	98.68	91.86	94.99
읍면지역	7.9	25.7	38.6	27.7	100.0(101)	97.26	93.81	97.29
X ² (df)/F		101.19(6)				3.4 ^{**}	5.2 ^{**}	5.3 ^{**}
정원규모								
20인 이하	1.5	15.6	50.4	32.6	100.0(135)	98.69	89.67	93.20
21~49인	17.6	35.3	27.5	19.6	100.0(51)	95.27	92.30	94.62
50~76인	13.6	31.8	36.4	18.2	100.0(22)	95.20	93.70	97.11
77~97인	4.9	24.4	31.7	39.0	100.0(41)	98.13	93.17	99.28
98인 이상	17.6	11.8	17.6	52.9	100.0(17)	98.24	93.27	101.85
X ² (df)/F		-				2.6	4.2 ^{**}	30.9 ^{***}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37.

** $p < .01$, *** $p < .001$

2) 예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은 2016년 기준 48,730백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0.6%p가 증액된 규모이다. 시범사업 당시 7,984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면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이후 선정 어린이집 수에 비례하여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표 III-1-26 참조).

〈표 III-1-26〉 공공형어린이집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7,984	16,942	33,379	38,528	44,071	48,730
(증가율)	-	(112.2)	(97.0)	(15.4)	(14.4)	(10.6)

자료: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보육사업안내.

2. 공교육 공급 현황

국·공립유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5월 30일 인출). 2절에서는 2000년 이후 유치원, 학급 및 원아 수, 취원률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가. 유치원 수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기준 4,678개원으로, 공립 단설 272개원, 병설 4,403개원으로 학급 수가 1~2개 정도인 소규모 유치원이 대부분이다. 유치원 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전체 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이 52.4%로, 2000년 전체 유치원 수가 8,494개원에서 2015년 8,930개원으로 약 5%p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증가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1〉 연도별 유치원 수

구분	단위: 개원(%)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494	8,275	8,388	8,424	8,538	8,678	8,826	8,930
국립	3	3	3	3	3	3	3	3
공립	4,173	4,409	4,498	4,499	4,522	4,574	4,616	4,675
단설		72	131	146	167	184	228	272
병설	4,234	4,337	4,367	4,353	4,355	4,390	4,388	4,403
(비율)	(49.2)	(53.3)	(53.7)	(53.5)	(53.0)	(52.8)	(52.4)	(52.4)
사립	4,318	3,863	3,887	3,922	4,013	4,101	4,207	4,252

주: 2000년 국공립유치원은 '학교부속'으로 통계 생산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국공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9.2%로 절반 이하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50%를 넘어섰으며, 2010년 53.7%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50% 이상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 중 단설은 2005년 72개원에서 2010년 131개원으로 증설되었고, 이후 매년 20%p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2015년 기준 4,252개원으로 전체 유치원 중 47.6%를 차지한다. 2000년 50.8%로 국공립과 단위 유치원 수로는 비등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병설유치원 증설 계획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였다(표 III-2-1 참조).

나. 학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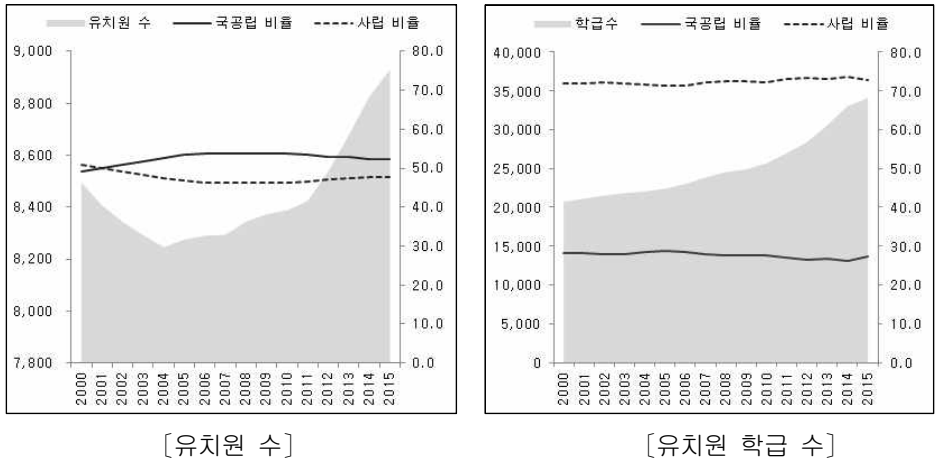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유치원 학급은 총 34,075학급이다. 이중 국공립이 9,283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7.2%를 차지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2000년 5,824학급으로 28%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28%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2015년 기준 24,792학급으로 전체 학급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71.9%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5세 누리과정으로 사립유치원이 증가하면서 2014년 73.7%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단설유치원 증설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인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연도별 학급 수

구분	단위: 학급(%)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급수								
전체	20,723	22,409	25,670	26,988	28,386	30,597	33,041	34,075
국공립	5,824	6,451	7,129	7,279	7,535	8,220	8,693	9,283
사립	14,899	15,958	18,541	19,709	20,851	22,377	24,348	24,792
1개원당 학급수								
전체	2.4	2.7	3.1	3.2	3.3	3.5	3.7	3.8
국공립	1.4	1.5	1.6	1.6	1.7	1.8	1.9	2.0
사립	3.5	4.1	4.8	5.0	5.2	5.5	5.8	5.8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한편, 유치원 1개원당 학급수는 2015년 기준 평균 3.8학급으로 단설 및 대규모 사립유치원이 늘어나면서 학급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1~2학급 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5년 2학급을 넘어섰다. 이는 단설유치원 증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유치원도 2000년 3학급 정도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2015년에는 6학급 정도이다.



[그림 III-2-1] 유치원 및 학급 수와 설립유형별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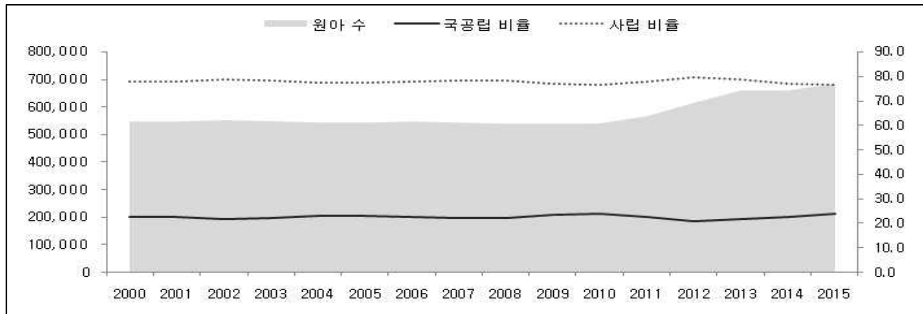
다. 취원아 수

2015년 기준, 유치원 취원아수는 682,553명으로 국공립 161,339명, 사립 521,214명이다. 전체 유치원 원아 중 국공립 이용 비율이 23.6%로 1/4 정도를 차지한다. 유치원 원아수는 2010년까지 54만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60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와 2014년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대거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70만명을 육박한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또한 2012년까지 12만명 선을 유지하여 왔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단설유치원으로 원아 수가 2015년 16만 명에 이른다.

<표 III-2-3> 유치원 취원아 수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45,263	541,350	538,351	564,594	613,523	657,963	657,963	682,553
국립	272	253	236	240	226	225	258	256
공립	121,936	124,030	126,341	125,855	127,121	141,827	148,011	161,083
(비율)	(22.4)	(23.0)	(23.5)	(22.3)	(20.8)	(21.6)	(22.5)	(23.6)
사립	423,055	417,320	412,010	438,739	486,402	516,136	504,277	521,21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2-2] 유치원 취원아수 및 기관유형별 비율: 2000~2015

라. 취원률

만 3-5세 유아 수는 2015년 기준 1,396,456명이다. 2010년 136만 여명에서 2012년 141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유아 수 대비 유치원 취원률은 2015년 기준 48.9%이다. 2010년 39.7%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2년 5세 누리과정과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 로 50% 가까이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전체 유아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2015년 11.6%이다. 2012년까지 10%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단설유치원 증설로 10%대에 진입하였다.

<표 III-2-4> 유치원 취원률

단위: %

구분	주민등록인구 (3~5세)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원아수	취원률	원아수	취원률
2015	1,396,456	682,297	48.9	161,339	11.6
2014	1,388,583	657,963	47.4	148,269	10.7
2013	1,410,211	657,963	46.7	142,052	10.1
2012	1,411,299	613,523	43.5	127,347	9.0
2011	1,378,886	564,594	40.9	126,095	9.1
2010	1,357,199	538,351	39.7	126,577	9.3

주: 공급률은 정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이용률은 현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12월 말 기준).

<표 III-2-5>는 2015년 기준 시도 및 연령별 취원율을 산출한 것이다. 만3~5세 취원율은 대구와 대전, 경북이 58% 내외 정도이고, 제주와 서울이 각각 28.9%,

39.4%로 가장 낮다. 만3세는 36.2%, 만4세 52.7%, 만5세 58.3%로 연령에 비례하여 취원율이 높다. 만3세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50% 미만에 분포하고, 전북이 43.7%로 가장 높다. 만4세와 만5세는 대구가 각각 68.8%, 73.5%로 가장 높고, 만 3~5세 모두 제주가 27.2%, 52.9%로 가장 낮다.

〈표 III-2-5〉 연령별 취원율: 2015

구분	주민등록인구(3~5세)				원아수				취원율			
	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1,396,456	475,519	473,120	447,817	682,553	172,114	249,197	261,242	48.9	36.2	52.7	58.3
서울	231,771	78,850	78,745	74,176	91,394	24,009	33,524	33,861	39.4	30.4	42.6	45.6
부산	80,658	27,963	27,481	25,214	45,175	11,253	17,106	16,816	56.0	40.2	62.2	66.7
대구	62,879	21,383	21,299	20,197	36,951	7,455	14,645	14,851	58.8	34.9	68.8	73.5
인천	83,059	28,441	27,992	26,626	42,389	10,345	15,685	16,359	51.0	36.4	56.0	61.4
광주	44,336	14,740	15,023	14,573	23,741	6,111	8,615	9,015	53.5	41.5	57.3	61.9
대전	43,819	14,952	14,763	14,104	25,660	6,470	9,369	9,821	58.6	43.3	63.5	69.6
울산	34,967	11,965	11,789	11,213	19,177	4,502	7,232	7,443	54.8	37.6	61.3	66.4
세종	9,301	3,085	3,163	3,053	4,108	991	1,521	1,596	44.2	32.1	48.1	52.3
경기	383,169	130,026	129,738	123,405	191,293	50,816	68,792	71,685	49.9	39.1	53.0	58.1
강원	38,100	12,723	12,914	12,463	17,387	4,290	6,074	7,023	45.6	33.7	47.0	56.4
충북	43,500	14,770	14,769	13,961	18,305	4,947	6,509	6,849	42.1	33.5	44.1	49.1
충남	60,210	20,580	20,367	19,263	27,141	6,640	9,611	10,890	45.1	32.3	47.2	56.5
전북	49,275	16,691	16,739	15,845	25,059	7,290	8,752	9,017	50.9	43.7	52.3	56.9
전남	48,102	16,488	16,380	15,234	19,983	5,305	6,995	7,683	41.5	32.2	42.7	50.4
경북	66,855	23,081	22,517	21,257	38,663	9,199	14,298	15,166	57.8	39.9	63.5	71.3
경남	97,258	33,329	32,962	30,967	50,580	12,024	18,706	19,850	52.0	36.1	56.8	64.1
제주	19,197	6,452	6,479	6,266	5,547	467	1,763	3,317	28.9	7.2	27.2	52.9

자료: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마. 입학 경쟁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16년 기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4.5, 1:3.7로 높고, 다음으로 울산 1:2.8, 경기 1:2.1, 인천과 전북 1:2.0, 나머지는 1:1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3세가 4.5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먼저 3세의 경우 부산은 1: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서울과 충남, 전북은 1:5~6 수준이며, 인천, 울산은 1:4 정도, 경기와 경북 1:3 정도이다. 4세는 서울이 1:4.9로 높고, 부산, 울산, 충남, 경북은 1:3~4 정도, 인천, 경기는 1:2 수준이다. 5세는 더 낮아져서 서울이 1:3.8,

부산, 울산, 충남, 경북이 1:2정도이다(표 II-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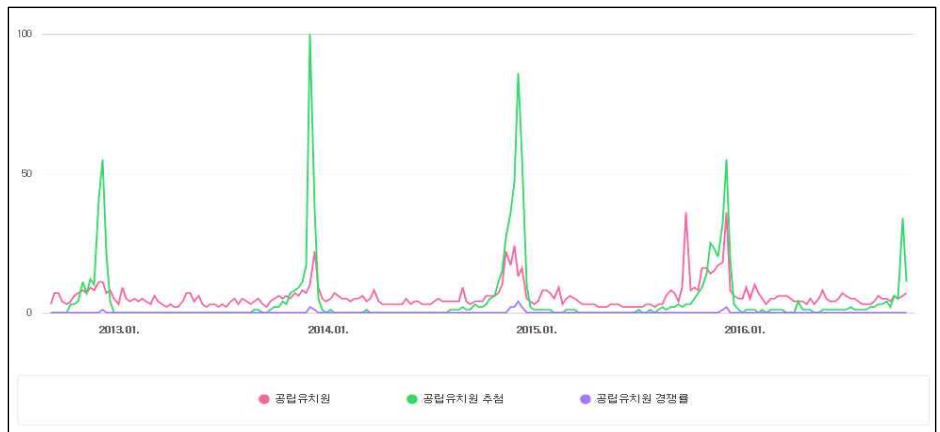
〈표 III-2-6〉 공립유치원 경쟁률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전체	4.5	3.7	1.5	2	1.7	1.3	2.8	1.2	2.1	-	-	1.7	2.0	-	1.4	1.5	1.9
3세	5.9	7.0	-	4.5	-	2.5	4.7	-	3.5	-	-	5.4	5.7	-	3.4	2.4	-
4세	4.9	3.6	-	2.2	-	1.5	3.4	-	2.1	-	-	3.5	4.2	-	3.5	1.6	-
5세	3.8	2.6	-	1.5	-	0.8	2.3	-	1.6	-	-	2.0	1.7	-	2.1	1.2	-
혼합	2.0	2.3	-	0.6	-	1.1	1.2	-	-	-	-	0.6	0.7	-	0.4	-	-
2015년																	
전체	-	3.7	1.2	-	1.7	1.9	2.8	1.6	1.5	-	2.7	1.7	1.9	-	-	1.4	1.9
3세	-	6.8	-	-	-	3.1	5.2	-	3.4	-	3.6	5.6	4.3	-	-	2.1	-
4세	-	3.7	-	-	-	2.2	3.6	-	1.8	-	4.2	4.2	4.5	-	-	1.5	-
5세	-	2.5	-	-	-	1.7	2.4	-	-	-	2.2	2.5	1.9	-	-	1.2	-
혼합	-	2.4	-	-	-	1.1	1.2	-	0.9	-	1.2	0.6	0.9	-	-	-	-

주: 지역 내 전체 지원자/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서울과 세종 2지역은 유치원별 경쟁률의 평균값임.
 자료 미제출 지역은 수치 기입하지 않음.
 자료: 시도 교육청(2016a). 공립유치원 경쟁률 내부자료.

[그림 III-2-3]은 공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추천, 공립유치원 경쟁률 3개 검색어로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살펴본 것이다. 공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추천의 경우 유치원 신입원아 모집 시기인 10~11월 사이에 검색 빈도가 급격하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부록에는 구글트렌드 경향성을 수록하였다.



[그림 III-2-3] 네이버 트렌드

바. 예산

유아교육 예산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예산은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소요예산으로 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나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으로 지출된다.

2013년 기준 교육여건개선 예산은 186,541백만원으로, 유아교육 예산 중 4.5%로 적다. 2010년 14.1%에서 매년 감소한다.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최근 단설유치원이 대거 설립되고 있는 세종이 42.6%로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을 교육여건개선시설비로 지출하고 있다.

〈표 III-2-7〉 연도별 교육여건 개선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지역	2010		2011		2012		2013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예산대비 비율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예산대비 비율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예산대비 비율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예산대비 비율
계	211,912	14.1	215,582	11.7	267,195	9.9	186,541	4.5
서울	27,036	19.4	34,265	17.5	46,521	16.4	23,154	3.8
부산	4,519	5.4	5,037	4.6	6,626	4.3	8,998	4.3
대구	4,746	7.9	12,416	15.0	3,783	3.1	4,154	2.5
인천	10,480	13.3	11,527	10.8	9,128	6.4	4,077	2.1
광주	9,818	20.7	2,358	4.4	2,469	2.7	5,285	4.2
대전	4,899	10.3	3,842	6.8	5,436	5.9	3,027	2.3
울산	7,295	20.2	1,194	2.8	7,905	11.8	772	0.8
세종	-	-	-	-	25	0.4	11,515	42.6
경기	45,612	12.6	45,068	10.5	67,819	10.1	61,955	5.9
강원	10,685	15.9	11,025	17.4	4,422	4.1	1,996	1.4
충북	16,685	26.3	20,957	24.3	21,181	19.6	8,370	5.2
충남	11,423	15.2	305	0.4	15,461	12.0	4,350	2.2
전북	8,138	10.7	14,054	14.6	29,842	19.6	9,407	4.9
전남	16,528	17.0	25,232	20.3	25,888	18.1	13,288	7.0
경북	14,717	12.3	7,332	5.2	5,521	3.1	11,718	4.1
경남	16,696	12.9	15,358	10.3	10,534	4.8	13,411	4.3
제주	2,635	15.2	5,612	23.3	4,634	13.1	1,064	1.9

자료: 최은영 외(2013, 2014a).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재구성.

<표 III-2-8>은 2013-2014년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세부사업별 예산을 나타낸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 중 대부분이 공립유치원 신·증설비에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8〉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세부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학생수용 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67,423	-	167,423	357,147	-	357,147
	기타원아수용시설 설립비	2,891	-	2,891	138	-	138
교육환경 개선시설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7,678	-	7,678	7,976	-	7,976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4,587	-	4,587	43	-	43
	기타유치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3,652	310	3,962	3,930	91	4,021

자료: 교육부(2014a).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최은영 외(2014a). 2014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I-2-9>는 2011년~2016년 사이에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2-9〉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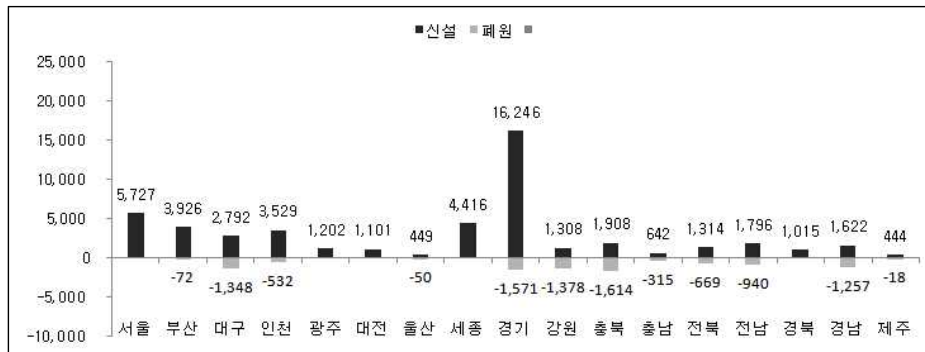
단위: 개원, 명

지역	신설						폐원		증감 규모	
	단설		병설		계		병설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전체	188	30,171	340	19,266	528	49,437	285	9,764	243	39,673
서울	10	1,699	57	4,028	67	5,727	-	-	67	5,727
부산	12	1,942	30	1,984	42	3,926	3	72	39	3,854
대구	12	2,308	14	484	26	2,792	32	1,348	▽6	1,444
인천	7	1,176	30	2,353	37	3,529	9	532	28	2,997
광주	5	780	12	422	17	1,202	-	-	17	1,202
대전	4	463	12	638	16	1,101	-	-	16	1,101
울산	2	252	4	197	6	449	2	50	4	399
세종	25	4,416	-	-	25	4,416	-	-	25	4,416
경기	54	10,026	117	6,220	171	16,246	29	1,571	142	14,675
강원	12	1,142	4	166	16	1,308	48	1,378	▽32	▽70
충북	12	1,694	2	214	14	1,908	23	1,614	▽9	294
충남	2	233	7	409	9	642	13	315	▽4	327
전북	7	854	13	460	20	1,314	19	669	1	645
전남	11	1,459	8	337	19	1,796	37	940	▽18	856
경북	4	531	10	484	14	1,015	35	-	▽21	1,015
경남	9	1,196	9	426	18	1,622	34	1,257	▽16	365
제주	-	-	11	444	11	444	1	18	10	426

주: 증감 규모는 신설에서 폐원 기관과 정원 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6).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 내부자료.

신설 유치원은 단설 총 188개원, 병설 340개원 총 528개원이다. 반면에 폐원 유치원은 285개원으로 신설 유치원 수의 절반 정도이다. 폐원 유치원은 초등학교 폐교 및 인근 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통합되면서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시도별로 보면, 유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단설유치원 54개원, 병설유치원 117개원이 설립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위례, 동탄 등 신도시 개발로 단설유치원이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는 단설유치원만 25개원이 설립되었다. 반면, 영유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지역은 총 48개원이 폐원되었고, 다음으로 전남 37개원, 경북 35개원, 경남 34개원 순이다.

[그림 III-2-4]는 정원을 기준으로 신설과 폐원 규모를 시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16,246명이 증원되었고, 다음으로 서울 5,727명, 부산 3,926명, 인천 3,529명, 나머지는 1천명 내외이고, 폐원은 충북 1,614명, 강원과 대구가 각각 1,378명과 1,348명, 경남 1,257명, 전남 940명, 나머지는 500명 내외 순이고, 제주가 18명으로 가장 적다.



[그림 III-2-4]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2011~2016

3. 시사점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0~5세 영유아 수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2013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유아는 유치원 이용을 선호하면서 유치원 이용 아동은 늘고 있다.

둘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2016년 3월 기준 총 459개 지역으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의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쇄됨에 따라 미설치 지역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들 지역은 민간이 재정운영 측면에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진입을 꺼려하는 지역들이다.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 수는 국공립이 2015년 기준 74.7명으로 전체 입소대기 아동의 24.8%를 차지하고, 공립유치원 입학경쟁률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3~4로 매년 상승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이 민간어린이집 또는 사립유치원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부모들로 하여금 선호하도록 만든 것이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 기준은 1991년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1995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설치 기준 해당 사업장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IV.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분석틀 개발 및 평가

제4장은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기준이 되는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을 평가하였다. 분석틀은 적절성,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기관유형 및 평가요소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분석틀 개발

가. 개발 방향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보건사회부, 1991a).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일반지역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유아교육 분야도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낙후된 읍면지역 유아가 우선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일반지역은 사립유치원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양적 확대를 초래하였다. 보육분야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난립하였고, 어린이집 내에서는 급간식¹⁵⁾ 및 안전사고¹⁶⁾, 아동학대¹⁷⁾ 등의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¹⁸⁾. 이에 따라 정부가 설치·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15) “어린이집 태반이 보조금 빼먹고 부실 급식”(국민일보, 2013.5.7 기사)

16) “보육교사 40분 자리비워 방치 7개월된 영아 질식사”(국민일보, 2016.9.5. 기사)

17) “인천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두 살배기 내동맹이”(TV조선 뉴스 2014.12.20)

질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¹⁹⁾. 유아교육 분야도 정부 지원 확대와 누리과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육비가 매년 상승하자²⁰⁾ 사립유치원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 선호도가 높아졌다²¹⁾. 2013년 누리과정 3~4세 확대와 함께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3~5세 유아의 유치원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 수년간 보육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민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서문희 외, 2012a; 양미선 외, 2013a, 2014a),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는 못 미치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문희 외, 2013; 양미선 외, 2013b).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보육·교육 공급정책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공급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상태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은 국가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백선희, 2009).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부지 매입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나 설치비 외에 부지 매입비는 지방정부 몫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은 초창기부터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²²⁾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재정 및 세제혜택 지원 등 유인정책과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규제 정책 양방

18) “수도권 일대 ‘보육대란’ 제각제각”(한국일보 2015.12.23. 기사)

19)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경쟁률 47대1”(이데일리, 2014.8.21. 기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별따기’...대기 4000명 넘는 곳도”(국민일보, 2014.12.30. 기사)

“어린이집 쏠림, 보육서비스 평준화로 해결해야”(이데일리, 2015.12.31. 기사)

20) “누리과정 4년의 악몽, 착한 정책 나쁜 결과(주간동아 2016.1.20. 기사)

“대학 등록금 맞먹는 사립유치원 학비(세계일보, 2014.8.29. 기사)

21) “공립유치원 입학 ‘하늘의 별따기’”(YTN, 2014.12.12)

“대입보다 힘든 유치원 입학” 유아 10명중 6명 유치원 못들어가”(헤럴드POP, 2014.3.17. 기사)

“유치원 입학 경쟁률 ‘양극화’”(문화일보, 2015.9.7. 기사)

22) “매년 ‘추첨대란’ 공립유치원, 왜 못늘리나 봤더니(아시아경제, 2012.12.12. 기사)

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과 설치 후 유지·관리, 보육수요 부족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²³⁾.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은 높은 선정기준과 선정 이후 재무회계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 하며, 3년 마다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운영비 지원 단가는 부모 부담 보육료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공공형어린이집이 확대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의 기본 방향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다양한 성과를 측정하여, 공급정책 자체를 평가하는 동시에 공급자 및 수요자 등 다양한 주체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나. 공급정책 분석틀 개발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2차 중장기보육정책과 유아교육발전계획 등에 제시된 공보육·교육 즉,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목표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분석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강영욱, 2004; 권기성·강영욱, 2006; 김병만, 2014; 백선희, 2009)를 근거로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절성,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등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평가요소별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평가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직장 및 공공형 어린이집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기관 유형별로 설치 목적이나 추진 방법이 상이하므로 세부 목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통 지표와 각 기관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택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은 <표 IV-1-1>에 제시하였다. 우선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공통 목표는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

23) “직장어린이집 ‘절반’만 설치, 강제금 0원”(KBS뉴스, 2016.11.7)

“직장어린이집 없는 기업 2곳 중 1곳 ‘앞으로 설치계획 없다’”(헤럴드경제, 2016.12.4. 기사)

“직장어린이집 의무설립 이행률 52% 그쳐”(문화일보, 2016.12.14. 기사)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상당수 ‘나 몰라라’”(연합뉴스, 2016.12.7. 기사)

스 제공, 부모비용 부담 경감 3가지이며, 기관별 세부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취업모의 양육부담 경감, 직장어린이집은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의 노동력 창출,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설정하였다.

〈표 IV-1-1〉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 분석틀

	공보육 공급정책			공교육 공급정책
	↓	↓	↓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립유치원
공동 목표	- 공공성 강화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 비용부담 경감			-공공성 강화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부모 부담 경감
세부 목표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	취업모 양육부담경감 여성노동력 창출	민간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제고	취업모 양육부담경감
	↓	↓	↓	↓
적절성	-질적 분석 -성과평가	-질적 분석 -성과평가	-질적 분석 -성과평가	-질적 분석 -성과평가
보편성	-공급/이용률 -취약보육 운영/이용률 -이용시간 -입소대기아동 비율	-공급/이용률 -취약보육운영/이용률 -이용시간	-공급/이용률	-취원율 -돌봄교실 운영률 -이용시간 -1개원당 학급수
효과성	-평가인증율 -1급 보육교사 비율 -아동1인당 보육비용 -이용자 만족도	-평가인증율 -1급 보육교사 비율 -아동1인당 보육비용 -이용자 만족도	-평가인증율 -1급 보육교사 비율 -아동1인당 보육비용 -이용자 만족도	-평가참여율 -아동1인당 교육비용 -교직원 1인당 아동수 -학급당 원아 수
효율성	-아동1인당 확충 예산 -기본급,급간식비,교재교구비	-아동1인당 설치예산	-아동1인당 공공형 예산 -기본급,급간식비,교재교구비	-아동1인당 교육여건 개선비 -인적자원,급식관리,기본적교육활동비

각 평가요소별 개념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성은 정부의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설계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이는 중장기보육정책과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

획에 명시된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질적인 분석을 실시하되,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 시도교육청 및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양적인 지표로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성은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의 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공급률과 이용률 또는 취원율과 1개 원당 학급수, 취약보육 운영이용률과 돌봄교실 운영률, 입소대기아동 비율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보육통계와 교육통계, 입소대기시스템 및 교육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효과성은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보육·교육서비스의 질과 보육교육비용 절감 효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은 교사 1인당 아동 수와 평가 등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보육 분야는 평가인증 점수, 유치원은 유치원 평가 참여율²⁴⁾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육·교육비용 절감 효과는 아동 1인당 보육·교육비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육·교육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시간, 이용자 만족도 등의 분석자료는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a)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조사(양미선 외, 2013c, 2014b) 등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투입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으로 보고, 수익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가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을 위한 자료는 보육예산(보건복지부, 각 년도)과 유아교육 예산(교육부, 각 년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와 유치원 교육비 현황 자료(김은설 외, 2013; 김은설 외, 2014; 최은영 외, 2015a) 등을 활용하였다.

2. 공보육 공급 정책 평가

가. 적절성

공보육 즉,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적절성은 목표의 적절

24) 교육부는 유치원 평가 참여율은 공개하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음.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의 적절성은 정책의 목표에 맞게 세부내용이 설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제2차 아이사랑플랜)에 나타난 공보육 공급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평가하였다. 즉, 공보육 공급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의 불일치를 통해 공급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분석방법이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보건복지부, 2013e)에서 공보육 확충과 관련 있는 과제는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 어린이집 확대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3가지 세부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현행 설치·인가기준을 강화하여 부채를 수반한 민간 생계형 어린이집의 진입을 제한하고,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13년 6월 기준 약 26%에서 2017년 약 33%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진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50개 소씩 지속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및 규제 개선, 설치 지원 확대 및 명단 공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공공형어린이집과 같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확대이다(보건복지부, 2013e).

세부 추진방법 별로 평가하면, 정부는 201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연 150개 확충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재정 악화로 2016년은 당초 계획보다 10% 축소된 135개소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였고, 2017년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량이 90개소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베이비뉴스, 2016.12.16.일 기사). 또한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²⁵⁾ 이용 아동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20.8%로 2012년 이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낮아졌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표 II-1-8>과 같이,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주었다. 그간 노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은 2013년 619개소에서 2015년 785개소로 26.8%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III-1-11 참조).

25) 2015년 말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총 1,452,813명으로 이중 국공립 165,743명, 직장 44,765명, 공공형 92,481명임(보건복지부, 2015c).

공공형어린이집은 매년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2015년에는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부모 보육료 인상률이 높아서 1,500~1,700개소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IV-2-1~표 IV-2-4 참조).

7개 세부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7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5.2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평균 4.98점, 부모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평균 4.94점,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공공형어린이집) 도입 및 운영 평균 4.72점 순으로 대부분 중간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은 평균 2.93점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들은 가장 성과가 저조한 과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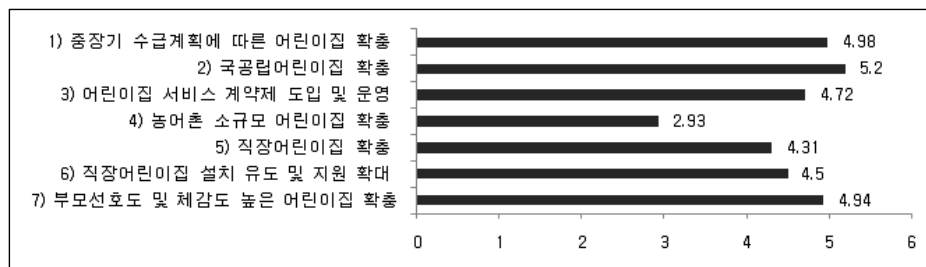
〈표 IV-2-1〉 공보육 공급정책 성과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성과 전혀 없음	2	3	보통	5	6	성과 매우 큼	계(수)	7점 평균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3.1	2.3	3.8	35.4	14.6	20.8	20.0	100.0(130)	4.9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6	0.8	8.5	20.8	16.2	20.0	29.2	100.0(130)	5.20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 및 운영	10.0	0.8	1.5	29.2	23.8	23.1	11.5	100.0(130)	4.7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39.2	6.9	4.6	31.5	9.2	5.4	3.1	100.0(130)	2.93
직장어린이집 확충	10.8	6.9	6.2	31.5	18.5	13.8	12.3	100.0(130)	4.3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8.5	4.6	7.7	26.9	23.1	18.5	10.8	100.0(130)	4.50
부모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0.8	2.3	6.9	31.5	23.1	21.5	13.8	100.0(130)	4.94

주: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말함. 중장기 보육계획 상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조사」 결과임.



[그림 IV-2-1] 공보육 공급정책 성과 평가

<표 IV-2-2>는 앞서 평가한 7개 세부과제 중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를 조사한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앞서 제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공공형어린이집) 도입 및 운영,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로 선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응답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선순위는 전체 응답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표 IV-2-2>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

단위: %(명)

구분	시도		지역규모			전체
	광역시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9.8	5.8	10.3	8.2	-	7.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0.7	44.9	60.3	38.8	60.9	52.3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도입 및 운영	14.8	21.7	13.8	24.5	17.4	18.5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	4.3	-	-	13.0	2.3
직장어린이집 확충	9.8	10.1	10.3	14.3	-	1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1.6	7.2	1.7	10.2	-	4.6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3.3	5.8	3.4	4.1	8.7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1)	(69)	(58)	(49)	(23)	(130)

주: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는 '공공형어린이집'를 말함. 중장기 보육계획 상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음은 7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표 IV-2-3>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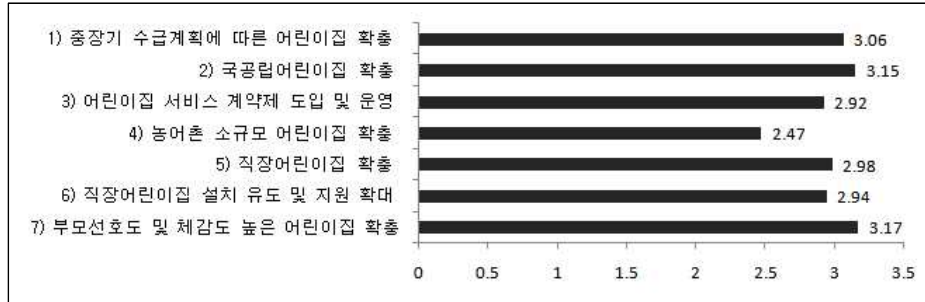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2.3	14.6	57.7	25.4	100.0(130)	3.0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	10.0	58.5	29.2	100.0(130)	3.15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운영	4.6	17.7	58.5	19.2	100.0(130)	2.9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17.7	25.4	49.2	7.7	100.0(130)	2.47
직장어린이집 확충	4.6	15.4	57.7	22.3	100.0(130)	2.98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4.6	18.5	55.4	21.5	100.0(130)	2.94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1.5	9.2	60.0	29.2	100.0(130)	3.17

주: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는 '공공형어린이집'를 말함. 중장기 보육계획 상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조사」 결과임.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이 4점 만점에 평균 3.17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평균 3.15점,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평균 3.06점 순이고, 나머지는 3점 미만으로 지속 추진 필요성 점수가 낮았다.



[그림 IV-2-2] 향후 지속 추진 과제

향후 지속 추진 과제를 시도 및 지역규모에 따라 추가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40%로 높고,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21.5%,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2.3%,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9.2% 순이다.

<표 IV-2-4> 향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단위: %(명), 명

구분	시도		지역규모			전체
	광역시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11.5	7.2	12.1	6.1	8.7	9.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4.3	36.2	43.1	40.8	30.4	40.0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 운영	9.8	14.5	8.6	20.4	4.3	12.3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	5.8	-	-	17.4	3.1
직장어린이집 확충	1.6	4.3	1.7	4.1	4.3	3.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4.9	5.8	5.2	6.1	4.3	5.4
협동어린이집 확산	8.2	2.9	8.6	2.0	4.3	5.4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19.7	23.2	20.7	20.4	26.1	2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1)	(69)	(58)	(49)	(23)	(130)

주: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는 '공공형어린이집'를 말함. 중장기 보육계획 상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도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읍면지역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이 17.4%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IV-2-4 참조).

나. 보편성

보편성은 공보육 공급 정책의 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급률과 이용률,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및 이용률, 입소대기 아동 비율, 어린이집 이용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산출방법은, 공급률은 0~6세 영유아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이용률은 0~6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현원,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등하원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1) 공급률과 이용률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은 2010년 48.5%에서 2015년 56.2%, 이용률은 39.9%에서 45.6%로 6%p 이상 상승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동기간 동안 4.8%에서 5.9%, 이용률은 4.3%에서 5.2%로 각각 1%p 정도만 상승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2013년 이후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공급률 및 이용률이 소폭 증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2-5〉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구분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세 영유아수	3,208,694	3,212,933	3,265,160	3,264,476	3,210,156	3,187,718
정원						
전체	1,556,808	1,621,948	1,721,917	1,782,459	1,800,659	1,790,821
국공립	153,792	157,478	162,926	170,050	179,939	188,661
직장	28,316	32,536	38,404	44,783	51,667	59,245
공공형	-	-	-	83,213	95,220	102,989
현원						
전체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국공립	137,604	143,035	149,677	154,465	159,241	165,743
직장	21,901	24,987	29,881	34,479	39,265	44,765
공공형	-	-	-	75,790	87,036	92,240

(표 IV-2-5 계속)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급률						
전체	48.5	50.5	52.7	54.6	56.1	56.2
국공립	4.8	4.9	5.0	5.2	5.6	5.9
(증감률)	-	(0.1)	(0.1)	(0.2)	(0.4)	(0.3)
직장	0.9	1.0	1.2	1.4	1.6	1.9
(증감률)	-	(0.1)	(0.2)	(0.2)	(0.2)	(0.3)
공공형	-	-	-	2.5	3.0	3.2
(증감률)	-	-	-	-	(0.4)	(0.3)
이용률						
전체	39.9	42	45.6	45.6	46.6	45.6
국공립	4.3	4.5	4.6	4.7	5.0	5.2
(증감률)	-	(0.2)	(0.1)	(0.1)	(0.3)	(0.2)
직장	0.7	0.8	0.9	1.1	1.2	1.4
(증감률)	-	(0.1)	(0.1)	(0.2)	(0.1)	(0.2)
공공형	-	-	-	2.3	2.7	2.9
(증감률)	-	-	-	-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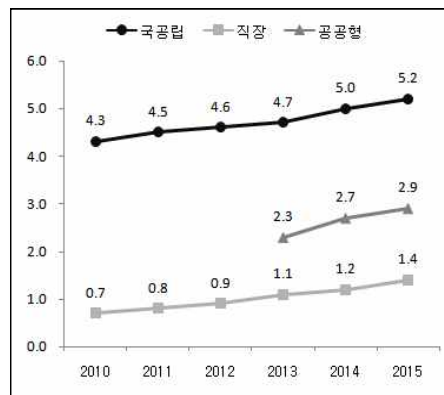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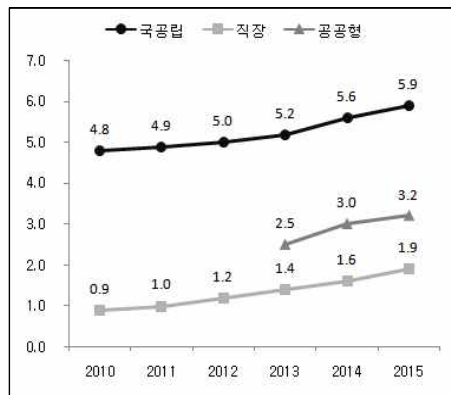
주: 공급률은 정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이용률은 현원 대비 전체 영유아 비율 의미함.

공공형어린이집은 12월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관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a). 어린이집 일람 현황 내부자료(12월 말 기준).



[공급률] [이용률]
 [그림 IV-2-3]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직장어린이집은 공급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1.9%로 1%p 정도 상승하였으나, 이용률은 0.7%에서 1.4%로 공급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

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을 완화, 설치비 지원 확대, 명단 공표 정례화 등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급률이 2013년 2.5%에서 2014년 3.0%, 2015년 3.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용률은 2013년 2.3%에서 2014년 2.7%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2.9%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공급률과 이용률이 둔화된 까닭은 정원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 민간보다 공공형으로 우선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16년 기준 국공립이 1일 평균 7시간 20분, 직장은 9시간 1분, 민간 7시간 15분, 가정 7시간 19분이다. 국공립은 전국 평균 수준이고, 직장어린이집은 이보다 긴 이용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이용 아동 부모의 요구에 대응하여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다. 우리나라 보육은 그간 이용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운영시간이 이용시간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 어린이집은 장시간 이용 아동을 기피하여 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6년 7월 아이와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상황에 맞게 지원을 다양화하는 맞춤형보육을 도입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2-6〉 어린이집 이용시간

구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전체
2012년	7시간 52분	9시간 33분	7시간 33분	7시간 9분	7시간 34분
2013년	7시간 31분	8시간 38분	7시간 17분	7시간 8분	7시간 21분
2014년	7시간 20분	8시간 35분	7시간 21분	7시간 10분	7시간 20분
2016년	7시간 20분	9시간 1분	7시간 15분	7시간 19분	7시간 16분

주: 2015년 자료는 조사방법이 종전 선행연구들과 상이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서문희 외(2012a).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3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4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4.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23~124.
 양미선 외(2016).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6.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예정.

3) 취약보육 운영률 및 이용률

어린이집에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 즉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과 장애아통합과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방과후 어린이집 등을 운영한다.

시간연장보육 운영률은 2015년 기준 국공립 64.36%, 직장이 17.32%이다. 국공립은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이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각각 17.67%, 16.4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부록 표 IV-2-1>에는 국공립, 공공형,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비율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전문과 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등 모든 취약보육 운영률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높아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운영을 위탁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7〉 취약보육 운영

단위: 개소, %

구분	어린이집 수				운영률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시간연장	1,692	136	2,584	3,633	64.36	17.32	17.67	16.46
24시간	72	5	89	83	2.74	0.64	0.61	0.38
휴일	125	9	71	38	4.75	1.15	0.49	0.17
장애아전문	40	-	25	1	1.52	0.00	0.17	0.00
장애아통합	641	7	159	17	24.38	0.89	1.09	0.08
영아전담	59	-	263	52	2.24	0.00	1.80	0.24
방과후	66	2	116	7	2.51	0.25	0.79	0.03

자료: 보건복지부(2015c). 보육통계.

<표 IV-2-8>은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과 휴일보육, 장애아통합과 전문, 영아전담, 방과후 등 취약보육 이용률이다. 시간연장보육은 국공립이 3.32%, 직장 2.70%, 민간 1.93%, 가정 4.50%로 국공립이나 직장에 비해 가정의 이용률이 높다. 그러나 장애아통합과 영아전담은 국공립이 각각 1.72%, 1.51%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정원 규모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둘째는 취업모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IV-2-8〉 취약보육 이용

단위: 개소, %

구분	이용 아동 수				이용률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시간연장	5,500	1,208	14,466	15,466	3.32	2.70	1.93	4.50
24시간	176	13	315	209	0.11	0.03	0.04	0.06
휴일	50	45	177	32	0.03	0.10	0.02	0.01
장애아전문	1,156	0	701	18	0.70	0.00	0.09	0.01
장애아통합	2,854	17	667	23	1.72	0.04	0.09	0.01
영아전담	2,509	0	8,947	994	1.51	0.00	1.20	0.29
방과후	1,030	33	666	12	0.62	0.07	0.09	0.00

주: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비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c). 보육통계.

4) 입소 대기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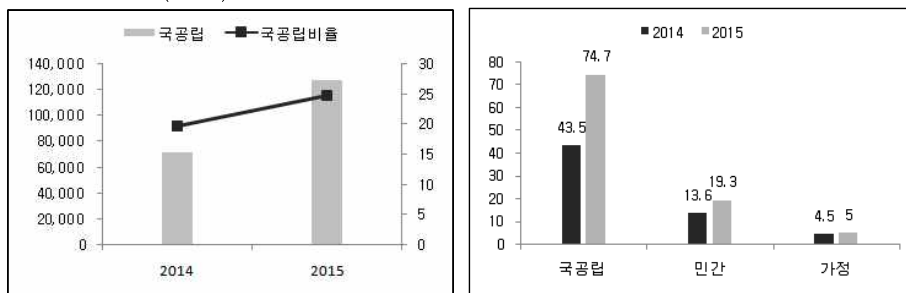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수는 2014년 362,759명, 2015년 513,652명이고, 1개소당 대기아동수는 각각 9.8명, 14.3명으로 매년 대기 아동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아동 수는 2014년 71,506명, 2015년 127,472명으로 1개소당 대기 아동수를 산출하면, 각각 43.5명, 74.7명 꼴이다. 이는 전체 대기 아동 대비 19.7%, 24.8%를 차지하는 비율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9〉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아동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입소대기 아동수			1개소당 대기 아동수	
	전체	국공립	국공립비율	전체	국공립
2014	362,759	71,506	19.7	9.8	43.5
2015	513,652	127,472	24.8	14.3	74.7

주: 서울은 자체 입소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요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2016e).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내부자료.



[그림 IV-2-4]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 비율: 2014-2015년

다. 효과성

효과성은 공보육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보육비용 절감 효과,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 여성 노동력 창출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세부지표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평가인증율과 1급 보육교사 비율, 이용자 만족도, 보육비용 절감 효과는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1)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가 평가인증이다. 2016년 4월 말 기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중 신규는 전체 대비 129.9%, 재인증 78.4%이다. 2005년~2015년 10기 신규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총 54,109개소로 국공립 98.9%, 직장 67.4%이고, 민간개인과 가정은 각각 128.0%, 138.5%이다. 재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총 32,651개소로, 국공립과 직장은 각각 128.4%, 48.3%이고, 민간개인 79.9%, 가정 67.1%이다(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2016. 11. 30 인출). 2005년~2013년 9기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민간과 가정의 신규 및 재인증 통과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평가인증 통과 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공공형 선정기준 중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41,666	2,732	1,408	15,244	21,247	155	880
신규인증 (인증율)	54,109 (129.9)	2,701 (98.9)	1,782 (126.6)	19,515 (128.0)	29,433 (138.5)	85 (54.8)	593 (67.4)
재인증 (인증율)	32,651 (78.4)	3,058 (128.4)	2,244 (159.4)	12,174 (79.9)	14,261 (67.1)	39 (25.2)	425 (48.3)

주: 2016. 4. 30일 기준임.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포함됨.

신규인증은 2005년~2015년 10기 인증통과 현황, 재인증은 2010년~2016년 1기 재인증통과 현황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평가인증 관련 통계(2016. 5. 20 인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은 2016년 기준 79.6%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91.7%, 직장 58.7%, 민간 77.8%, 가정 79.3%로 국공립어린이

집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인증유지율이 높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평균,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에도 크게 못 미친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평가인증 유지율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2012	42,527	2,203	523	14,440	22,935
인증유지 (유지율)	27,357 (64.3)	1,982 (90.0)	281 (53.7)	9,242 (64.0)	13,914 (60.7)
2013	43,770	2,332	619	14,751	23,632
인증유지 (유지율)	30,955 (70.7)	2,141 (91.8)	362 (58.5)	10,235 (69.4)	16,217 (68.6)
2014	43,742	2,489	692	14,822	23,318
인증유지 (유지율)	33,050 (75.6)	2,280 (91.6)	453 (65.5)	11,163 (75.3)	17,162 (73.6)
2015	42,517	2,629	785	14,626	22,074
인증유지 (유지율)	33,496 (78.8)	2,461 (93.6)	511 (65.1)	11,375 (77.8)	17,110 (77.5)
2016	41,081	2,830	940	14,331	20,616
인증유지 (유지율)	32,700 (79.6)	2,596 (91.7)	552 (58.7)	11,156 (77.8)	16,355 (79.3)

주: 2016년 자료는 11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평가인증 관련 통계(2016. 11. 30 인출).

평가인증 통과 점수는 2016년 10월 말 기준 평균 94.9점으로,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직장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97.5점, 97.8점이고, 민간개인과 가정은 그보다 낮은 94.4점, 95.5점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표 IV-2-12〉 평가인증 통과 점수

구분	단위: 점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통과 점수	89.6	87.1	88.6	87.6	86.7	91.5	92.7	92.0	94.8	94.9	94.9

주: 2016년 10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p.13.

〈표 IV-2-13〉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점수

구분	단위: 점			
	국공립	직장	민간개인	가정
전체	97.5	97.8	94.4	95.5

주: 2016년 10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p.13.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 시 기본요건으로 평가인증 점수 90.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선정기관 전체가 평가인증 유지 상태이다. 평가인증 통과 점수는 2015년 말 기준 평균 97.63점으로 2013년 96.13점에서 2014년 92.42점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보다 높으나 직장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표 IV-2-13, 표 IV-2-14).

〈표 IV-2-14〉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점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인증점수	96.13	92.42	97.63

자료: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37.

2)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1급 보육교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평균이 47.2%로 2013년 42.5%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국공립은 동기간 동안 65.8%에서 76.0%로 10.2%p, 직장은 35.9%에서 48.7% 12.8%p, 공공형은 62.6%에서 67.9%로 5.3%p상승하였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1급 보육교사 비율

구분	2013	2014	2015
전체	42.5	45.6	47.2
국공립	65.8	72.4	76.0
직장	35.9	41.3	48.7
공공형	62.6	65.2	67.9

주: 각 년도 12월 말 자료를 분석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a). 어린이집 일람현황.

3)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a)와 2013~2014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양미선 외, 2013a, 2014a)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기준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은 평균 75,900원으로, 2012년 88,800원,

2013년 76,200원에서 매년 낮아지고, 가구소득대비 비율 또한 평균 2.2%로 2012년 3.5%에서 1%p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부모 부담 보육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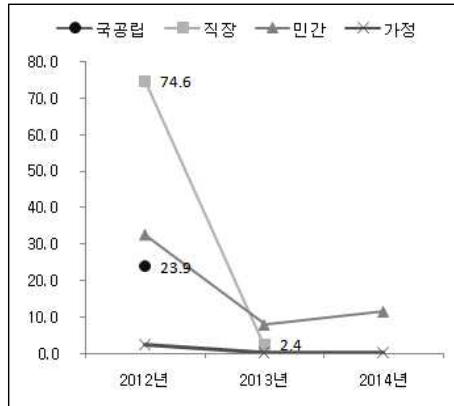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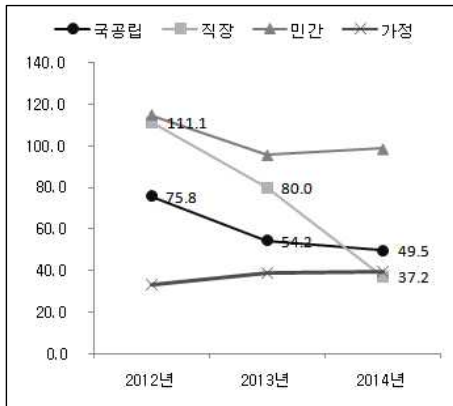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인당 보육비용은 2012년 75,800원에서 2013년 54,200원, 2014년 49,500원으로 3년 사이에 2만5천원 정도가 떨어졌다. 직장도 2012년 111,100원에서 2013년 80,000원, 2014년 37,200원으로 7만원 정도가 줄었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에 비용 차이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공립과 직장이 민간보다 적다.

〈표 IV-2-16〉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단위: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전체 비용	월 보육료	추가 비용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비용	월 보육료	추가 비용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비용	월 보육료	추가 비용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88.8	24.8	64.0	3.5	76.2	5.9	70.3	2.5	75.9	6.6	69.3	2.2
국공립	75.8	23.9	51.8	2.4	54.2	-	54.2	1.8	49.5	-	49.5	1.5
직장	111.1	74.6	36.5	2.2	80.0	2.4	77.6	2.3	37.2	-	37.2	0.7
민간	114.8	32.5	82.3	4.4	95.5	7.8	87.8	3.2	98.4	11.4	87.0	2.9
가정	33.1	2.4	30.7	1.8	38.8	0.2	38.5	1.1	39.4	0.3	39.1	1.1

자료: 서문희 외(2012a),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3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4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전체 보육비용]

[월 보육료]

[그림 IV-2-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

4) 이용자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는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 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등 상담 등 13개 항목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의미한다. 자료 산출은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a)와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양미선 외, 2013a, 2014a)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1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5점 만점에 평균 4.17점, 직장 평균 4.24점으로 3점 대의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국공립 만족도는 2012년 5점 만점에 평균 3.85점에서 2013년 4.00점, 2014년 4.17점으로 상승하였다.

〈표 IV-2-17〉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원장	4.22	4.16	4.02	4.29
교사	4.28	4.29	4.17	4.31
주변환경	4.12	4.23	3.74	3.91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4.13	4.29	3.80	3.84
교재교구 및 장비	4.06	4.17	3.77	3.77
내부 분위기	4.20	4.38	3.91	4.09
비용	4.21	4.52	3.50	4.12
건강관리	4.24	4.20	3.85	4.01
급간식관리	4.30	4.38	3.85	4.01
안전관리	4.27	4.31	3.90	4.04
교육내용	4.16	4.11	3.93	3.95
부모참여	4.05	3.99	3.70	3.70
부모교육 및 상담	4.09	4.09	3.75	3.79
전체 평균	4.17	4.24	3.79	3.93
(수)	(93)	(18)	(693)	(304)
2013년 조사	4.00	3.92	3.77	3.93
2012년 조사	3.85	4.13	3.65	3.67

자료: 서문희 외(2012a).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3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외(2014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4.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23~124.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사업장 근로자 중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직장어린이집 이외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는 5점 척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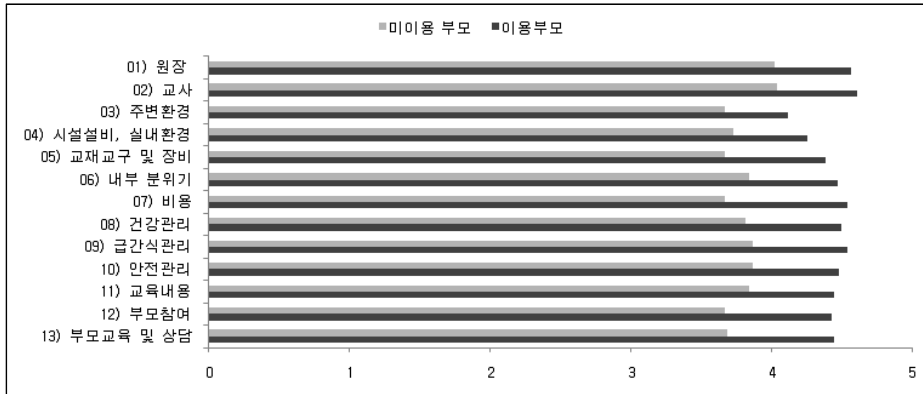
환산하면 평균 4.45점인데 반해 미이용 부모는 평균 3.80점으로 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 간에 차이가 컸다. 항목별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교사, 원장 순으로 높고,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미이용 부모도 교사,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교재교구 및 장비와 비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만족도가 낮아서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2-18〉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2016

단위: 점(명)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만족	매우 만족	5점평균	만족	매우 만족	5점평균
원장	24.2	66.7	4.57	40.0	35.6	4.02
교사	27.4	66.7	4.61	53.3	31.1	4.04
주변환경	27.9	45.2	4.12	31.1	24.4	3.67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4.2	47.5	4.26	33.3	26.7	3.73
교재교구 및 장비	35.6	52.1	4.39	35.6	24.4	3.67
내부 분위기	35.2	56.2	4.47	40.0	26.7	3.84
비용	28.8	62.6	4.54	33.3	22.2	3.67
건강관리	33.3	58.4	4.50	37.8	26.7	3.82
급간식관리	26.0	64.4	4.54	28.9	33.3	3.87
안전관리	32.4	58.0	4.48	44.4	26.7	3.87
교육내용	35.6	54.8	4.45	40.0	28.9	3.84
부모참여	32.9	55.3	4.43	37.8	24.4	3.67
부모교육 및 상담	32.4	56.2	4.45	37.8	26.7	3.69
전체 평균 (수)	31.2	57.2	4.45 (219)	38.0	27.5	3.80 (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미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2-6]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2014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양미선 외, 2014) 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이고, 통제변수는 영유아 연령,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등 영유아 및 모의 제 특성이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별 기초 통계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V-2-19〉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종속변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13개 항목 평균)
통제변수	영유아 연령,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어린이집 총비용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인은 취업모로 19%($p<.001$)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형 중 민간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추가 투입하면 설명력이 40%로 증가하고($p<.001$), 영유아 연령, 어린이집 총비용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45%로 상승한다($p<.001$).

〈표 IV-2-20〉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

모델	독립변인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R ²	F
1단계	모취업 형태(취업=1)	2.196	.354	.138	0.19	38.480***
2단계	모취업 형태(취업=1)	2.130	.353	.134	0.28	29.093***
	어린이집 유형(민간=1)	-1.501	.341	-.098		
3단계	모취업 형태(취업=1)	2.200	.351	.138	0.40	28.301***
	어린이집 유형(민간=1)	-2.079	.358	-.135		
	어린이집 유형(사회복지법인=1)	-3.444	.676	-.119		
4단계	모취업 형태(취업=1)	2.060	.354	.130	0.43	23.363***
	어린이집 유형(민간=1)	-2.349	.369	-.153		
	어린이집 유형(사회복지법인=1)	-3.811	.686	-.131		
	영유아 연령	.357	.124	.066		
5단계	모취업 형태(취업=1)	2.007	.354	.126	0.45	19.793***
	어린이집 유형(민간=1)	-1.855	.426	-.121		
	어린이집 유형(사회복지법인=1)	-3.801	.686	-.131		
	영유아 연령	.527	.144	.098		
	총비용	-.009	.004	-.071		

주: 1) 어린이집 총 비용은 추가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 포함)를 합산한 금액임.

2) 어린이집 유형, 모 취업여부(미취업=0, 취업=1), 지역규모 Dummy 처리함.

*** $p < .001$

즉,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모가 취업모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많을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라. 효율성

효율성은 투자 대비 수익으로 평가한다. 세부지표는 아동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직장어린이집설치 예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등을 산출하고, 어린이집 세출예산 중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3개 항목에 대한 아동 1인당 비용과 편익비를 산출하였다.

1) 아동 1인당 지원 예산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전체 보육예산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2%로 미미하지만, 아동 1인당 예산을 산출하면, 2015년 기준 3.6백만원이고, 2010년 1.7백만원에서 2012년 2백만원 선, 2014년 3백만원 선을 넘었다.

〈표 IV-2-21〉 아동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육예산						
전체	2,127,510	2,478,380	3,028,567	4,131,345	5,273,950	5,186,136
국공립확충 (비율)	2,695 (0.13)	2,695 (0.11)	2,933 (0.10)	15,816 (0.38)	32,408 (0.61)	31,900 (0.62)
보육 아동수						
전체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국공립	137,604	143,035	149,677	154,465	159,241	165,743
아동 1인당 예산						
보육예산 (증감분)	1.7 -	1.8 (0.1)	2.0 (0.2)	2.8 (0.8)	3.5 (0.7)	3.6 (0.1)
확충예산 (증감분)	0.02 -	0.02 -	0.02 -	0.1 (0.08)	0.2 (0.1)	0.19 (-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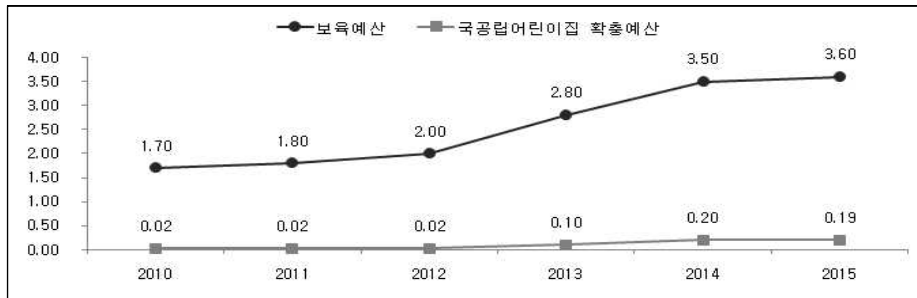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0,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보육사업안내.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15년 기준 아동 1인당 0.19백만원으로

아동 1인당 보육예산에 비해 1/8 정도로 적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9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이명박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매년 150개소 씩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V-2-7] 아동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보육예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총 예산은 2015년 기준 90,911백만원으로 이중 설치지원 예산은 28,709백만원이다. 설치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한다.

아동 1인당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는 2013년 1.9백만원에서 2014년 1.8백만원으로 삭감되었다가 2015년 2.0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설치비는 2015년 0.7백만원에서 2014년 0.4백만원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0.6백만원으로 늘었다.

<표 IV-2-22> 아동 1인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명(%)		
	2013	2014	201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총예산	64,111	69,440	90,91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예산	23,134	16,796	28,709
(비율)	(36.1)	(24.2)	(31.6)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34,479	39,265	44,765
아동 1인당 설치운영비	1.9	1.8	2.0
아동 1인당 설치비	0.7	0.4	0.6
(증감분)	-	(-0.3)	(0.2)

자료: 고용노동부(2013, 2014, 2015). 예산 및 국가기금운용 개요.
보건복지부(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은 2015년 기준 44,071백만원으로 지정 시설수 증가와 함께 예산도 비례하여 증액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예산을 산출하면 2013년 0.4백만원이다. 2014년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나 2015년 0.5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IV-2-23〉 아동 1인당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명(%)		
	2013	2014	2015
공공형어린이집 예산	33,379	38,528	44,071
공공형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75,790	87,036	92,481
아동 1인당 예산	0.4	0.4	0.5
(증감분)	-	-	(0.1)

자료: 보건복지부(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a). 어린이집 일람현황(12월 말 기준).

2) 아동 1인당 지출비용(기본급,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어린이집 세출예산의 관항목 중 보육서비스의 질과 상관이 높다고 판단되는 교사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가) 분석 방법

2015년 9월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나 2015년 9월부터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다. 어린이집 재정은 현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원이 안정적인 9월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공립과 공공형,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이 20,687개소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세출예산의 관항목 중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정원규모별로 산출하였다. 추가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서문희 외(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 결과

(1)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세출항목별 지출금액 비교

(가) 전체

아동 1인당 월 비용은 617,380원이고, 기본급은 309,183원, 급간식비 48,535원, 교재교구비 9,691원으로 3항목을 합산한 금액은 367,409원이다.

이 3항목에 대한 국공립과 공공형과 일반(민간·가정)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유형 간의 배수를 보면, 3개 항목에 대한 공공형 대비 국공립은 0.988배이고, 공공형 대비 일반은 0.880배이다. 즉,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보다 기본급과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4〉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단위: 원(개소), %	
						(수)	비율
전체	309,183	48,535	9,691	367,409	617,380	(20,687)	
공인유형1							
공공형	326,827	48,381	13,816	389,025	593,419	(1,505)	7.3
일반(민간,가정)	305,041	48,148	8,594	361,782	674,166	(17,842)	86.2
국공립	344,667	53,909	19,719	418,295	600,362	(1,329)	6.4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37,974	53,972	7,606	499,552	746,082	(568)	2.7
공공형_민간	260,483	45,090	17,568	323,141	540,807	(937)	4.5
일반_가정	333,987	50,243	5,771	390,001	624,332	(11,787)	57.0
일반_민간	248,691	44,070	14,089	306,850	533,240	(6,055)	29.3
국공립	344,667	53,909	19,719	418,295	674,166	(1,329)	6.4
차이							
공공형-일반	21,786	233	5,222	27,243	-80,747		
공공형-국공립	-17,840	-5,528	-5,903	-29,270	-6,943		
가정(공공형-일반)	103,987	3,729	1,835	109,551	121,750		
민간(공공형-일반)	11,792	1,020	3,479	16,291	7,567		
배수							
공공형-일반	1.071	1.005	1.608	1.075	0.880		
공공형-국공립	0.948	0.897	0.701	0.930	0.988		
가정(공공형-일반)	1.311	1.074	1.318	1.281	1.195		
민간(공공형-일반)	1.047	1.023	1.247	1.053	1.014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그러나 공공형을 민간과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가정의 경우, 공공형 대비 가정은 1.195배, 민간어린이집은 공공형 대비 민간이 1.014로 공공형 가정과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 모두 일반(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원규모별 아동 1인당 비용

다음은 어린이집 정원을 20인 이하, 21~49인, 50~79인, 80인 이상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정원규모별로 국공립과 공공형,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세출 비용을 산출하였다.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기본급과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3개 항목을 합산한 비용이 공공형 아동 1인당 499,552원, 일반 389,974원, 국공립 702,739원으로 국공립이 가장 높고, 공공형, 일반 순이다. 일반어린이집 중 가정만 분리 산출하면 아동 1인당 390,001원으로 다소 상승한다. 공공형은 일반어린이집보다 1.281배 지출 비용이 많고 국공립에 비해서는 0.711배이다. 가정만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형 가정이 일반보다 1.195배 더 지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5〉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20인 이하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수)
전체	339,580	50,449	5,874	395,903	631,298	(12,397)
공인유형1						
공공형	437,974	53,972	7,606	499,552	746,082	(568)
일반	333,963	50,241	5,770	389,974	624,302	(11,793)
국공립	627,015	62,871	12,853	702,739	1,112,093	(36)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37,974	53,972	7,606	499,552	746,082	(568)
일반_가정	333,987	50,243	5,771	390,001	624,332	(11,787)
국공립	627,015	62,871	12,853	702,739	1,112,093	(36)
차이						
공공형-일반	-189,041	-8,899	-5,247	-203,187	-366,011	
공공형-국공립	103,987	3,729	1,835	109,551	121,750	
가정(공공형-일반)	-286,999	-46,882	-3,517	-337,399	-564,800	
배수						
공공형-일반	1.311	1.074	1.318	1.281	1.195	
공공형-국공립	0.699	0.858	0.592	0.711	0.671	
가정(공공형-일반)	1.311	1.074	1.318	1.281	1.195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정원규모가 21~49인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항목 3종에 지출하는 비

용은 공공형이 아동 1인당 368,713원, 일반(민간)이 332,432원, 국공립이 510,241원으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민간어린이집만 산출하면, 공공형 민간은 아동 1인당 368,852원으로 소폭 상승하나 큰 차이는 없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월 세출규모 차이를 비교하면, 공공형이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1.109배 더 많이 지출하지만, 국공립에 비해서는 0.723배 지출한다. 민간어린이집만 비교하면 공공형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1.110배로 배수가 다소 커진다.

<표 IV-2-26>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21~49 인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수)
전체	293,411	46,329	12,222	351,963	583,570	(4,355)
공인유형1						
공공형	307,927	46,717	14,069	368,713	585,782	(286)
일반	275,947	44,981	11,504	332,432	557,794	(3,649)
국공립	435,258	57,777	17,207	510,241	806,012	(420)
공인유형2						
공공형_민간	308,049	46,745	14,058	368,852	586,190	(285)
일반_민간	275,947	44,981	11,504	332,432	557,794	(3,649)
국공립	435,258	57,777	17,207	510,241	806,012	(420)
차이						
공공형-일반	31,980	1,736	2,565	36,281	27,988	
공공형-국공립	-127,331	-11,060	-3,138	-141,528	-220,230	
민간(공공형-일반)	32,102	1,764	2,554	36,420	28,396	
배수						
공공형-일반	1.116	1.039	1.223	1.109	1.050	
공공형-국공립	0.707	0.809	0.818	0.723	0.727	
민간(공공형-일반)	1.116	1.039	1.222	1.110	1.051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표 IV-2-27>은 정원규모 50~70인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월 세출규모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기본급과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3개 항목에 대한 아동 1인당 비용은 공공형이 월 325,177원, 일반 287,037원, 국공립 377,962원이고, 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만 산출하면 월 326,102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공공형어린이집과의 차이를 보면, 50~70인 규모의 경우 공공형이 일반보다 1.133배 지출이 많지만 국공립보다는 0.860배로 낮다. 민간어린이집만 비교하면 공공형이 일반보다 1.136배 3개 항목에 대해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IV-2-27〉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50~79인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수)
전체	252,123	45,758	18,067	315,949	543,685	(1,612)
공인유형1						
공공형	260,646	45,028	19,503	325,177	540,619	(235)
일반	226,924	43,451	16,662	287,037	513,425	(963)
국공립	305,901	51,541	20,521	377,962	615,812	(414)
공인유형2						
공공형_민간	261,247	45,222	19,632	326,102	541,845	(227)
일반_민간	226,924	43,451	16,662	287,037	513,425	(963)
국공립	305,901	51,541	20,521	377,962	615,812	(414)
차이						
공공형-일반	33,722	1,577	2,841	38,140	27,194	
공공형-국공립	-45,255	-6,513	-1,018	-52,785	-75,193	
민간(공공형-일반)	34,323	1,771	2,970	39,065	28,420	
배수						
공공형-일반	1.149	1.036	1.171	1.133	1.053	
공공형-국공립	0.852	0.874	0.950	0.860	0.878	
민간(공공형-일반)	1.151	1.041	1.178	1.136	1.055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표 IV-2-28〉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80인 이상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수)
전체	216,127	44,386	19,503	280,017	506,077	(2,323)
공인유형1						
공공형	228,060	43,904	18,779	290,744	509,587	(427)
일반	193,906	42,160	18,974	255,041	484,039	(1,437)
국공립	274,593	51,803	21,834	348,230	571,808	(459)
공인유형2						
공공형_민간	228,179	43,908	18,819	290,906	509,819	(425)
일반_민간	193,906	42,160	18,974	255,041	484,039	(1,437)
국공립	274,593	51,803	21,834	348,230	571,808	(459)
차이						
공공형-일반	34,154	1,744	-195	35,703	25,548	
공공형-국공립	-46,533	-7,899	-3,055	-57,486	-62,221	
민간(공공형-일반)	34,273	1,748	-155	35,865	25,780	
배수						
공공형-일반	1.176	1.041	0.990	1.140	1.053	
공공형-국공립	0.831	0.848	0.860	0.835	0.891	
민간(공공형-일반)	1.177	1.041	0.992	1.141	1.053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표 IV-2-28>은 정원규모 80인 이상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지출 규모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산출한 것이다.

3개 항목의 아동 1인당 월 지출액은 공공형이 290,744원, 일반 255,041원, 국공립 348,230원이고, 공공형과 일반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여 산출하면 공공형 민간은 290,906원으로 소폭 상승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차이를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일반보다 1.140배 더 지출하고, 국공립보다는 0.835배 덜 지출한다. 민간어린이집들만 비교하면 공공형이 일반보다 1.141배 더 지출하는 셈이 된다.

(2)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편익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편익 추산

공공형은 일반(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세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형의 경우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편익을 추산하였다. 이 때 서문희 외(2013)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편익을 추산하면서 “인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시설에서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물론 평가인증 사례와 유사하게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실현된, 그리고 새롭게 지정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누적하여 합산하는 방식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2015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추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처럼 한계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누적방식을 활용할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제도의 변화(평가인증제도의 변화 포함)와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중 비중 변화 등이 혼재되어 편익의 규모 및 그 추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⁶⁾

분석을 위해 활용한 2015년 기준 시설 수는 가정 어린이집 22,074개소, 민간

26) 유사한 맥락에서 서문의 외(2013)는 평가인증에 따른 편익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단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함으로써 과거의 평가인증의 편익이 확산(expansion)되는지 감소(decay)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14,626개소이며, 각각 이용 아동 수는 전자는 186,007명, 후자는 747,598명이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어린이집 수로 나누어 시설 당 아동 수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로 지역규모별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시설 수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추산)는 <표 IV-2-29>에 제시하였다

<표 IV-2-29>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산(A)

단위: 개소, 명

구분	공공형어린이집		시설 당 아동 수 (생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5년)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15년)	
	시설 수	이용 아동 수 (추산)				
전체	가정	951	8,014	8.43	186,007	22,074
	민간	505	25,813	51.11	747,598	14,626
대도시	가정	383	3,227		121,270	14,391
	민간	110	5,623		283,995	5,556
중소도시	가정	258	2,174		17,877	2,122
	민간	126	6,440		279,392	5,466
읍면	가정	310	2,612		46,860	5,561
	민간	269	13,750		184,211	3,604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a). 어린이집 일람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표 IV-2-30> 공공형과 비공공형의 격차(B)

단위: 원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총세출	
전체	가정(공공형-일반)	103,987	3,729	1,835	109,551	121,750
	민간(공공형-일반)	11,792	1,020	3,479	16,291	7,567
대도시	가정(공공형-일반)	95,539	3,071	540	99,150	111,798
	민간(공공형-일반)	5,757	1,090	5,599	12,447	15,226
중소도시	가정(공공형-일반)	111,471	4,070	1,859	117,400	131,992
	민간(공공형-일반)	12,127	1,428	3,889	17,443	6,198
읍면	가정(공공형-일반)	95,465	4,046	3,024	102,534	112,898
	민간(공공형-일반)	19,012	658	1,223	20,893	6,621

주: 지역규모에 따른 세출분석 자료는 <부록 표>에 제시함.

자료: 사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총 편익은 전체의 경우 연간 155.8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민간과 가정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구분할 경우 편익은 각각 50.5억원과 105.3억원으로 할당된다. 이 밖에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은 46.8억원(29.7%), 중소도시의 경우 44.1억원(28%), 그리고 읍면의 경우 66.6억원(48.3%)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공공형어린이집 편익 총액

단위: 원

구분	(A)×(B)			총편익 (월)	총편익 (연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전체	가정(공공형-일반)	833,312,346	29,882,791	14,704,993	877,900,130	10,534,801,559
	민간(공공형-일반)	304,383,713	26,328,985	89,802,488	420,515,186	5,046,182,227
대도시	가정(공공형-일반)	308,338,472	9,911,214	1,742,773	319,992,458	3,839,909,498
	민간(공공형-일반)	32,369,164	6,128,607	31,480,797	69,984,189	839,810,272.4
중소도시	가정(공공형-일반)	242,342,650	8,848,351	4,041,544	255,232,546	3,062,790,554
	민간(공공형-일반)	78,102,779	9,196,897	25,046,731	112,339,966	1,348,079,591
읍면	가정(공공형-일반)	249,375,694	10,569,047	7,899,357	267,841,485	3,214,097,819
	민간(공공형-일반)	261,410,271	9,047,336	16,815,946	287,273,553	3,447,282,638

주: A는 <표 IV-2-29>, B는 <표 IV-2-30>

(나) 순편익과 편익비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우선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은 2015년 기준 440.7억원이며(보건복지부, 2015a), 이를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적용하여 할당한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추산하여 두 비용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일반(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가정)어린이집 지정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1.4억원이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총편익은 105.3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즉,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지정에 따른 순편익은 93.9억원이며, 편익비는 9.24배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따른 순편익은 44.4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때 편익비는 8.28배이다(표 IV-2-32 참조).

〈표 IV-2-32〉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이용자의 순편익과 편익비

단위: 억원(배)

구분	총비용(A)	총편익(B)	순편익 (B-A)	편익비 (B/A)
가정(공공형)	11.4	105.3	93.9	9.24
민간(공공형)	6.1	50.5	44.4	8.28

이상에서 활용한 방식은 공공형어린이집과 여타 유형의 어린이집의 세출예산, 즉, '세출예산 차이 = 보육서비스 질 차이'라는 가정 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반사실적 상황(counterfactual)을 상정한 것이며, 새롭게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다 과학적인 정책 과 또는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활용된 평가표와 지정 또는 탈락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의 구축·활용이 요구된다.

3. 공교육 공급 정책 평가

가. 적절성

공교육 인프라 공급 정책의 적절성은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목표의 적절성은 정책의 목표에 맞게 세부내용이 설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에 나타난 공교육 공급 관련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즉, 공교육 인프라 공급 정책 목표와 세부사업의 불일치를 통해 공급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에 제시된 정책과제 중 공교육 확충과 관련된 과제는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시도별 유아수용계획 수립, 유치원 수용계획을 위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²⁷⁾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는 유치원 수요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치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이다.

3가지 세부과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수용계획 수립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17조2에 의하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7)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는 유치원 신·증설 적정화, 특히 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11.30. 인출). 앞서 제시한 <표 II-2-4>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은 이 법에 따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유치원 수용계획을 위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 제시도 2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학급 당 유아수를 공시하고 있다.

<표 IV-3-1>에서 <표 IV-3-4>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 상에 나타난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3-1> 유치원 공급정책 평가 개요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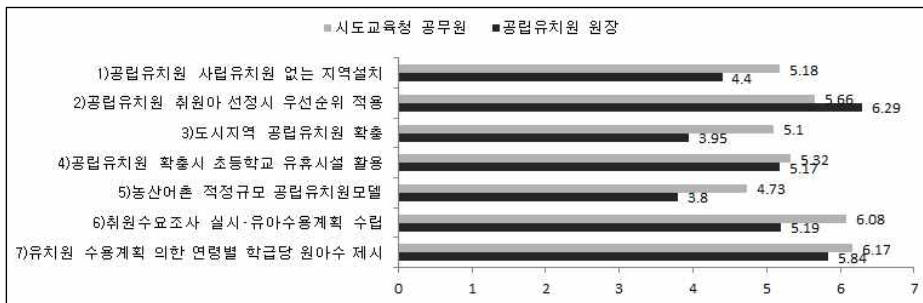
구분	성과 전혀 없음	2	3	보통	5	6	성과 매우 큼	계(수)	7점 평균
시도교육청 공무원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3.9	3.9	2.6	23.4	18.2	22.1	26.0	100.0(77)	5.18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1.3	1.3	-	20.8	14.3	28.6	33.8	100.0(77)	5.66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5.2	-	7.8	22.1	20.8	19.5	24.7	100.0(77)	5.10
4)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5.2	2.6	3.9	19.5	14.3	20.8	33.8	100.0(77)	5.32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5.2	3.9	2.6	41.6	11.7	18.2	16.9	100.0(77)	4.73
6)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2.6	-	1.3	9.1	10.4	23.4	53.2	100.0(77)	6.08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2.6	-	-	7.8	9.1	26.0	54.5	100.0(77)	6.17
공립유치원 원장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11.4	4.5	4.0	42.3	6.0	14.4	17.4	100.0(201)	4.40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2.5	2.0	.5	8.5	3.5	11.4	71.6	100.0(201)	6.29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10.4	13.9	10.0	34.3	9.5	11.4	10.4	100.0(201)	3.95
4)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9.0	2.0	1.5	26.9	7.0	18.4	35.3	100.0(201)	5.17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19.4	8.5	7.0	35.3	8.5	10.9	10.4	100.0(201)	3.80
6)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4.5	5.0	4.5	23.4	11.4	17.9	33.3	100.0(201)	5.19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2.5	2.5	4.5	11.9	7.0	20.9	50.7	100.0(201)	5.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먼저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가지 세부과제 중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에 수록된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와 취원수요 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6.29점, 평균 6.17점, 평균 6.08점으로 성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평균 5.66점,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평균 5.32점, 공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설치 평균 5.18점,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평균 5.10점,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모델 평균 4.73점 순이다 (표 IV-3-1 참조).

한편, 공립유치원 원장은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6.29점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취원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평균 5점 대, 나머지는 4점 이하로 평가하였다.



[그림 IV-3-1]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 성과평가: 공무원, 원장

다음은 앞서 성과 평가한 세부과제 중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를 조사한 것이다.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앞서 성과평가 결과와 같이, 취원 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과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를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특광역시와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보는 성과가 높은 과제가 다를 수 있다. 특광역시는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시 우선순위 적용과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이 높은 반면, 시도는 전체 비율과 유사하다. 공립유치원 원장도 성과평가 결과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과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로 꼽았으며, 단설과 병설유치원 원장 간에 차이가 없다.

〈표 IV-3-2〉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

단위: %(명)

구분	공무원			원장		
	전체	특 광역시	시도	전체	단설	병설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7.8	5.3	8.6	8.0	7.6	8.1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15.6	26.3	12.1	37.3	43.9	34.1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13.0	15.8	12.1	16.9	12.1	19.3
4)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15.6	26.3	12.1	11.9	9.1	13.3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2.6	-	3.4	3.5	1.5	4.4
6)취원 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26.0	21.1	27.6	9.5	7.6	10.4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18.2	5.3	22.4	11.9	15.2	1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7)	(19)	(58)	(201)	(66)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앞서 제시한 성과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질문하였다.

〈표 IV-3-3〉 향후 지속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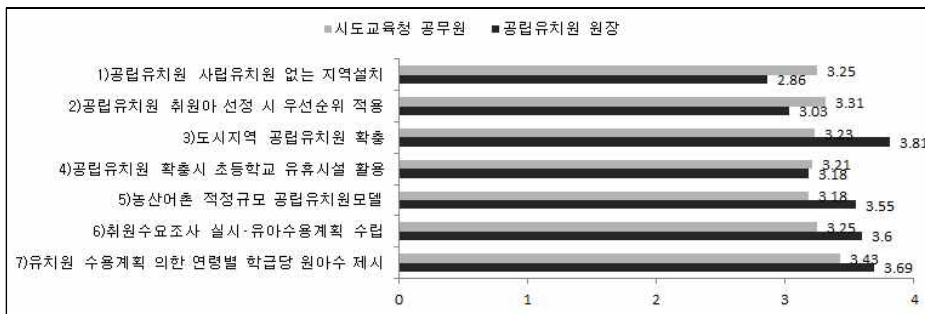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 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7점 평균
시도교육청 공무원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	15.6	44.2	40.3	100.0(77)	3.25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	9.1	50.6	40.3	100.0(77)	3.31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	13.0	50.6	36.4	100.0(77)	3.23
4)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	13.0	53.2	33.8	100.0(77)	3.21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1.3	13.0	51.9	33.8	100.0(77)	3.18
6)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1.3	14.3	42.9	41.6	100.0(77)	3.25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	3.9	49.4	46.8	100.0(77)	3.43
공립유치원 원장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16.4	19.9	24.9	38.8	100.0(201)	2.86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7.5	11.4	51.2	29.9	100.0(201)	3.03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1.0	-	16.4	82.6	100.0(201)	3.81
4)공립유치원 확충시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8.5	10.0	36.3	45.3	100.0(201)	3.18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	-	-	-	100.0(201)	3.55
6)취원수요조사 실시·유아수용계획 수립	12.9	30.3	35.3	21.4	100.0(201)	3.60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1.0	1.5	33.8	63.7	100.0(201)	3.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은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점 만점에 3.43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평균 3.31점, 공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설치와 취원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각각 평균 3.25점이다. 공립유치원 원장도 공무원과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였지만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이 4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높고,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와 취원 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각각 평균 3.69점, 3.60점 순으로 높았다(표 IV-3-3 참조).



[그림 IV-3-2] 향후 지속 추진 과제: 공무원, 원장

공교육 공급 정책 관련 세부과제 중 중 향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IV-3-4>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단위: %(명)

구분	공무원			원장		
	전체	특광역시	시도	전체	단설	병설
1)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설치	19.5	26.3	17.2	7.0	6.1	7.4
2)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6.5	15.8	3.4	3.5	-	5.2
3)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19.5	36.8	13.8	58.2	80.3	47.4
4)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7.8	5.3	8.6	1.0	-	1.5
5)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모델	13.0	5.3	15.5	9.0	6.1	10.4
6)취원 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10.4	10.5	10.3	10.0	6.1	11.9
7)유치원 수용계획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7.8	-	10.3	9.5	1.5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7)	(19)	(58)	(201)	(66)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공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설치와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원장은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을 지목하였다.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특광역시와 시도 공무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광역시는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반면에 시도 공무원은 공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설치를 지적하였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기관 유형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나. 보편성

보편성 지표는 앞서 살펴본 공보육 평가와 동일하게 공교육 공급 정책 대상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 취원율과 공립유치원 1개원당 학급 수, 유치원 이용시간, 돌봄교실 운영률 등을 살펴보았다. 산출방법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5세 유아수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아 비율, 돌봄교실 운영률은 전체 유치원 대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비율, 1개원 당 학급수는 학급수 대비 유치원 수, 유치원 이용시간은 등하원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1) 공립유치원 취원률

유치원 취원률은 2015년 48.9%이다. 그간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로 취원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과 2013년 누리과정의 3~4세 확대로 취원률이 5년 사이에 10%p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IV-3-5〉 공립유치원 취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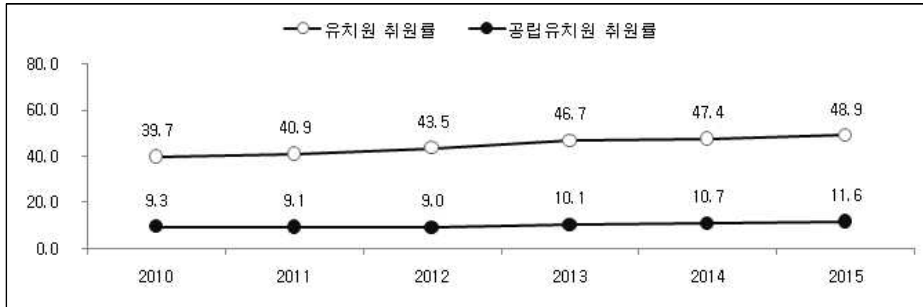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5세 유아수	1,396,456	1,388,583	1,410,211	1,411,299	1,378,886	1,357,199
유치원 원아수	682,297	657,963	657,963	613,523	564,594	538,351
공립유치원 원아수	161,339	148,269	142,052	127,347	126,095	126,577
유치원 취원률	39.7	40.9	43.5	46.7	47.4	48.9
(증감률)		(1.2)	(2.6)	(3.2)	(0.7)	(1.5)
공립유치원 취원률	9.3	9.1	9.0	10.1	10.7	11.6
(증감률)		(-0.2)	(-0.1)	(1.1)	(0.6)	(0.9)

주: 취원률은 재원 유아 대비 전체 3~5세 유아 비율 의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12월 말 기준).

반면에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10년 9.3%에서 2015년 11.6%로 2.3%p 정도만 증가하였다. 이는 유치원 공급이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림 IV-3-3 참조).



[그림 IV-3-3] 공립유치원 취원률

2) 공립유치원 1개원 당 학급수

유치원 1개원당 학급수는 2015년 기준 3.8학급이다. 2000년대 1개원당 학급수가 2개 정도이었으나, 최근 단설유치원 증설계획 추진과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과정이 수준에서 연령별로 전환되면서 학급 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립유치원은 2000년 1.4학급에서 2015년 2학급으로 늘어났고, 사립유치원은 동기간 동안 3.5학급에서 5.8학급으로 2학급 이상 커졌다.

<표 IV-3-6> 1개원당 학급수

구분	단위: 학급(%)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4	2.7	3.1	3.2	3.3	3.5	3.7	3.8
(증감분)	-	(0.3)	(0.4)	(0.1)	(0.1)	(0.2)	(0.2)	(0.1)
국공립	1.4	1.5	1.6	1.6	1.7	1.8	1.9	2.0
(증감분)	-	(0.1)	(0.1)	(0)	(0.1)	(0.1)	(0.1)	(0.1)
사립	3.5	4.1	4.8	5.0	5.2	5.5	5.8	5.8
(증감분)	-	(0.6)	(0.7)	(0.2)	(0.2)	(0.3)	(0.3)	(0)

주: 1개원당 학급수=학급수/유치원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3) 유치원 이용시간

공립유치원 재원아의 이용시간은 2012년 기준 평균 7시간 32분으로 2004년 5

시간 38분에서 약 2시간 가량 길어졌다. 2009년은 2004년보다 1시간 3분, 2012년은 2009년보다 51분이나 길어졌다. 한편,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2012년 7시간 6분으로 2009년보다 31분 정도만 증가하였다(표 IV-3-7 참조).

이는 2013년부터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지원되면서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방과후과정 운영률은 2007년 82.6%에서 2014년 97.2%으로 15%p 정도 상승하였으나, 이용률은 2006년 25.4%에서 2014년 67.5%으로 40%p 이상 상승하였다(양미선 외, 2015).

〈표 IV-3-7〉 유치원 이용 시간

구분	2004년	2009년	2012년
공립 (증감분)	5시간 38분 -	6시간 41분 (63분)	7시간 32분 (51분)
사립 (증감분)	5시간 54분 -	6시간 35분 (41분)	7시간 6분 (31분)

주: 유치원 이용시간은 집에서 나가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서문희 외(2012a).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4) 돌봄교실 운영률

돌봄교실 운영률은 국공립유치원이 2015년 0.08%에서 2016년 7.2%로 크게 늘었고, 사립은 2015년 14.5%에서 2016년 11.3%로 반대로 감소하였다.

〈표 IV-3-8〉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	853	76	35	24	23	12	32	75	23	110	31	81	39	38	45	155	51	3
국공립 운영률	348	29	13	1	-	7	-	16	22	60	19	58	25	20	30	42	4	2
사립 운영률	505	47	22	23	23	5	32	59	1	50	12	23	14	18	15	113	47	1
2015년	979	52	53	39	24	15	50	84	12	133	33	84	46	43	50	191	68	2
국공립 운영률	386	10	13	-	-	12	11	10	12	61	23	67	34	23	36	70	3	1
사립 운영률	593	42	40	39	24	3	39	74	-	72	10	17	12	20	14	121	65	1

자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2015년 2월, 2016년 9월 공시자료)
 양미선·배운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192.

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돌봄교실 지원예산이 크게 줄면서 사립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표 IV-3-8 참조).

다. 효과성

효과성은 공교육 공급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세부내용으로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교육비용 절감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교육서비스 질은 유치원 평가 참여율, 학급당 원아수, 교원 1인당 아동 수, 아동 1인당 교육비용 등을 산출하였다.

1)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는 현재 3주기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1주기는 2008~2010년, 2주기는 2011~2013년 사이에 추진되었고, 3주기는 2014~2016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주기 평가는 사립유치원의 평가참여 거부로 2008년과 2009년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가 2010년 사립유치원 3,483개원이 대거 참여하였다. 2주기 평가는 참여율은 전체 평균 96.7%로 국공립 98.3%, 사립 94.8%로 국공립은 평균을 상회하나 사립은 이에 못 미친다(표 IV-3-9 참조). 3주기 평가는 계획 수립 시 2,893개원씩 총 8678개원을 평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4b).

〈표 IV-3-9〉 유치원 평가 참여율

단위: 개원(%)

구 분	1주기(2008~2010) ¹⁾					2주기(2011~2013) ²⁾				
	전체	(비율)	2008	2009	2010	전체	(비율)	2011	2012	2013
전체	7,922	(94.4)	1,533	2,501	3,888	8,388	(96.7)	2,796	2,796	2,796
국공립	4,316	(95.9)	1,428	2,483	405	4,501	(98.3)	1,501	1,500	1,500
사립	3,606	(92.8)	105	18	3,483	3,887	(94.8)	1,295	1,296	1,296

주: 2013년 유치원 평가 참여기관수는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주기 평가 참여율은 미공표 상태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자료: 1)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교육과학기술부(2011). 제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2) 학급당 원아수

학급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학급당 평균 20명으로 2000년 26.3명에서 지난

15년 동안 6명 이상 감소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은 2000년 21명에서 2005년 19.3명, 2010년 17.8명으로 10년간 3명 정도 줄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17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평균 21명으로 국공립유치원보다 3.5명 정도 많다. 그러나 2000년 28.4명과 비교하여 7명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학급 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6.3	24.2	21.0	20.9	21.6	21.5	19.9	20.0	
(증감분)	-	(-2.1)	(-3.2)	(-0.1)	(0.7)	(-0.1)	(-1.6)	(0.1)	
국공립	21.0	19.3	17.8	17.3	16.9	17.3	17.1	17.4	
(증감분)	-	(-1.7)	(-1.5)	(-0.5)	(-0.4)	(0.4)	(-0.2)	(0.3)	
사립	28.4	26.2	22.2	22.3	23.3	23.1	20.7	21.0	
(증감분)	-	(-2.2)	(-4)	(0.1)	(1)	(-0.2)	(-2.4)	(0.3)	

주: 학급당 원아 수=원아 수/학급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3) 교원 1인당 원아수

교원 1인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3.4명으로 2000년 19.5명에서 2010년 5명 정도 줄었고, 이후 13~14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2000년 19.9명에서 2005년 17.9명, 2010년 14.3명, 이후 12~13명 정도이다. 이는 각 교육청이 매년 공시하는 학급당 원아수가 줄어든 것과, 최근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이 크게 증설되면서 국공립 교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2000년 19.3명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3.6명으로 6명 가까이 줄었다.

〈표 IV-3-11〉 교원 1인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5	17.5	14.8	14.6	14.5	14.3	13.4	13.4	
(증감분)	-	(-2.0)	(-2.7)	(-0.2)	(-0.1)	(-0.2)	(-0.9)	(0.0)	
국공립	19.9	17.9	14.3	13.6	12.8	12.9	12.4	12.8	
(증감분)	-	(-2.0)	(-3.6)	(-0.7)	(-0.8)	(0.1)	(-0.5)	(0.4)	
사립	19.3	17.3	14.9	14.9	15.1	14.7	13.8	13.6	
(증감분)	-	(-2.0)	(-2.4)	(0.0)	(0.2)	(-0.4)	(-0.9)	(-0.2)	

주: 교원 1인당 원아 수=원아 수/교원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직원 1인당 원아수는 2015년 기준 138.6명으로, 2000년 84.1명에서 50명 넘게 증가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은 2000년 69.9명에서 15년 사이 3배 정도의 199.9명으로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도 2000년 66.5명에서 2015년 126.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으로 원아수는 급증하였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2〉 직원 1인당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4.1	76.5	74.7	67.5	70.9	75.4	158.3	138.6	
(증감분)	-	(-7.6)	(-1.8)	(-7.2)	(3.4)	(4.5)	(82.9)	(-19.7)	
국공립	69.9	143.7	115.8	61.8	74.8	80.4	239.9	199.9	
(증감분)	-	-	(-27.9)	(-54.0)	(13.0)	(5.6)	(159.5)	(-40.0)	
사립	66.5	67.2	67.3	69.4	69.9	74.1	143.9	126.6	
(증감분)	-	(0.7)	(0.1)	(2.1)	(0.5)	(4.2)	(69.8)	(-17.3)	

주: 직원 1인당 원아 수=원아 수/직원 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4) 아동 1인당 교육비용

아동 1인당 교육비용은 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교육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비와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된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c, 2014b)가 2012년~2014년에 수행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 1인당 총 교육비용은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에는 217.7천원이었으나,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자 146.6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4년 202.6천원으로 2012년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공립유치원은 2012년 80.7천원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8.1천원, 11.4천원으로 부모 부담금이 거의 사라졌다(표 IV-3-13 참조).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줄지 않는 이유는 정부지원 확대로 부모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핑계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비를 크게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2013년 전계층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빌미로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부모 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 유아교육법 제25조에 유치원 원비는 직

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3항을 신설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10월 30일 인출).

〈표 IV-3-13〉 아동 1인당 교육비용

단위: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육비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 후 교재 교구비	계	교육비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 후 교재 교구비	계	교육비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 후 교재 교구비	계
전체	178.5	36.2	2.9	217.7	107.9	36.4	2.2	146.6	149.3	50.2	3.2	202.6
국공립	62.7	16.1	1.9	80.7	11.3	6.4	0.2	18.1	6.1	5.1	0.1	11.4
사립	208.8	41.5	3.2	253.6	150.6	49.6	3.2	203.3	179.0	59.6	3.8	242.4
t	12.9***	6.9***	1.3	14.8***	-41.6***	-20.1***	-9.5***	-43.3***	-72.6***	-26.4***	-12.8***	-61.1***

주: 아동 1인당 교육비용은 전체 아동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자료: 서문희 외(2012c).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c).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김길숙·김정민 (2014b).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라. 효율성

효율성은 투자 대비 수익을 평가한다. 분석자료는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비 예산과 유치원 세출예산 중 교육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 급식관리, 기본적 교육활동비 3개 항목의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1) 아동1인당 교육여건 개선비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비는 2010년 1.31백만원에서 2012년 1.8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3년 1.46백만원으로 삭감되었다(표 IV-3-14 참조).

〈표 IV-3-14〉 아동 1인당 교육여건개선 예산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교육여건개선 예산	211,912	215,582	267,195	186,541
공립유치원 원아수	161,339	148,269	142,052	127,347
아동 1인당 예산	1.31	1.45	1.88	1.46
(증감분)	-	(0.14)	(0.43)	(-0.42)

자료: 최은영 외(2013, 2014a).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는 교육청의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교육 여건개선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아동 1인당 세출비용

유치원 세출 항목 중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즉 공립은 인적자원운영, 급식관리, 교육활동, 사립은 인건비, 교수학습활동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각각 3항목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구조가 상이하어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관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유치원 교육비 산출이 다소 상이하어 2015년 자료만 제시하였다. 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인적자원 운영비가 19.4천원, 급식관리 48.7천원, 교육활동 38.4천원이고, 사립은 인건비 219.7천원, 교수학습활동비 3.0천원, 수익자부담 교육비 561.7천원이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유치원 아동 1인당 세출비용

단위: 천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인적자원운영	급식관리	교육활동	인건비	교수학습 활동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19.4	48.7	38.4	219.7	3.0	561.7

주: 공립유치원 인적자원운영비 중 교직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최은영 외(2015a).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38.

4. 시사점

공보육·교육 공급정책을 적절성, 보편성, 효과성, 효율성 4개 차원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가.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을 유지한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추진하였으나, 201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0% 축소된 135개소가 배정되어 추진되

었고, 2017년은 이보다 적은 90개소가 확충될 예정이다.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이용률 45% 달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정 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이 12.3%를 차지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지원하다가 2015년 9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정부 미지원시설 부모 부담보육료가 매년 인상되는데 반해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는 그렇지 못하여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보육 공급정책 7개 세부과제 중 성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 농어촌 지역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이들 지역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진입을 꺼려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이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 해야 한다. 2016년 의무이행 기준 변경으로 의무이행률이 여성 300인 이상~근로자 500인 미만 40.7%, 근로자 500인 이상~1000인 이상 58.4%, 근로자 100인 이상 88.1%로 떨어졌지만, 2013년 70%를 상회하는 이행률을 보였다.

다섯째,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급률 및 이용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2010년 4.8%에서 2015년 5.9%, 이용률은 동 기간 4.3%에서 5.2%로 상승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급률이 2010년 0.9%에서 2015년 1.9%로 1%p 정도 상승하였으나, 이용률은 0.7%에서 1.4%로 공급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급률이 2013년 2.5%에서 2014년 3.0%, 2015년 3.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용률은 2013년 2.3%에서 2014년 2.7%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2.9%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섯째, 국공립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충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16년 기준 국공립이 1일 평균 7시간 20분, 직장은 9시간 1

분, 민간 7시간 15분, 가정 7시간 19분이다.

일곱째, 직장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1급 보육교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6년 11월 기준 평가인증 유지율은 국공립이 91.7%, 직장 58.7%로 국공립은 전체 평균 79.6%를 상회하나 직장어린이집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유지율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1급 보육교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평균이 47.2%로 국공립은 이보다 월등히 높은 76%, 공공형은 67.9%나 직장은 평균 수준인 48.7%으로 교사의 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예산은 2013년 23,134백만원에서 2014년 16,796으로 크게 감액되었고, 다시 2014년 28,709로 증액되었다. 이를 아동 1인당 설치비로 환산하면 각각 0.7백만원, 0.4백만원, 0.6백만원이 된다.

아홉째,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익과 편익비를 산출한 결과, 공공형 가정어린이집은 불편익이 93.9억원이고, 민간은 44.4억원이었다. 편익비는 각각 9.24, 8.28로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공교육 공급정책 평가

첫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유아수용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제17조2에 따라 유아수용조사를 실시하나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 시기나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방법이 상이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아수용조사의 신뢰성 확보 문제로 그 결과를 유아수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둘째,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 간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급 당 유아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차이가 크다. 학급당 유아 수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일 경우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시도 교육청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산어촌에 적합한 공립유치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 중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 모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도시 지역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해 성과를 낮게 평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다섯째, 공립유치원 증설 시 학급 수는 최소 3학급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단설유치원 증설계획 추진으로 국공립유치원 1개원당 학급수가 2학급까지 늘어났으나 누리과정이 연령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개 학급이 부족하다.

여섯째,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취업모 자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공립유치원 이용시간은 2009년 6시간 41분에서 2012년 7시간 32분으로 1시간 이상 증가하여 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유치원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방과후과정비 지원 확대로 오후 돌봄이 필요없는 유아까지도 방과후과정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곱째, 공립유치원은 돌봄교육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공립유치원의 돌봄교실 운영률은 2016년 기준 7.2%로 사립유치원 11.3%에 크게 못 미친다.

V. 공보육·교육 공급 관련 의견 및 요구

제5장은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의 설치 및 이용 효과 등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원장, 공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및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1. 공보육

1절은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충분성, 지원기준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조사한 결과와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1) 충분성

시도 및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부족 35.6%, 매우 부족 11.5%로 절반 정도인 47.1%가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5점 만점에 2.62점이다. 2012년 조사(양미선 외, 2012)와 비교하여 부족하다는 의견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많다는 비율은 5%p 정도 증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부족하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대도시가 65.8%, 중소도시 48.8%, 읍면지역 13.0% 순이다. 충분성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시도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시도가 광역시보다, 읍면지역일수록 충분성 점수가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 확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9.2개소로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이 막 시작된 2012년 조사결과인 6.8개소보다 무려 7배 정도가 많은 수치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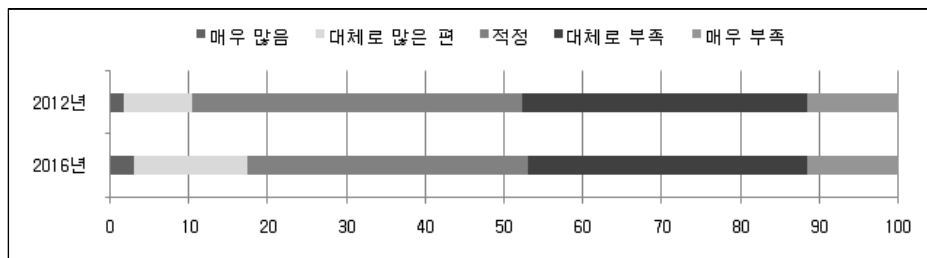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표 V-1-1 참조).

〈표 V-1-1〉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및 추가 확충량

단위: %(명), 점, 개소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계(수)	5점 평균	추가 확충량	
	매우 많음	대체로 많은 편	적정	대체로 부족	매우 부족			추가 개소수	(수)
전체	2.9	14.4	35.6	35.6	11.5	100.0(104)	2.62	49.2	(49)
대도시	-	7.9	26.3	52.6	13.2	100.0(38)	2.29	60.6	(25)
중소도시	2.3	14.0	34.9	37.2	11.6	100.0(43)	2.58	41.3	(21)
읍면지역	8.7	26.1	52.2	4.3	8.7	100.0(23)	3.22	10.7	(3)
X ² (df)/F			-				7.45**	.25	
2012년	1.7	8.6	42.0	36.2	11.5	100.0(174)	2.5	6.8	(174)

주: 점수가 높을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많다는 의미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양미선 외(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5-66.
 ** $p < .01$



[그림 V-1-1]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비교: 2012, 2016년

<표 V-1-2>는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을 조사한 것이다. 저소득 밀집지역이 34.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30.6%로 두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5% 내외 정도이다. 기타 의견으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도심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영유아 밀집지역,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이 있었다.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비율은 높아지고, 농산어촌 지역과 취약지역은 확충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이를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높지만, 중소도시는 저소득밀집지역, 읍면지역은 농산어촌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V-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단위: %(명)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	기타	계(수)
전체	6.1	8.2	34.7	30.6	4.1	16.3	100.0(49)
대도시	-	12.0	36.0	40.0	-	12.0	100.0(25)
중소도시	9.5	4.8	38.1	19.0	9.5	19.0	100.0(21)
읍면지역	33.3	-	-	33.3	-	33.3	100.0(3)
2012년	15.7	10.8	31.3	28.9	3.6	9.6	100.0(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양미선 외(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7.

2) 확충방법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확충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신축과 민간어린이집 전환이 각각 26.0%로 높고,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9.2%,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15.4%, 나머지는 5% 내외 정도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36.8%로 다빈도이나, 중소도시는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30.2%, 읍면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34.8%로 지역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이나 재정 여건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V-1-3〉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단위: %(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관연대 무상 임대	기타	계(수)
전체	26.0	3.8	15.4	19.2	26.0	6.7	2.9	100.0(104)
대도시	36.8	5.3	13.2	13.2	18.4	10.5	2.6	100.0(38)
중소도시	20.9	2.3	14.0	30.2	27.9	2.3	2.3	100.0(43)
읍면지역	17.4	4.3	21.7	8.7	34.8	8.7	4.3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음은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을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33.7%,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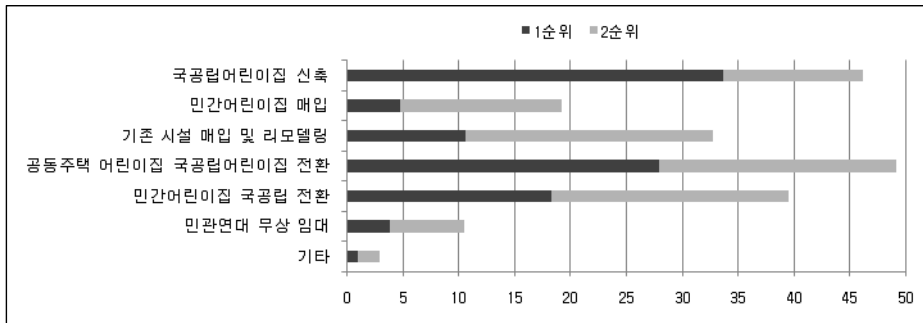
27.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8.3% 순이고,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22.1%,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각각 21.2%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하면,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49.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6.2%,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39.5%,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32.7% 순이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크게 줄고,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민관연대 무상임대가 새로운 확충방법으로 부상하였다.

<표 V-1-4>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관연대 무상 임대	기타	(수)
1순위	33.7	4.8	10.6	27.9	18.3	3.8	1.0	100.0(104)
2순위	12.5	14.4	22.1	21.2	21.2	6.7	1.9	100.0(104)
1+2순위	46.2	19.2	32.7	49.1	39.5	10.5	2.9	(104)
2012년	72.4	23.6	58.6	38.5	-	-	6.9	(174)

주: 2012년 조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민관연대 무상임대 문항이 없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양미선 외(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8.



[그림 V-1-2]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 1+2순위

<표 V-1-5>는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 1순위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본 것이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신축을 선호하는 반면, 중도소시는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선호한다. 특히, 읍면지역일수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수 감소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5〉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민간 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관연대 무상 임대	기타	계(수)
전체	33.7	4.8	10.6	27.9	18.3	3.8	1.0	100.0(104)
대도시	34.2	7.9	15.8	26.3	13.2	2.6	-	100.0(38)
중소도시	30.2	2.3	7.0	39.5	18.6	-	2.3	100.0(43)
읍면지역	39.1	4.3	8.7	8.7	26.1	13.0	-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3) 확충의 어려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는 <표 V-1-6>과 같다. 1순위는 예산 부족이 49.0%, 부지 확보 20.2%, 민간어린이집 반대 15.4%,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10.6% 순이고, 2순위는 부지 확보와 민간어린이집 반대가 각각 30.8%, 예산 부족 20.2%,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11.5% 순이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예산 부족이 69.2%, 부지확보 51.0%, 민간어린이집 반대 46.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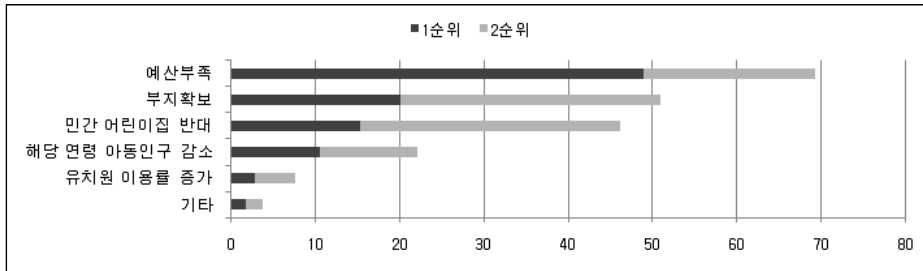
〈표 V-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예산 부족	부지 확보	민간 어린이집 반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유치원 이용률 증가	기타	(수)
1순위	49.0	20.2	15.4	10.6	2.9	1.9	(104)
2순위	20.2	30.8	30.8	11.5	4.8	1.9	(104)
1+2순위	69.2	51.0	46.2	22.1	7.7	3.8	(104)
2012년	89.0	60.9	27.0	18.3	2.3	2.3	(1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양미선 외(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9.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예산 부족이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은 줄고, 민간 어린이집 반대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늘었다.



[그림 V-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표 V-1-7>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를 지역규모별로 살펴본 것이다.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예산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이는 도시지역일수록 높았다. 다음으로 대도시는 부지 확보, 중소도시는 민간어린이집 반대, 읍면지역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를 지적하였다.

<표 V-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구분	예산 부족	부지 확보	민간 어린이집 반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유치원 이용률 증가	기타	계(수)
전체	49.0	20.2	15.4	10.6	2.9	1.9	100.0(104)
대도시	52.6	34.2	10.5	2.6	-	-	100.0(38)
중소도시	51.2	16.3	20.9	9.3	-	2.3	100.0(43)
읍면지역	39.1	4.3	13.0	26.1	13.0	4.3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4) 신축비 지원기준의 적절성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기존시설 전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장애아 전문시설 신축 시 설치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축 시 1㎡당 1,270천원을 330㎡까지, 기존시설 전환은 251,460천원,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은 개소 당 50,000천원, 장애아 전문시설은 신축 시와 단가는 동일하지만 396㎡까지로 높다. 이 외에 기자재 구입비를 신축 시 개소 당 10,000천원, 공동주택은 30,000천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알아보았다. 신축비의 경우, 개소당 330㎡까지 지원과 1㎡당 1,270천원이 낫다는 비율이 각각 54.8%, 62.5%로 높고, 기존시설 전환은 낫다가 54.8%,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은 낫다와 적정하다는 비율이

50% 정도로 비등하다. 장애아 전문시설의 경우, 1㎡당 1,270천원 지원은 낮다는 비율이 높지만, 개소당 396㎡까지 지원은 적정하다는 비율이 높다. 기자재 구입은 신축은 낮다는 의견이 많지만, 공동주택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다.

<표 V-1-8>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개요

구분	단위: %(명)			계(수)
	낮다	적정	높다	
1. 신축비				
1) 신축 - 개소당 330㎡까지 지원	54.8	45.2	-	100.0(104)
2) 신축 - 1,270천원/㎡	62.5	37.5	-	100.0(104)
2. 기존시설 전환 - 국비지원한도액 251,460천원	54.8	44.2	1.0	100.0(104)
3.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 50,000천원/개소	49.0	51.0	-	100.0(104)
4. 장애아 전문시설				
1) 개소당 396㎡까지 지원	46.2	52.9	1.0	100.0(104)
2) 1,270천원/㎡	58.7	41.3	-	100.0(104)
5. 기자재 구입비				
1) 신축(전환등 포함): 10,000천원/개소	63.5	36.5	-	100.0(104)
2) 공동주택: 30,000천원/개소	44.2	54.8	1.0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V-1-9>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적정 지원수준: 신축 개소당 330㎡

구분	단위: 천원(명)							
	신축		기존시설 전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장애아전문시설		기자재 구입비	
	개소당 330㎡	1,270천원/㎡	251,460천원	50,000천원/개소	신축 개소당 396㎡	신축 1,270천원/㎡	신축 10,000천원/개소	공동주택 30,000천원/개소
전체	503.5	2,892.3	505,457.4	9,8764.7	538.6	3,045.7	49,545.5	58,617.0
대도시	507.6	2484.5	479,895.9	126,666.7	532.4	2,621.7	48,913.0	57,500.0
중소도시	511.9	3507.1	552,876.0	95,000.0	558.2	3,638.6	49,032.3	59,310.3
읍면지역	474.0	2163.6	448,810.9	79,333.3	506.3	2,332.2	5,2083.3	-20
F	.002	.48	.15	3.75	.05	.71	.06	
(수)	(57)							58,437.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V-1-9>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지원수준을 추가 질문한 결과이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500㎡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당 지원단가도 1,270천원에서 2배가 높은 2,892천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존시설 전환이나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모두 2배 가량 높은 지원단가를 답하였다. 장애아전문

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자재 구입비 신축시 지원단가는 5배 가까이 높다.

5) 국공립어린이집 적정 수준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 보육비율을 30%라고 보는데, 이 수준이 적정한지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다. 절반 정도는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나, 34.6%는 낮고, 9.6%는 높다고 하였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는 낮다는 의견이 52.6%로 높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50~60% 사이로 높다.

〈표 V-1-10〉 국공립어린이집 30% 보육비율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국공립 30%의 적절성				'낮다' 응답 경우		높다 응답 경우	
	낮음	적절	높음	계(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34.6	55.8	9.6	100.0(104)	58.06	(36)	15.50	(10)
대도시	52.6	42.1	5.3	100.0(38)	57.50	(20)	15.00	(2)
중소도시	16.3	67.4	16.3	100.0(43)	55.71	(7)	15.71	(7)
읍면지역	39.1	56.5	4.3	100.0(23)	61.11	(9)	15.00	(1)
F					.31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 보육비율 30%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수준을 추가 질문하였다. 낮다고 보는 경우에는 평균 58.06%,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평균 15.50%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지역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표 V-1-10 참조)

나. 직장어린이집

1) 의무사업장 기준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두 개 기준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나, 높다는 의견도 20% 내외 정도로 높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근로자 500명 이상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모두 전체 비율과 유사하지만 읍면지역일수록 높다는 의견이 높다(표 V-1-11 참조).

〈표 V-1-1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 적절성

단위: %(명)

구분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계(수)
	낮다	적정	높다	낮다	적정	높다	
전체	4.7	73.4	21.9	6.3	75.0	18.8	100.0(64)
대도시	7.7	80.8	11.5	7.7	76.9	15.4	100.0(26)
중소도시	3.8	69.2	26.9	7.7	73.1	19.2	100.0(26)
읍면지역	-	66.7	33.3	-	75.0	25.0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지원기준의 적절성

직장어린이집에는 설치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다음의 기준이 적절한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설전환비 단독 3억, 공동 6억과 산단형 시설전환비 15억, 시설매입비 40%, 융자지원 단독 7억, 공동 9억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한다. 특히, 인건비 월 80만원과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은 낮다는 의견이 20~30% 사이로 높다. 인건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추가 질문한 결과, 교사당 월 100~150만원까지 인상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월 80%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V-1-12 참조).

〈표 V-1-1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낮다	적정	높다	계(수)
시설전환비 단독 3억, 공동 6억	9.4	85.9	4.7	100.0(64)
산단형 시설전환비 15억(90%), 시설매입비 40%	10.9	84.4	4.7	100.0(64)
교재교구비(유구물품비) 5천만원(교체비 3년단위 3천만원)	14.1	79.7	6.3	100.0(64)
융자지원 단독 7억, 공동 9억	9.4	85.9	4.7	100.0(64)
인건비 월 80만원(중소기업 120만원)	28.1	71.9	-	100.0(64)
중소기업 운영비(40인미만 200만, 40-59인 280만, 60-79인 360만, 80-99인 440만, 100인이상 520만)	20.3	79.7	-	100.0(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직장어린이집에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외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중 사업장의 만족도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효과가 높은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운영비용을 필요경비로의 인정이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8.1%,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21.9% 순이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만 대도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와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로의 인정이 각각 38.5%로 높다(표 V-1-13 참조).

〈표 V-1-13〉 사업장 만족도 및 효과 높은 직장어린이집 간접 지원 방식

구분	단위: %(명)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계(수)
전체	21.9	28.1	50.0	100.0(64)
대도시	23.1	38.5	38.5	100.0(26)
중소도시	23.1	19.2	57.7	100.0(26)
읍면지역	16.7	25.0	58.3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사업장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컨소시엄형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무상지원보다는 융자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다. 무상지원 중에서는 시설건립(전환비)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90%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낮다(표 V-1-14 참조).

〈표 V-1-14〉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 적절성

구분	단위: %(명)			
	낮다	적정	높다	계(수)
무상지원:시설건립(전환)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90%	10.9	85.9	3.1	100.0(64)
무상지원:시설매입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90%	9.4	87.5	3.1	100.0(64)
무상지원:교재교구비: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소요비용의 90%	6.3	89.1	4.7	100.0(64)
융자지원: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연이율 1%	7.8	90.6	1.6	100.0(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표 V-1-15>는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것이다. 4가지 지원 모두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

고,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낮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1-15〉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교재교구비			융자-시설건립비			계(수)
	낮다	적정	높다	낮다	적정	높다	낮다	적정	높다	낮다	적정	높다	
전체	10.9	85.9	3.1	9.4	87.5	3.1	6.3	89.1	4.7	7.8	90.6	1.6	100.0(64)
대도시	11.5	80.8	7.7	11.5	80.8	7.7	7.7	80.8	11.5	11.5	84.6	3.8	100.0(26)
중소도시	15.4	84.6	-	11.5	88.5	-	7.7	92.3	-	7.7	92.3	-	100.0(26)
읍면지역	-	100.0	-	-	100.0	-	-	100.0	-	-	100.0	-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행태는 설치, 위탁, 수당 3가지에서 2015년부터 설치, 위탁 2가지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정부의 축소 조치가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적절이 68.8%, 매우 적절 3.1%로 7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적절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72점으로 중간 이상이다. 지역규모별로도 적절하다가 부적절보다는 의견보다 높지만, 도시지역일수록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시지역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등 예산 부담이 커서 이행률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V-1-16 참조).

〈표 V-1-16〉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행태 축소 조치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수)	4점 평균
전체	3.1	25.0	68.8	3.1	100.0(64)	2.72
대도시	7.7	30.8	57.7	3.8	100.0(26)	2.58
중소도시	-	23.1	73.1	3.8	100.0(26)	2.81
읍면지역	-	16.7	83.3	-	100.0(12)	2.83
F						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탁보육 시에는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며, 위탁률은 30% 이상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전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81.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후자는 걱정이 64.1% 정도이고, 낮다 20.3%, 높다 15.6%로 의견이 다양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 부담의 경우, 읍면지역이 높고, 위탁률 30% 이행은 읍면지역일수록 높다(표 V-1-17 참조).

〈표 V-1-17〉 위탁보육 기준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 부담			위탁률 30% 이행			계(수)
	낮다	걱정	높다	낮다	걱정	높다	
전체	12.5	81.3	6.3	20.3	64.1	15.6	100.0(64)
대도시	11.5	80.8	7.7	30.8	53.8	15.4	100.0(26)
중소도시	15.4	76.9	7.7	15.4	61.5	23.1	100.0(26)
읍면	8.3	91.7	-	8.3	91.7	-	100.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 중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2%로 적절하다는 의견 43.7%보다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41점이다. 도시지역일수록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는데, 이는 도시지역의 미이행 사업장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1-18〉 미이행사업장 이행강제금 인상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수)	4점 평균
전체	10.9	45.3	35.9	7.8	100.0(64)	2.41
대도시	11.5	46.2	30.8	11.5	100.0(26)	2.42
중소도시	7.7	53.8	34.6	3.8	100.0(26)	2.35
읍면지역	16.7	25.0	50.0	8.3	100.0(12)	2.50
F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직장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3) 직장어린이집 규모의 충분성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고려한 정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어

서 정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이 파악되고 있다.

<표 V-1-19>는 직장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 대비 정원의 충분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62.2%는 충분하다고 답하였지만, 나머지 37.8%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사업장별로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4.5%, 48.4%로 학교 또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정원규모가 적을수록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1-19> 사업장 규모 대비 정원의 충분성 및 증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정원의 충분성					증원 비율	정원 충족률	(수)
	매우 충분	어느 정도 충분	부족한 편	매우 부족	계(수)			
전체	27.4	34.8	30.4	7.4	100.0(135)	52.6	83.3	(135)
사업체유형								
국가	16.1	35.5	29.0	19.4	100.0(31)	88.9	89.2	(31)
지자체	15.9	29.5	47.7	6.8	100.0(44)	33.8	86.0	(43)
학교, 기업	41.7	38.3	18.3	1.7	100.0(60)	41.7	78.4	(61)
X ² (df)/F		-				2.2	5.2 ^{**}	
정원								
39인 이하	28.1	25.0	40.6	6.3	100.0(32)	56.4	76.0	(31)
40~79인	25.0	34.4	28.1	12.5	100.0(64)	55.9	86.1	(64)
80인 이상	30.8	43.6	25.6	-	100.0(39)	40.0	84.5	(40)
X ² (df)/F		-				0.1	3.9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정원이 부족한 경우,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추가 질문하였다. 현재보다 평균 52.6% 정도가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사업체별로는 국가기관이 88.9%, 학교 및 기업 41.7%, 지자체 33.8% 순이고, 정원규모별로는 정원에 적을수록 증원 증원비율이 높았다(표 V-1-19 참조).

조사에 참여한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인 어린이집에 대해 그 이유를 1, 2순위로 물었다. 1순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이 26.8%, 근로자 중 영유아 부모 감소 19.5%, 무상보육으로 집 근처 어린이집 이용 선호 12.2%이고, 2순위는 집 근처 어린이집 선호 31.8%, 영유아 부모 감소 27.3%, 입지조건 13.6% 순이다. 2순위 응답비율이 낮아서 1, 2순위를 합산하지는 않았으나, 직장 어린이집의 접근성 문제가 정원충족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4, 2009, 2012)를 보면,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집과의 거리를 꼽은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표 V-1-20 참조).

〈표 V-1-20〉 정원충족률 80% 미만 시 정원충족률이 낮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사업장	근로자중	무상보육으로	집 근처	기타	계(수)
	입지조건	시설 노후화	영유아	부모 감소	어린이집 이용	선호		
1순위	26.8	2.4	19.5		12.2		39.0	100.0(95)
2순위	13.6	9.1	27.3		31.8		18.2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인근 지역주민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채용 아동 중 사업체 근로자 자녀가 아닌 지역주민 아동이 채용하는 어린이집은 32.4%이고, 채용 아동 수는 평균 10.4명이었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학교 및 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지역 아동이 채용하는 경우가 42.6%로 많고, 아동 수 또한 13.9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정원규모가 클수록 지역주민 아동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채용아동 수도 평균 19.8명으로 유의하게 많았다(표 V-1-21 참조).

〈표 V-1-21〉 지역주민 채용 및 대기아동 여부

단위: %(명), 명

구분	지역주민 아동 채용			대기아동			계(수)
	있음	없음	아동수	있음	없음	아동수	
전체	32.4	67.6	10.4	71.4	28.6	35.8	100.0(133)
사업체유형							
국가	25.8	74.2	5.7	93.5	6.5	35.0	100.0(31)
지자체	22.7	77.3	5.4	67.4	32.6	44.9	100.0(43)
학교, 기업	42.6	57.4	13.9	62.7	37.3	29.3	100.0(59)
X ² (df)	5.4(2)		3.85*	10.0(2)**		.66	
정원							
39인 이하	31.3	68.8	5.4	58.1	41.9	14.3	100.0(31)
40~79인	32.8	67.2	7.1	73.4	26.6	25.0	100.0(64)
80인 이상	32.5	67.5	19.8	78.9	21.1	68.5	100.0(38)
X ² (df)	.02(2)		11.11***	3.9(2)		8.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직장어린이집에 현재 입소 대기 중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조사 참여 어린이

집 중 71.4%이고, 대기 아동수는 평균 35.8명이다. 사업체 유형 중 국가기관 설치 어린이집에 대기아동이 있다는 비율이 93.5%로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대기 아동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직장어린이집일수록 대기 아동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대기 아동수는 정원에 비례하여 유의하게 늘어났다. 39인 이하는 평균 10명 선인데 반해 80인 이상은 평균 68.5명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컸다.

한편,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사업장 근로자 중 영유아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22.1%가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서라고 답하였고, 자녀를 데리고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응답이 17.6%, 주변에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와 대기자가 많아서가 각각 13.2%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전체 비율과 유사하지만, 영아 부모는 아이를 돌봐줄 양육자가 있어서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대기자가 많아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는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V-1-22 참조).

〈표 V-1-22〉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및 이용 위한 이사 고민 여부

단위: %(명)

구분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이사 고민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주변에 자녀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 있음	아이 데리고 출퇴근하기 용이 않음	아이 돌봐줄 양육자 있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대기자가 많아서	어린이집 입지조건, 시설 열악	기타	계(수)	'있다' 비율	(수)
전체	22.1	13.2	17.6	8.8	7.4	13.2	7.4	10.3	100.0(68)	51.9	(27)
영유아구분											
영아	23.1	7.7	15.4	15.4	11.5	15.4	3.8	7.7	100.0(26)	60.0	(10)
유아	30.4	13.0	17.4	8.7	-	13.0	4.3	13.0	100.0(23)	45.5	(11)
영유아	10.5	21.1	21.1	-	10.5	10.5	15.8	10.5	100.0(19)	50.0	(6)
지역구분											
대도시	24.1	6.9	10.3	10.3	10.3	17.2	10.3	10.3	100.0(29)	60.0	(10)
중소도시	17.6	20.6	26.5	5.9	5.9	8.8	5.9	8.8	100.0(34)	46.7	(15)
읍면지역	40.0	-	-	20.0	-	20.0	-	20.0	100.0(5)	50.0	(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자녀양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추가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51.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자녀를 데리고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접근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표 V-1-22 참조).

4) 이용 대상의 적절성

다음 <표 V-1-23>은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를 조사한 것이다. 우선순위 1순위로 맞벌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사업체 직원 자녀, 한부모 가정, 부부직원, 근속연수 등의 순이다. 2순위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기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3순위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근속연수 순이다. 정리하면, 입소아동 우선순위로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근속연수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1-23> 입소아동 우선순위: 1~5순위

단위: 건

구분	맞벌이	사업체 직원 자녀	한부모 가정	부부 직원 (공무원)	근속 연수	다자녀	장애인, 국가 유공자	여성 직원	저소득층	재원 아 형제 자매	기존 재원 아	다문화	남성 직원	기타
1순위	52	37	22	10	10	9	6	4	3	-	-	-	-	6*
2순위	38	8	25	5	2	18	2	10	3	10	3	2	1	16**
3순위	20	5	16	7	10	17	-	2	3	5	2	1	4	13
4순위	4	2	3	1	-	4	2	2	1	2	-	1	3	1
5순위	2	-	1	1	-	1	-	-	-	-	-	1	-	6
6순위	1	-	-	-	1	2	-	-	-	1	-	3	-	2

주: 1) 중복 응답임.

2) 기타 응답은 직장 내 근무*, 신입아동**, 어린이집 차량이 갈 수 있는 곳, 4대보험 적용 타사 자녀, 지역 아동,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가구,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표 V-1-24>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입소대기 경험 여부와 입소아동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5.1%로 1/4 정도를 차지한다. 영아 또는 유아 부모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입소대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38.1%, 읍면지역 28.2%, 중소도시 17.1% 순으로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표 V-1-24〉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 및 입소아동 선정기준

단위: %(명)

구분	입소대기 경험 '있다' 비율	입소 아동 선정 기준				(수)
		우선순위	선착순	추첨	기타	
전체	25.1	71.7	21.9	24.7	4.6	(219)
영유아구분						
영아	19.2	65.8	20.5	30.1	4.1	(73)
유아	25.7	74.3	22.1	21.2	5.3	(113)
영유아	36.4	75.8	24.2	24.2	3.0	(33)
지역구분						
대도시	38.1	82.5	27.0	22.2	3.2	(63)
중소도시	17.1	64.1	23.1	29.1	1.7	(117)
읍면지역	28.2	76.9	10.3	15.4	15.4	(39)

주: 입소 아동 선정기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일반 어린이집은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아동이 결정되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소아동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입소아동 선정기준으로 우선순위가 71.7%로 단연 높고, 추첨과 선착순이 각각 24.7%, 21.9%, 기타가 4.6%로 소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지만, 선착순은 도시지역일수록 높고, 기타는 읍면지역이 15.4%로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1-24 참조).

〈표 V-1-25〉 직장어린이집 대기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대기 경험 여부		여건 조성 시 이용 의향						(수)
	현재 신청 중	신청 경험 있음	반드시 이용	어느정도 의향	보통	거의 의향 없음	전혀 의향 없음	잘 모름	
전체	13.2	29.4	45.6	33.8	11.8	4.4	1.5	2.9	(68)
영유아구분									
영아	23.1	19.2	61.5	26.9	7.7	3.8	-	-	(26)
유아	-	39.1	39.1	34.8	13.0	4.3	4.3	4.3	(23)
영유아	15.8	31.6	31.6	42.1	15.8	5.3	-	5.3	(19)
지역구분									
대도시	20.7	20.7	51.7	31.0	10.3	6.9	-	-	(29)
중소도시	8.8	35.3	38.2	35.3	14.7	2.9	2.9	5.9	(34)
읍면지역	-	40.0	60.0	40.0	-	-	-	-	(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자녀양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을 알아보았다. 사업장 근로자 중 29.4%는 입소대기 신청 경험이 있고, 13.2%는 현재 신청 중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와 영유아 자녀 모두를 둔 경우 현재 신청 중이라는 비율이 10~20%대로 높고, 대도시가 20.7%로 높았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드시 이용 45.6%,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33.8%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의 79.4%가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1-25 참조).

5) 효과 및 기여

직장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사사안별로 5점 평균 4.12점~4.51점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있었다고 답하였다. 8개 사안 중 직장어린이집 이용 이후 자녀 안전에 안도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94.0%, 5점 평균 4.51점으로 가장 높고,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이 각각 평균 4.49점, 4.42점이다. 또한 취업부모로서 업무 몰입도, 직무 만족도, 애사심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4.31점, 4.18점, 4.12점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26 참조).

〈표 V-1-26〉 직장어린이집 이용 후 변화 및 기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높아짐	매우 높아짐	(수)	5점 평균	높아짐	매우 높아짐	(수)	5점 평균
1) 자녀 안전에 대한 안도감	35.6	58.4	(219)	4.51	48.5	36.8	(68)	4.22
2)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	35.2	58.0	(219)	4.49	47.1	32.4	(68)	4.07
3)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40.2	47.5	(219)	4.35	39.7	33.8	(68)	4.07
4) 직장에 대한 애사심	33.8	39.7	(219)	4.12	39.7	35.3	(68)	4.09
5) 업무 몰입도	39.3	46.1	(219)	4.31	42.6	36.8	(68)	4.15
6) 직무 만족도	39.7	39.7	(219)	4.18	39.7	30.9	(68)	3.99
7) 자녀양육부담 경감	31.5	56.6	(219)	4.42	38.2	36.8	(68)	4.10
8) 자녀양육비 지출 감소	29.7	53.9	(219)	4.35	36.8	33.8	(68)	4.03

주: 미이용 부모는 직장어린이집의 기여 정도를 질문한 내용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미이용 부모의 양육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미이용 부모가 인식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기여 정도는 5점 평균 3.99점~4.22점이며, 이용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 안전에 대한 안도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용 부모에 비해 직장에 대한 인식과 업무 몰입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는 비율이 더 낮는데, 업무 몰입도 4.15점, 자녀양육부담 경감 4.10점, 직장에 대한 애사심 4.09점 순으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가) 사업주, 근로자, 영유아 측면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가 인식하는 직장어린이집 효과를 사업주, 근로자, 영유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이용 부모는 모든 항목에서 5점 평균에 4.32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안정적인 보육환경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에 효과가 크다는 비율이 92.2%, 5점 평균 4.5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근로자 직무 만족도 및 몰입도 향상으로 생산성 증진,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가 각각 평균 4.42점, 4.37점, 4.36점의 효과가 있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자녀양육비 경감은 평균 4.40점, 4.32점의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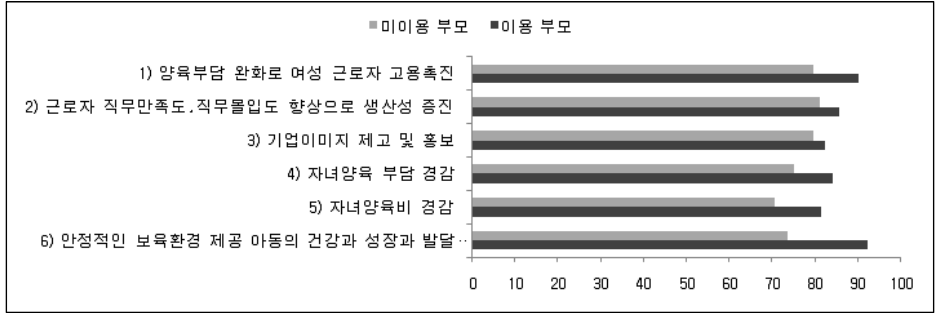
미이용 부모는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가 평균 4.16점으로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다음으로 여성 근로자 고용촉진 평균 4.12점,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및 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 평균 4.09점 순으로, 영유아 및 부모보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V-1-27〉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1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비교 적 큼	매우 큼	(수)	5점 평균	비교 적 큼	매우 큼	(수)	5점 평균
1) 양육부담 완화로 여성 근로자 고용촉진	35.2	54.8	(219)	4.42	44.1	35.3	(68)	4.12
2) 근로자 직무만족도·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생산성 증진	33.3	52.1	(219)	4.37	48.5	32.4	(68)	4.09
3)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	26.9	55.3	(219)	4.36	39.7	39.7	(68)	4.16
4) 자녀양육 부담 경감	26.5	57.5	(219)	4.40	41.2	33.8	(68)	4.04
5) 자녀양육비 경감	29.2	52.1	(219)	4.32	39.7	30.9	(68)	3.96
6)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 도모	33.3	58.9	(219)	4.51	38.2	35.3	(68)	4.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미이용 부모의 양육현황과 요구, 직장어린이집 입장 조사」 조사 결과임.



[그림 V-1-4]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이용 및 미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사업주, 근로자, 영유아 3개 측면 효과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5점 평균 4.68점이다.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가 평균 3.80점으로 높아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표 V-1-28>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2

단위: %(명), 점

구분	직장어린이집 원장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비교적 적	매우 큼	(수)	5점 평균	비교적 적	매우 큼	(수)	5점 평균
1) 양육부담 완화로 여성 근로자 고용촉진	29.6	48.9	(136)	4.21	31.3	14.1	(64)	3.34
2) 근로자 직무만족도·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생산성 증진	39.7	48.5	(136)	4.33	43.8	12.5	(64)	3.58
3)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	33.3	47.4	(136)	4.24	51.6	14.1	(64)	3.72
4) 자녀양육 부담 경감	27.4	61.5	(136)	4.46	48.4	10.9	(64)	3.59
5) 자녀양육비 경감	26.5	58.1	(136)	4.35	42.2	12.5	(64)	3.58
6)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25.7	71.3	(136)	4.68	50.0	20.3	(64)	3.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조사」 조사 결과임.

나) 경력 단절 예방

현재 직장 근무를 결정하거나 지속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매우 동의 63.5%, 동의 22.4%로 전체 응답자 중 85.9%가 직장 선택 및 근속 시 직장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5점 척도로 평균 4.41점으로 높았다(표 V-1-29 참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업체에 근무하는 미이용 부모 역시 60.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이용 부모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장 선택 및 근무 결정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9〉 직장 근무 결정 및 지속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수)
	매우 동의	동의	5점 평균	매우 동의	동의	5점 평균	
전체	63.5	22.4	4.41	39.7	20.6	3.72	(219)
영유아구분							
영아	61.6	26.0	4.45	30.8	23.1	3.58	(73)
유아	66.4	15.9	4.37	52.2	17.4	3.96	(113)
영유아	57.6	36.4	4.45	36.8	21.1	3.63	(33)
F			.20			.55	
지역구분							
대도시	66.7	17.5	4.41	44.8	24.1	3.93	(63)
중소도시	62.4	24.8	4.43	32.4	17.6	3.44	(117)
읍면지역	61.5	23.1	4.36	60.0	20.0	4.40	(39)
F			.08			1.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표 V-1-30〉 일·가정양립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수)
	매우 도움	도움	5점 평균	매우 도움	도움	5점 평균	
전체	76.7	19.6	4.73	54.4	33.8	4.43	(219)
영유아구분							
영아	75.3	21.9	4.73	61.5	30.8	4.54	(73)
유아	77.9	16.8	4.72	56.5	26.1	4.39	(113)
영유아	75.8	24.2	4.76	42.1	47.4	4.32	(33)
F			.07			.60	
지역구분							
대도시	79.4	15.9	4.73	62.1	17.2	4.41	(63)
중소도시	74.4	21.4	4.70	41.2	52.9	4.35	(117)
읍면지역	79.5	20.5	4.79	100.0	-	5.00	(39)
F			.44			1.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이용 부모는 매우 도움 76.7%, 도움 19.6%로 96.3%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5점 평균 4.73점으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인식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일·가정 양립 도움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미이용 부모도 매우 도움 54.4%, 도움 33.8% 도움된다는 비율이 88.2%로 높고 5점 평균 4.43점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V-1-30 참조).

라) 보육비용 절감

직장어린이집 이용으로 일반 어린이집 이용보다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아보았다. 이용 부모는 아동 1인당 월 평균 14.83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답하였다.

반면, 미이용 부모가 생각하는 이용 부모의 비용 혜택 수준은 월 평균 19.96만원으로 이용 부모가 체감하는 절감액보다 더 많은 비용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표 V-1-31 참조).

〈표 V-1-31〉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부담 절감 규모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11~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X ² (df)/F
이용 부모	28.3	30.1	11.0	30.6	100.0(219)	14.83	
영유아구분							
영아	31.5	34.2	11.0	23.3	100.0(73)	12.92	
유아	25.7	25.7	11.5	37.2	100.0(113)	16.63	5.6(6)/2.15
영유아	30.3	36.4	9.1	24.2	100.0(33)	12.91	
지역구분							
대도시	30.2	33.3	9.5	27.0	100.0(63)	13.40	
중소도시	26.5	31.6	8.5	33.3	100.0(117)	15.67	6.4(6)/.60
읍면지역	30.8	20.5	20.5	28.2	100.0(39)	14.64	
미이용 부모	16.2	29.4	5.9	48.5	100.0(68)	19.96	
영유아구분							
영아	15.4	30.8	3.8	50.0	100.0(26)	21.81	
유아	13.0	30.4	8.7	47.8	100.0(23)	19.78	-.35
영유아	21.1	26.3	5.3	47.4	100.0(19)	17.63	
지역구분							
대도시	17.2	31.0	3.4	48.3	100.0(29)	19.62	
중소도시	14.7	26.5	5.9	52.9	100.0(34)	21.26	-.55
읍면지역	20.0	40.0	20.0	20.0	100.0(5)	13.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미이용 부모의 양육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마) 추가 출산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에게 직장어린이집이 추가 출산에 미친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러함 16.2%, 어느 정도 그러함 30.3%로 응답자 중 46.5%가 추가 출산 결정에 직장어린이집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는 5점 평균에 3.21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 이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영유아 부모가 추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고,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57.5%로 높았다. 동의정도는 유의하지 않다.

〈표 V-1-32〉 직장어린이집의 추가 출산 영향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러함	어느 정도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수)	5점 평균
전체	16.2	30.3	24.6	16.2	12.7	100.0(142)	3.21
영유아구분							
영아	18.8	25.0	18.8	15.6	21.9	100.0(32)	3.03
유아	13.0	31.2	27.3	18.2	10.4	100.0(77)	3.18
영유아	21.2	33.3	24.2	12.1	9.1	100.0(33)	3.45
$X^2(df)/F$			5.54(8)				.96
지역구분							
대도시	22.5	35.0	17.5	10.0	15.0	100.0(40)	3.40
중소도시	13.9	26.6	30.4	21.5	7.6	100.0(79)	3.18
읍면지역	13.0	34.8	17.4	8.7	26.1	100.0(23)	3.00
$X^2(df)/F$			-				.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14.6%를 대상으로 출산 계획에 직장어린이집이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그러함 59.4%, 어느 정도 그러함 34.4%로, 93.8%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점 평균 4.5점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표 V-1-33 참조).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내는 영유아 부모 중에서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4명으로 소수이지만, 이들 모두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가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직장어린이집이 다자녀 출산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33 참조).

한편,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는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19.1%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이나 양육방법이 추가 출산에 5점 평균 2.31점 수준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이용 부모가 직장어린이집이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가 5점 평균 4.50점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표 V-1-33, V-1-34 참조).

〈표 V-1-33〉 추가 출산 계획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향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추가출산 계획 '있다' 비율	(수)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향						5점 평균	계(수)
			매우 그러함	어느 정도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전체	14.6	(219)	59.4	34.4	3.1	3.1	-	4.50	100.0(32)	
영유아구분										
영아	24.7	(73)	66.7	27.8	-	5.6	-	4.56	100.0(18)	
유아	8.8	(113)	50.0	40.0	10.0	-	-	4.40	100.0(10)	
영유아	12.1	(33)	50.0	50.0	-	-	-	4.50	100.0(4)	
X ² (df)/F								.14		
지역구분										
대도시	7.9	(63)	-	80.0	-	20.0	-	3.60	100.0(5)	
중소도시	17.1	(117)	70.0	25.0	5.0	-	-	4.65	100.0(20)	
읍면지역	17.9	(39)	71.4	28.6	-	-	-	4.71	100.0(7)	
X ² (df)/F	3.35(4)							6.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표 V-1-34〉 추가 출산 계획 및 현 자녀양육 방법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추가출산 계획 '있다' 비율	(수)	자녀양육 방법의 긍정적 영향						5점 평균	계(수)
			매우 그러함	어느 정도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전체	19.1	(68)	15.4	46.2	30.8	7.7	-	2.31	100.0(13)	
영유아구분										
영아	34.6	(26)	11.1	55.6	22.2	11.1	-	2.33	100.0(9)	
유아	17.4	(23)	25.0	25.0	50.0	-	-	2.25	100.0(4)	
영유아	-	(19)	-	-	-	-	-	-	-	
X ² (df)/F								.02		
지역구분										
대도시	24.1	(29)	-	42.9	42.9	14.3	-	2.71	100.0(7)	
중소도시	17.6	(34)	33.3	50.0	16.7	-	-	1.83	100.0(6)	
읍면지역	-	(5)	-	-	-	-	-	-	-	
X ² (df)/F								4.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자녀양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p < 1.0$

6) 직장어린이집 확대 관련 의견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목적이 관련법 준수인지, 아니면 직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사회적 기여 등의 이유 때문인지 이용 부모와 원장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용 부모 중 80.4%는 직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16.9%는 관련 법 준수, 사회적 기여나 기타는 1% 내외로 소수이었다. 도시지역일수록 관련 법 준수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1-35〉 사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도와 설치 확대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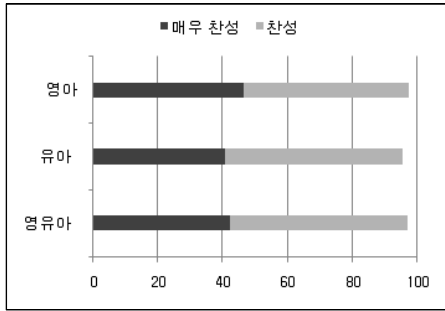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관련 법 준수	직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회적 기여	기타	계(수)	매우 찬성	찬성	(수)
이용 부모	16.9	80.4	1.8	0.9	100.0(219)	42.9	53.4	(219)
영유아구분								
영아	19.2	79.5	1.4	-	100.0(73)	46.6	50.7	(73)
유아	15.9	79.6	2.7	1.8	100.0(113)	40.7	54.9	(113)
영유아	15.2	84.8	-	-	100.0(33)	42.4	54.5	(33)
지역구분								
대도시	20.6	79.4	-	-	100.0(63)	28.6	66.7	(63)
중소도시	19.7	76.9	1.7	1.7	100.0(117)	49.6	46.2	(117)
읍면지역	2.6	92.3	5.1	-	100.0(39)	46.2	53.8	(39)
원장	19.9	77.2	1.5	1.5	100.0(136)	43.5	43.5	(131)
사업체유형								
국가	29.0	71.0	-	-	100.0(31)	50.0	46.7	(30)
지자체	13.6	84.1	-	2.3	100.0(44)	53.7	36.6	(41)
학교, 기업	19.7	75.4	3.3	1.6	100.0(61)	33.3	46.7	(60)
정원								
39인 이하	31.3	65.6	3.1	-	100.0(32)	43.8	40.6	(32)
40~79인	18.8	81.3	-	-	100.0(64)	45.9	47.5	(61)
80인 이상	12.5	80.0	2.5	5.0	100.0(40)	39.5	39.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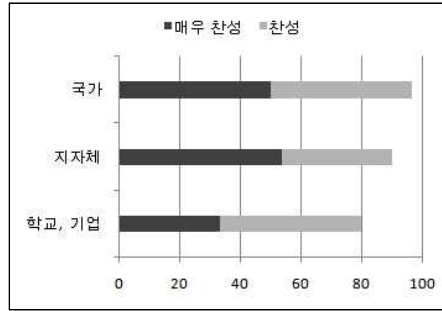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직장어린이집 원장도 이용 부모와 유사하게 직원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이 77.2%, 관련 법 준수 19.9%, 사회적 기여와 기타가 1%대로 소수이었다. 사업체 유형이나 정원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나, 사업체가 국가기관이거나 정원 규모가 적을수록 관련 법 준수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V-1-35 참조).

한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높여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 부모는 찬성 42.9%, 매우 찬성 53.4%로 찬성이 96% 정도,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찬성과 매우 찬성이 각각 43.5%로 모두 87.0%가 찬성 의견을 주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원장]

[그림 V-1-5]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관련 의견

<표 V-1-36>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1-36>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위한 미이용 근로자 지원

단위: %(명)

구분	이용 부모					미이용 부모				
	보육수당 지원	보육료 교육비 지원	필요 없음	기타	계(수)	보육수당 지원	보육료 교육비 지원	필요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6.5	36.1	32.9	4.6	100.0(219)	32.4	55.9	8.8	2.9	100.0(68)
영유아구분										
영아	28.8	32.9	37.0	1.4	100.0(73)	34.6	46.2	15.4	3.8	100.0(26)
유아	23.9	38.9	30.1	7.1	100.0(113)	26.1	65.2	4.3	4.3	100.0(23)
영유아	30.3	33.3	33.3	3.0	100.0(33)	36.8	57.9	5.3	-	100.0(19)
X ² (df)	5.16(6)					-				
지역구분										
대도시	28.6	28.6	36.5	6.3	100.0(63)	37.9	55.2	6.9	-	100.0(29)
중소도시	23.1	41.9	32.5	2.6	100.0(117)	32.4	58.8	5.9	2.9	100.0(34)
읍면지역	33.3	30.8	28.2	7.7	100.0(39)	-	40.0	40.0	20.0	100.0(5)
X ² (df)	6.51(6)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이용 부모 중 32.9%는 추가 지원이 필요없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중 36.1%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26.5%는 보육수당 지원을 들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도시지역일수록 추가 지원이 필요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미이용 부모는 필요없다는 의견은 8.8%로 소수이고,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55.9%로 높고, 보육수당 지원이 32.4%로 높았다. 영아보다는 유아나 영유아 부모는 보육료·교육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자녀양육 관련 필요한 사업체 지원을 조사하였다.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이 38.2%로 높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29.4%, 보육수당 지원 20.6%, 육아휴직 기회 및 기간 보장 11.8%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와 영유아 부모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비율이 높고, 유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보육수당 지원, 중소도시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이 높다(표 V-1-37 참조).

〈표 V-1-37〉 자녀양육 관련 사업체 지원

단위: %(명)

구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보육수당 지원	육아휴직 기회 및 기간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계(수)
전체	29.4	20.6	11.8	38.2	100.0(68)
영유아구분					
영아	30.8	19.2	15.4	34.6	100.0(26)
유아	43.5	26.1	4.3	26.1	100.0(23)
영유아	10.5	15.8	15.8	57.9	100.0(19)
지역구분					
대도시	27.6	34.5	10.3	27.6	100.0(29)
중소도시	26.5	11.8	14.7	47.1	100.0(34)
읍면지역	60.0	-	-	40.0	100.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자녀양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 공공형어린이집

1) 선정기준의 적절성

공공형어린이집은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기본 신청자격을 갖추고, 평가인증 점수와 정원충족률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총점이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보건복지부, 2016a).

세부 선정기준은 평가인증 점수, 건물소유 및 이용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등 기본 항목과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맞벌이 자녀 채용율,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등 가점 항목과 보육료 대비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비율,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등 감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38>은 시도 및 시군구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이 27.8%로 가장 높고, 보육교사 전공과 원장 보육교사 경력이 각각 25.9%, 놀이터 구비와 건물소유,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재직경력, 원장 근속년수가 각각 24.1%, 정원충족률 80%이상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근속교사 비율,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등이 각각 22.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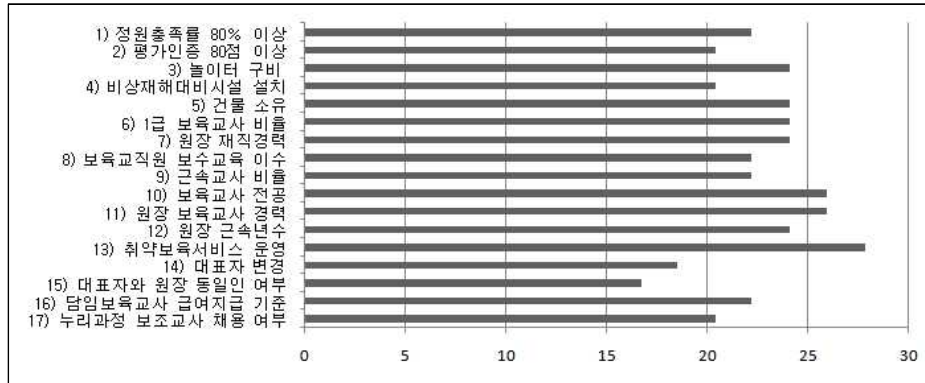
〈표 V-1-38〉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 ‘필요하다’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개선 필요'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 정원충족률 80% 이상	22.2	13.3	27.3	23.5
2) 평가인증 80점 이상	20.4	20.0	18.2	23.5
3) 놀이터 구비	24.1	26.7	26.7	26.7
4)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20.4	20.0	13.6	29.4
5) 건물 소유	24.1	20.0	31.8	17.6
6) 1급 보육교사 비율	24.1	20.0	27.3	23.5
7) 원장 재직경력	24.1	20.0	31.8	17.6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22.2	20.0	22.7	23.5
9) 근속교사 비율	22.2	20.0	18.2	29.4
10) 보육교사 전공	25.9	20.0	27.3	29.4
11) 원장 보육교사 경력	25.9	13.3	27.3	35.3
12) 원장 근속년수	24.1	13.3	27.3	29.4
13)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27.8	26.7	36.4	17.6
14) 대표자 변경	18.5	20.0	18.2	17.6
15)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16.7	6.7	27.3	11.8
16) 담임보육교사 급여지급 기준	22.2	13.3	27.3	23.5
17)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20.4	20.0	13.6	29.4
(수)	(54)	(15)	(22)	(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는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았고, 중소도시는 취약보육서비스 운영과 원장 재직경력, 건물 소유, 읍면지역은 원장 보육교사 경력, 비상재

해대비시설 설치, 원장 근속년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여부, 근속교사 비율, 보육교사 전공 등이었다.



[그림 V-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의 '개선 필요' 비율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들은 취약보육서비스에 대해 어린이집의 의무이므로 선정기준에서 삭제하거나 의무사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에서부터 이용 수요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은 2015년 8월까지 정원 구간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 9월부터 종일반 수나 유아반 수, 재원 아동 수 등 현원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살펴본 결과, 3개 항목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이 80%대로 높지만,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종일반 1개당 35만원)이 낮다는 의견이 11.1%, 교육환경개선비 재원아동 1인당 1.5만원이 낮다는 의견은 14.8%로 높았다.

<표 V-1-39>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적절성

구분	단위: %(명)			
	낮음	적정	높음	계(수)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종일반 1개당 35만원	11.1	85.2	3.7	100.0(54)
2) 유아반 운영비: 3~5세반 1개당 60만원	7.4	87.0	5.6	100.0(54)
3) 교육환경개선비 재원아동 1인당 1.5만원	14.8	81.5	3.7	100.0(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종일반 1개당 40~50만원 정도, 교육환경개선비는 재원아동 1인당 2~3만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 확대 어려움

공공형어린이집은 매년 사업량을 정하고, 이를 지역 배분하여 공공형으로 선정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높은 선정기준이 44.4%, 낮은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25.9%, 운영관리 기준 11.1%, 재무회계 컨설팅 등 운영 관여 1.9%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높은 선정기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낮은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이 30%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표 V-1-40〉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

구분	단위: %(명)					
	높은 선정기준	운영관리 기준	재무회계 컨설팅 등 운영 관여	낮은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기타	계(수)
전체	44.4	11.1	1.9	25.9	16.7	100.0(54)
대도시	53.3	20.0	-	13.3	13.3	100.0(15)
중소도시	40.9	4.5	4.5	27.3	22.7	100.0(22)
읍면지역	41.2	11.8	-	35.3	11.8	100.0(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보육 공급정책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공립유치원

2절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충분성과 증설 지역, 적정규모, 입학 우선순위, 공공형유치원 도입 관련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충분성

교육청 담당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은 대체로 충분 18.2%, 매우 충분 10.4%로 28.6% 정도가 충분하다고 하였고, 충분성 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88점이었다. 지역별로는 시도가 특·광역시보다 충분하다는 비율이 높고, 충분

성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표 V-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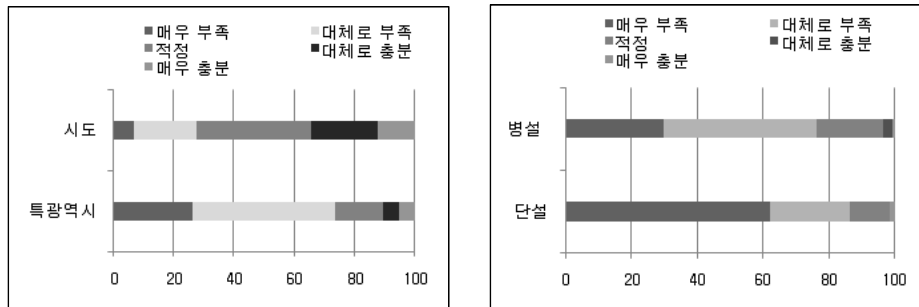
〈표 V-2-1〉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대체로 부족	적정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5점 평균	
공무원								
전체	11.7	27.3	32.5	18.2	10.4	100.0(77)	2.88	
특광역시	26.3	47.4	15.8	5.3	5.3	100.0(19)	2.16	
시도	6.9	20.7	37.9	22.4	12.1	100.0(58)	3.12	
X ² (df)/t								-3.35**
원장								
전체	40.3	39.3	17.4	2.0	1.0	100.0(201)	1.84	
단설	62.1	24.2	12.1	-	1.5	100.0(66)	1.55	
병설	29.6	46.7	20.0	3.0	0.7	100.0(135)	1.99	
X ² (df)/t								3.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 p < .01



[시도교육청 공무원]

[유치원 원장]

[그림 V-2-1]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한편, 공립유치원 원장은 충분하다는 의견보다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체로 부족 39.3%, 매우 부족 40.3%로 80% 가까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충분성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 1.84점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도 전체 응답과 유사하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V-2-1 참조).

나. 증설 지역

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한 지역을 1, 2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이 68.1%,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21.3%, 나머지는 5% 내외이고, 2순위는 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 57.4%,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10.6%, 농산어촌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각각 8.5%이었다. 1,2순위를 합하면,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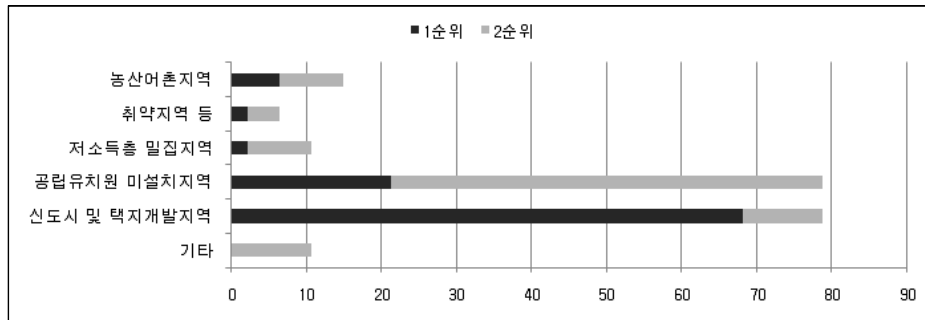
기타 의견으로 공립유치원 수요 반영, 부지확보 가능지역,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취원야가 많은 지역, 취학수요 요구지역 등이 있었다(표 V-2-2 참조).

〈표 V-2-2〉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

단위: %(명)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기타	계(수)
1순위	6.4	2.1	2.1	21.3	68.1	-	100.0(47)
2순위	8.5	4.3	8.5	57.4	10.6	10.6	100.0(47)
1+2순위	14.9	6.4	10.6	78.7	78.7	10.6	(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그림 V-2-2] 공립유치원 증설지역: 1+2순위

<표 V-2-3>은 공립유치원 증설지역 1순위를 지역 및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공무원은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이 49.4%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28.6%, 취약지역 11.7%, 농산어촌 6.5% 순이었다. 지역 별로도 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이 다빈도를 나타내었다. 공립유치원 원장도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이 52.7%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기타 지역이 35%로 공무원과 차이가 있었다.

〈표 V-2-3〉 공립유치원 증설 필요지역: 1순위

단위: %(명)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립유치원 미설치지역	기타1	기타2	계(수)
공무원							
전체	6.5	11.7	28.6	49.4	3.9	-	100.0(77)
특광역시	5.3	10.5	31.6	42.1	10.5	-	100.0(19)
시도	6.9	12.1	27.6	51.7	1.7	-	100.0(58)
원장							
전체	4.5	5.0	3.0	52.7	31.8	3.0	100.0(201)
단설	3.0	7.6	3.0	45.5	37.9	3.0	100.0(66)
병설	5.2	3.7	3.0	56.3	28.9	3.0	100.0(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다. 공립유치원 적정규모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에게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단설 7.24학급, 병설 2.91학급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단설은 차이가 없지만, 병설은 특광역시는 평균 3.42학급, 시도는 2.74학급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단설은 평균 8.71학급, 병설은 평균 3.64학급으로 기관 유형별로 차이없이 단설은 9학급 내외, 병설은 3~4학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표 V-2-4 참조).

〈표 V-2-4〉 단설 및 병설유치원 적정규모

단위: %(명), 학급

구분	단설				병설				계(수)
	5학급 이하	6~9학급	10학급 이상	평균	1학급	2학급	3학급 이상	평균	
공무원									
전체	18.4	59.2	22.4	7.24	7.9	25.0	67.1	2.91	100.0(76)
특광역시	10.5	57.9	31.6	7.74	-	5.3	94.7	3.42	100.0(19)
시도	21.1	59.6	19.3	7.07	10.5	31.6	57.9	2.74	100.0(58)
X ² (df)/t		-		.9		-		2.5*	
원장									
전체	7.5	54.2	38.3	8.71	2.5	7.0	90.5	3.64	100.0(201)
단설	1.5	56.1	42.4	9.14	1.5	3.0	95.5	3.80	100.0(66)
병설	10.4	53.3	36.3	8.50	3.0	8.9	88.1	3.56	100.0(135)
X ² (df)/t		5.2(2)		1.2		-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 p < .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시도 교육청장이 정하도록 하여서 17개 시도가 모두 상이하다.

<표 V-2-5>는 17개 시도의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찬성 32.5%, 매우 찬성 22.1%로 55% 정도가 찬성하였고, 특광역시도 시도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V-2-5> 17개 시도 학급당 원아수 동일 기준 적용 찬반의견

구분	단위: %(명)				계(수)
	절대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교육청					
전체	6.5	39.0	32.5	22.1	100.0(77)
특광역시	10.5	31.6	26.3	31.6	100.0(19)
시도	5.2	41.4	34.5	19.0	100.0(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조사」 결과임.

공립유치원 설립 시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력에 대해 공무원은 단설유치원에는 원장을 비롯한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병설유치원은 부장교사, 원감, 특수교사 순으로 기본 배치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단설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90% 이상으로 높고, 병설은 부장교사, 원감, 특수교사 순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V-2-6 참조).

<표 V-2-6> 공립유치원 기본 배치인력

구분	단위: %(명)						(수)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공무원							
단설	89.6	74.0	76.6	70.1	58.4	57.1	(77)
병설(3학급 이상)	28.6	53.2	62.3	46.8	28.6	22.1	(77)
원장							
단설	97.5	97.5	98.5	94.1	92.1	90.6	(202)
병설	22.8	84.7	99.0	57.9	32.2	18.3	(2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라. 입학 우선순위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서 입학 우선순위를 적용

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5%가 적용한다고 답하였고, 단설이 98.5%, 병설 93.3%로 단설이 병설보다 다소 높았다.

입학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 자격조건을 보면, 1순위는 저소득층 32.2%, 특수교육대상자 25.6%, 재원생 17.3% 순이고, 2순위도 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높고, 3순위 이상은 교직원 가정, 다문화가정 비율이 상승하였다(표 V-2-7 참조).

〈표 V-2-7〉 입학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재원생	국가유공자녀	국가보훈대상자녀	재원생제자매	한부모가정	사회적배려대상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교직원자녀	맞벌이부모	장애부모	탈북자녀	일반가정	기타	계(수)
1순위	32.2	25.6	17.3	9.0	6.2	3.5	2.8	1.4	0.7	0.3	-	-	-	-	11.0	100.0(289)	
2순위	24.8	1.8	10.1	8.3	8.3	7.9	8.6	-	10.8	11.5	0.4	0.4	4.3	0.7	-	2.2	100.0(278)
3순위	14.8	2.1	0.8	3.8	10.6	6.4	8.1	0.4	14.8	19.1	0.8	1.3	3.0	0.8	11.0	2.1	100.0(236)
4순위	2.3	0.8	0.8	3.8	10.6	6.4	13.5	0.8	21.8	25.6	0.8	0.8	3.0	-	9.8	3.0	100.0(133)
5순위	3.1	-	2.1	2.1	1	3.1	12.4	-	20.6	24.7	-	1	13.4	-	8.2	8.2	100.0(97)
6순위	2.0	-	2.0	-	-	24.0	12.0	-	8.0	8.0	2.0	-	6.0	2.0	24.0	10.0	100.0(50)

주: 저소득층: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법정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취약계층, 기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범정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한부모, 범정한부모, 저소득층한부모, 장애인부모, 모자가정
 기타: 초등학교 재학 중 형제자매, 공문에 의거, 교육부 우선순위 권장사항, 조손가정, 학구내, 학구외, 소외계층, 여성폭력피해자, 근거리, 모자보호시설, 복지시설, 초등학교 학구내 거주 유아, 혁신도시이주가정, 기타 희망자, 원장 재량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표 V-2-8〉 입학 우선순위제도 도입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공무원					
전체	-	14.3	58.4	27.3	100.0(77)
특광역시	-	26.3	52.6	21.1	100.0(19)
시도	-	10.3	60.3	29.3	100.0(58)
원장					
전체	13.4	28.9	46.8	10.9	100.0(201)
단설	18.2	34.8	36.4	10.6	100.0(66)
병설	11.1	25.9	51.9	11.1	100.0(135)
X ² (df)			5.1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조사」 결과임.

<표 V-2-8>은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

무원에게 질문한 결과이다. 공무원은 85.7%가 찬성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57.7% 정도만 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시도가 특광역시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단설 유치원 원장이 병설보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마. 공공형유치원 도입

공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과 원장에게 물었다. 공무원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0% 정도로 우세한 반면, 원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정도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표 V-2-9〉 공공형유치원 도입 찬반 의견

구분	단위: %(명)				계(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공무원					
전체	6.5	24.7	53.2	15.6	100.0(77)
특광역시	10.5	15.8	47.4	26.3	100.0(19)
시도	5.2	27.6	55.2	12.1	100.0(58)
원장					
전체	46.0	34.5	16.5	3.0	100.0(200)
단설	46.2	30.8	18.5	4.6	100.0(65)
병설	45.9	36.3	15.6	2.2	100.0(1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공공형유치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추가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 공무원 은 공공형유치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공립유치원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41.7%, 정부 재정낭비와 근본적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어려움이 각각 25% 정도이었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39.5%가 근본적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어려움을 꼽았고, 다음으로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29.0%, 정부 재정낭비가 14.8%,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의 교사 자질 향상 어려움이 13.6%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여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었다(표 V-2-10 참조).

〈표 V-2-10〉 공공형유치원 도입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정부 재정 낭비	근본적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어려움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의 교사 자질 향상 어려움	기타	계(수)
공무원						
전체	41.7	25.0	25.0	4.2	4.2	100.0(24)
특광역시	40.0	40.0	-	-	20.0	100.0(5)
시도	42.1	21.1	31.6	5.3	-	100.0(19)
원장						
전체	29.0	14.8	39.5	13.6	3.1	100.0(162)
단설	29.4	23.5	35.3	7.8	3.9	100.0(51)
병설	28.8	10.8	41.4	16.2	2.7	100.0(1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유치원을 도입할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회계 투명성 확보 37.7%, 교육의 질 담보 32.1%로 높고 나머지는 10% 내외 정도이었다. 공립유치원 원장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질 확보가 각각 33.3%로 높고, 교사의 전문성 확보 23.1% 정도이었다(표 V-2-11 참조).

〈표 V-2-11〉 공공형유치원 도입 시 중점사항

단위: %(명)

구분	회계 투명성 확보	교육의 질 담보	재정운영 안정성	교사 전문성 확보	학부모 만족도 향상	학부모 부담 경감	비용	기타	계(수)
공무원									
전체	37.7	32.1	11.3	5.7	3.8	9.4	-	-	100.0(53)
특광역시	35.7	35.7	7.1	-	14.3	7.1	-	-	100.0(14)
시도	38.5	30.8	12.8	7.7	-	10.3	-	-	100.0(39)
원장									
전체	33.3	33.3	7.7	23.1	-	-	-	2.6	100.0(39)
단설	46.7	40.0	6.7	6.7	-	-	-	-	100.0(15)
병설	25.0	29.2	8.3	33.3	-	-	-	4.2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공립유치원 원장」 조사결과임.

3. 시사점

제5장에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의 충분성 및 확충(증

설)방법, 확충의 어려움, 지원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 직장어린이집 원장, 시도교육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및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 34.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30.6%로 두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비율은 높아지고, 농산어촌 지역과 취약지역은 확충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시군구가 선호하는 확충방법 1, 2순위를 합산하면,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49.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6.2%,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39.5%,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32.7% 순이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크게 줄고,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민관연대 무상임대가 새로운 확충방법으로 부상하였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의 경우, 개소당 330㎡까지 지원과 1㎡당 1,270천원이 낮다는 비율이 각각 54.8%, 62.5%로 높고, 기존시설 전환은 낮다가 54.8%,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은 낮다와 적정하다는 비율이 50% 정도로 비슷하였다. 장애아 전문시설의 경우, 1㎡당 1,270천원 지원은 낮다는 비율이 높지만, 개소당 396㎡까지 지원은 적정하다는 비율이 높다. 기자재 구입은 신축은 낮다는 의견이 많지만, 공동주택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수준과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에는 인건비로 교사당 월 80만원(중소기업 120만원)과 중소기업은 정원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월 80만원과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은 낮다는 의견이 20~30% 사이로 높았다. 특히, 인건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교사당 월 100~150만원까지 인상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월 80%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사업장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수를 고려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 중 40% 정도는 사업장 규모 대비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특히 국가나 지자체 사업체의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4.5%, 48.4%로 높았다. 정원이 부족한 경우, 증원이 필요한 비율은 평균 52.6%로 국가기관이 88.9%, 학교 및 기업이 41.7%, 지자체 33.8% 순이고,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반비례하여 증원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의 어려움으로 높은 선정기준이 가장 높았다. 선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이 가장 높고, 보육교사 전공과 원장 보육교사 경력, 놀이터 구비와 건물소유,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재직경력, 원장 근속년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지원기준 중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종일반 1개당 35만원)이 낮다는 의견이 11.1%, 교육환경개선비 재원아동 1인당 1.5만원은 14.8%로 높았다.

일곱째, 공립유치원은 증설 계획을 지속 추진하며, 시도시 및 택지개발지역과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28.6%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다고 답하고, 39%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공립유치원 원장은 3%정도만 충분하다고 답하였고, 80% 가까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립유치원 증설 지역으로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여덟째, 공립유치원 적정 설립규모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단설은 7.24학급, 병설은 2.91학급, 공립유치원 원장은 단설은 평균 8.71학급, 병설은 평균 3.64학급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립유치원 설립 시 기본 배치인력에 대해 공무원은 단설에는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병설유치원은 부장교사, 원감, 특수교사 순으로 기본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공립유치원 원장은 단설에는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고, 병설은 부장교사, 원감, 특수교사 순이었다.

아홉째,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순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공립유치원 중 95%가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었고, 단설과 병설이 각각 90%를 상회하였다. 또한 입학 우선순위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은 85.7%가 찬성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57% 정도만 찬성하였고, 공무원은 시도가 특광역시보다,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VI.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그간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 추진 경과와 현황,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책제언은 공보육·교육 공급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공보육 즉,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공급정책과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공보육·교육 공급의 형평성 제고 방안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수용계획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체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수급계획과 유아수용계획은 독립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보육수급계획은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고, 유아수용계획은 시도교육청에서 3년마다 유치원 취원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산출방법이나 기준 또한 상이하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아우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공급 정책에 활용한다.

둘째, 적정 공보육·교육 공급률을 산출한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은 보육공급률 30%까지 공보육 인프라

를 확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c).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은 공공성이 높은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45%까지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어디에서도 공급률 30%나 45%에 대한 산출기준이나 '30%'와 '40%'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었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영유아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체계,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정 공급률을 산출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공보육·교육 우선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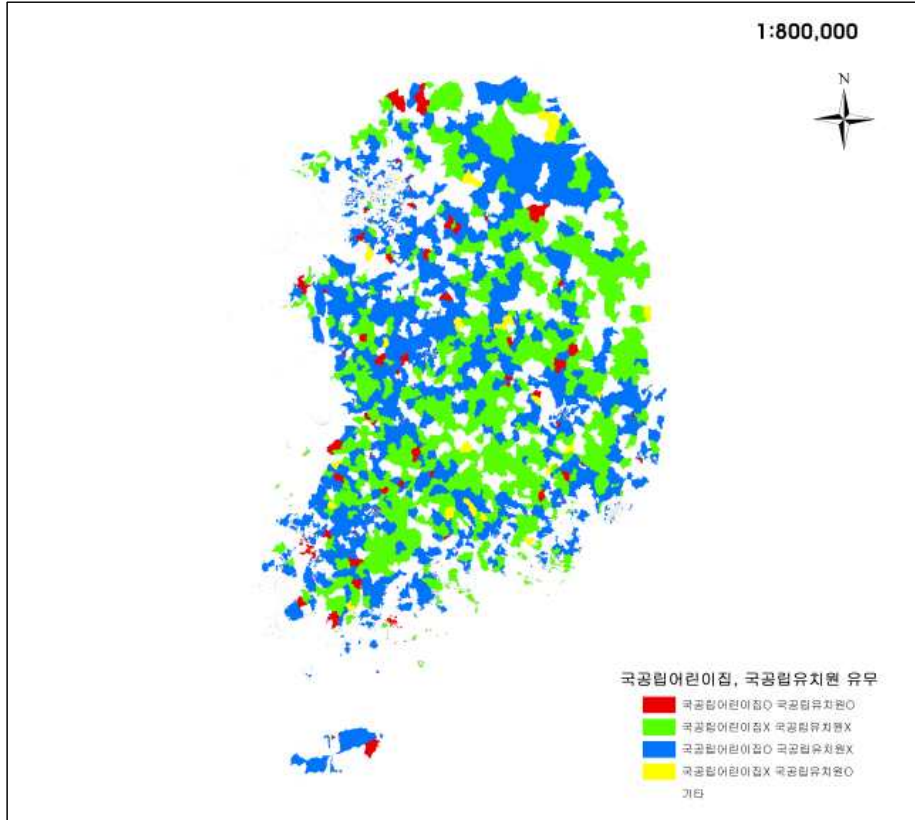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2016년3월 기준 459개 읍면동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1,856개 읍면동에 이르는데,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라와 경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정원충족률이 2015년 말 기준 대도시 83.6%, 중소도시 89.8%, 농어촌 83.3%로 영유아 인구 감소가 뚜렷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설치 지역은 55개 읍면동이다. [그림 VI-1-1]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설치 및 미설치 지역을 지도화한 것이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의하면, 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등의 지역에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도심지역이나 영유아 밀집거주지역 등을 선택하였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치원수용계획 담당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은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 지역은 앞서

제시한 법적 근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의무 설치지역 외에도 보육·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은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그림 VI-1-1]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설치 지역 현황

넷째,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정책을 수립한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와 정부의 재정 여건,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연 150개소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에는 사업물량이 135개소로 줄었고, 2017년은 이보다 더 축소되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과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또한 세부과제로 직장보육시설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 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과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평가에서도 성과가 가장 낮은 과제로 평가되었고,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도 낮았다.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정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공보육 공급 정책 개선방안

가. 국공립어린이집

1) 중장기 방안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균형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정부지원이 확대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4%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이용 아동수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6%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2013년 1개동에 1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박원순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 이전보다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지원되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보육서비스의 질 담보나 효율성 등의 문제를 간과한 채 실적 위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보육수급계획을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인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변화나 관할구역 내 지역특성 변화, 출산율 등에 대한 고려없이 성과 위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르면, 중장기 보육계획은 5

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계획에는 보육수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급계획과 상관없이 우선 설치하는 대상이나, 향후 영유아 인구 감소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대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2) 단기 방안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법을 다변화한다.

시군구가 선호하는 확충방법은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순이었다. 2012년 조사(양미선·임지희, 2012)와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크게 줄고,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늘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민관연대 무상임대가 새로운 확충방법으로 부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확대할 수 있는 확충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규모 및 단가를 현실화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는 개소당 330㎡까지, 1㎡당 1,27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기준이 낮다는 비율은 각각 54.8%, 62.5%로 높고, 기존시설 전환은 낮다가 54.8%,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은 낮다와 적정하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아 전문 시설의 경우, 1㎡당 1,270천원 지원은 낮다는 비율이 높지만, 개소당 396㎡까지 지원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자재 구입은 신축은 낮다는 의견이 많지만, 공동주택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축비 지원규모는 2006년 330㎡로 늘어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지원 단가는 2008년 1,201,300원에서 2014년 1,270,000원으로 6년 만에 5%p 정도 인상되고 동결 상태이다. 기존 시설전환비와 장애아전문시설 신축비 지원도 2014년 인상된 후 동결 상태이고,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2009년 개소당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에서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1.3%, 2015년 0.7%로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신축비 지원단가를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인상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비율을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 매칭 사업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의 경우²⁸⁾,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지원율을 85~95%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이 대형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만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는 부지매입비까지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이다.

나. 직장어린이집

1) 종장기 방안

첫째,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장들을 연계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내에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나, 설치·운영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사업장을 발굴하고,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성이나 지역내 보육 환경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단기 방안

첫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및 의무이행 위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개정 법안²⁹⁾이 발의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의

28) <주석 표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지원율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	지원율	자치구	
40%~70%미만	95%	18개구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0%~100%미만	85%	6개구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송파, 서초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 '서울시 보육정책의 미래청사진을 그리다' 자료집 pp.14.

29) 제1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야 한대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 발의(국회입법시스템 2016년 11월 30일 인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경력단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성근로자가 포함된 상시근로자보다는 여성 근로자 기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은 2015년 기준 여성 300인 이상~근로자 500인 미만 40.7%, 근로자 500인 이상~1000인 이상 58.4%, 근로자 100인 이상 88.1%로 전년도보다 이행률이 떨어졌다. 이는 의무이행 수단이 설치, 위탁, 수당 3가지에서 2015년 설치, 위탁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본 조사결과, 정부의 이행수단 축소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높았고, 적절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72점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이행수단이 축소됨에 따라 종점에 '수당' 지원을 선택한 사업장은 설치보다 위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 기준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여 설치를 유도하여야 한다. 위탁보육 시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며, 위탁률은 30% 이상 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는 기준이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위탁률이 낮다가 20.3%, 높다가 15.6%로 의견이 다양하였다. 위탁률은 30%보다 낮추고, 보육비용 지원률은 인상한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수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단독/공동, 시설매입 등의 설치 방법에 따라 일괄 지원하고 있어서 많은 사업체들이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4월 기준(보건복지부, 2016g), 직장어린이집 정원은 평균 74.8인, 최소 7인에서 최대 402인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는 1㎡당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원단가 및 최대 지원한도액을 설정하여 규모가 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체에 지원이 더 많아 가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중소기업 제외)은 지난 10여 년간 월 80만원으로 동결 상태이다. 동 기간 동안 물가는 연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지원단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본 조사 결과, 월 100~12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즉 영아반 80%, 유아반 30%까지 인상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므로 월 100만원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지원 단가와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이를

좁혀 나간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어린이집 규모는 사업장 내 지원 대상 근로자(영유아 부모)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직장어린이집 정원 규모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원장 4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현재보다 52.6%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사업체들이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80%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지조건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사업장 근로자 중 영유아 부모 감소, 무상보육으로 집 근처 어린이집 선호 등을 들었다.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양미선 외, 2013a, 양미선 외, 2014a)에 따르면, 등원 시 소요시간이 전체 평균 9분 대이나,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21.1분으로 두배 이상 길었다. 또한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집과의 거리를 선택한 비율이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이보다 많은 42.5%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등하원 시간 등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큼을 알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입지조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사업장 내 영유아 부모 수와 직장어린이집 보육 수요, 인력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결정,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을 조사한 결과, 43.7%가 찬성하였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규제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미이행 강제금이 어린이집 설치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이행 강제금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미이행 사업장을 상시 언론을 통해 공표하여 사업장을 압박한다.

다. 공공형어린이집

1) 종장기 방안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체계는 교사 수에 관계없이 아동 정원에 따라

지급되어 어린이집 규모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서문희 외, 2014b).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운영비 지원기준 중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종일반 1개당 35만원)이 낮다는 의견이 11.1%, 재원아동 1인당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이 낮다는 비율이 14.8%로 조사되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추가 보육료는 매년 인상되는 데 반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의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물량은 매년 늘어나나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운영비 지원단가를 매년 인상하기 어려우므로,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 단기 방안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규모 고려하여 차등화 한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농어촌 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나,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이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맞벌이 자녀 재원을 등 일부 지표는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한다.

공공형과 일반(민간·가정)어린이집 간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3개 항목에 대한 세출액을 비교한 결과, 공공형 가정어린이집이 일반 가정어린이집보다 1.281배 지출 규모가 컸으나,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21~49인 이하는 1.051배, 50~79인 1.136배, 80인 이상은 1.141배로 규모에 비례하여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이용자 순편익은 공공형 가정 93.9억원, 공공형 민간 44.4억원이고, 편익비는 각각 9.24, 8.28배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중 가정이 민간보다 편익이 높았다. 공공형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 민간어린이집보다 인건비와 급간식, 교재교구비 지출 규모가 크고 순편익과 편익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 중 동점 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 21~49인의 소규모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공교육 공급 정책 개선방안

1) 중장기 방안

첫째,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이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급 당 유아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차이가 크다. 기본과정의 경우, 만3세는 학급당 15~20명으로 지역 간에 5명 정도 차이가 난다. 대전, 충남, 전남은 학급당 15명인 반면 제주는 학급당 20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만4세는 학급당 20~26명, 만5세는 학급당 21~28명으로 편차가 크다. 학급당 유아 수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유아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급 당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이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학급당 유아 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만3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단기 방안

첫째,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적정 모형을 개발한다.

시도교육청 및 공립유치원 원장 조사 결과, 단설은 7~8학급, 병설은 3학급 정도가 적정하고, 기본 인력으로 단설에는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병설유치원은 부장교사, 원장,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설립과 함께 적정 규모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지역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둘째, 농산어촌에 적합한 유치원 모델을 개발한다.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3a) 중 공립유치원 공급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공립유치원 원장 모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유아교육진흥 계획 추진 시 공립유치원은 농산어촌에 병설 공립유치원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농산어촌의 영유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없는 지역에는 설치 필요성이 적지만 소수 거주지

역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공립유치원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산어촌에 적합한 공립유치원 규모 및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유치원 취학 우선순위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치원 입학 지원 편의와 유치원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입학지원 및 추천, 등록 전 과정을 웹사이트로 진행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개발 및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a, 2016b). 2016년 하반기에는 서울, 세종, 충북 세 지역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교육부, 2016a, 2016b). 교육부는 법정저소득층 등 우선모집 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이 일반가정 모집보다 우선 실시하고, 우선모집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으로 추천, 온라인 등록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교육부, 2016b).

그러나 보도자료만으로는 법정저소득층 등에 포함되는 우선 모집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고, 이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우선 입학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린이집은 자격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립유치원도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자격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합산 점수로 우선 입학 아동을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80% 이상이 입학 우선순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단설 및 병설유치원 원장은 40% 정도만 필요하다고 답하여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장 면담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공립유치원은 취업모 자녀 중심으로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공교육 공급정책의 보편성을 평가한 결과, 공립유치원 이용시간이 2009년 6시간 41분에서 2012년 7시간 32분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준으로 길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과거 유치원이 교육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방과후과정비가 전 계층에 지원됨에 따라 오후시간에 돌봄이 필요 없는 유아들까지도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4년 기준 방과후과정 운영률은 97.2%, 이용률은 67.2%에 달하고(최은영 외, 2014b), 돌봄교실 운영률은 2016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이 7.2%, 11.3%로 2015년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의 운영률이 사립유치원보다 낮다. 공립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정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가구, 장애부모 가구, 장애아 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맺는 말

본 연구는 그간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공급정책 추진과정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 및 평가하였으며, 보육·교육 공급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법 및 제도, 통계자료,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 및 평가하여,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내실화하기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공보육·교육 공급정책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을 추진하며, 적정 공보육·교육 공급률을 산출하고, 공보육·교육 우선 공급지역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역 균형 배치하고, 보육수급계획을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확충방법을 다변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신축비 지원규모 및 단가를 현실화 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의무설치 사업장 및 의무이행 위탁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설치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수준을 개선하고, 사업장 내 지원 대상 근로자(영유아 부모)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규모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차등화 하며,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한다.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적정 모형 및 농산어촌에 적합한 유치원 모델을 개발하며, 유치원 취학 우선순위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모 자녀 중심으로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비용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국공립·직장·공공형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공급 확대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신욱·노대명·이현주·임완섭·김현경·권문일·이병희·우선희·박형준(2015).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욱(2004).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및 국가기금운용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1). 제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a).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2013b).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유치원 취학수요조사 포함.
- 교육부(2014a).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 교육부(2014b). 제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자료집.
- 교육부(20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16a).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개발 착수(2016. 4. 8자 보도자료).
- 교육부(2016b). 유치원 입학지원·추첨확인은 “처음학교로”에서(2016. 10. 4자 보도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권기성·강영욱(2006).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27-53.
- 근로복지공단(2016a). 직장어린이집 등 지원사업안내 브로슈어.
- 근로복지공단(2016b). 201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현황.
- 근로복지공단(2016c).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2016. 2. 25

자 보도자료).

- 김미정·원종욱(201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분석.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김미정·원종욱(2013).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분석.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김미정·원종욱·윤자영(2014).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효과성 및 비용편익 분석Ⅱ.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 김병만(2014). 유아교육정책 평가준거 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혜인(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2012).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 6(1), 95-124.
- 나정(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교육개혁정책연구보고서(97-1). 교육개혁위원회.
- 나정·신동주·김재웅(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서울:양서원.
- 나정·장명림(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장명림·이은주(1994). 공립 유치원 모형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5-27.
- 나정·김효겸·박재운·장영희·정미라(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유희정·김정래·김안나·박은실(2001).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천세영·장명림(1996). 유치원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민국정부(2006).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 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2010).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플랜 2020.
- 박미경·조민호(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 박미옥(2010). 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분석: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55-89.
- 백선희(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비판사회정책, (28), 95-141.
-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09a). 아이사랑플랜 2009-2012.
- 보건복지부(1995a, 1996, 2000a, 2001a, 2002a, 2003a, 2004, 2005). 보육사업지침.
- 보건복지부(1995b, 2000b, 2011b, 2012c, 2013c, 2014c, 2015c).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b, 2013b, 2014b, 2015b, 2016b).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3d).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2013. 1. 30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e).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3f, 2014e, 2015e). 어린이집 일람현황(각 년도 12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2014d).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 (2014. 4. 29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5d).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5f).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2015. 4. 30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5g).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6d).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6e).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6f).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개 사업장 명단도 함께 공표(2016. 4. 29자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6g).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6년 4월말 기준).
- 보건복지부(2016h).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2016년 4월말 기준).
- 보건사회부(1991a, 1992a, 1994). 보육사업지침.
- 보건사회부(1991a, 1992b). 보육통계.
-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a, 2016). 어린이집 일람 현황.
- 사회보장정보원(2015b).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혜진(2012b).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a).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증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c).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원선·이혜민(2014b).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a).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4).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울특별시(2016).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계획 내부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 서울시 보육정책의 미래청사진을 그리다. 자료집
- 성효용(2006).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3차 공개 토론회 자료집. 김애실 국회의원실.
- 성희자(2013).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시도 교육청(2013, 2014, 2015, 2016a)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내부자료.
- 시도 교육청(2016b). 유치원 학급 편성기준 내부자료.
- 시도 교육청(2016c). 공립유치원 경쟁률 내부자료.
-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미선·김길숙·김정민(2014b).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박진아·임지희(2013c).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배윤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김정민(2014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4.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서문희·이혜민(2013a).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유해미·최윤경(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마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윤진·김정민(2016b).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6. 보건복지부·육

아정책연구소 발간 예정.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정주영·임지희(2013b).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05, 2006b, 2007).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6a, 2007,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6c).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09)-.

오석선(2010). 지방교육재정 정책효과성에 관한 관련집단 인식연구-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유은수(2008).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보미(201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금(1992). 유아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한 과제. 교육학 연구, 30(3), 153-164.

이일주(2007). 현행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동향과 과제. 교원교육, 23(3), 1-27.

이재무·이재성(2014).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활용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효율성 분석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4, 177-205.

이재성·김재일(201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효율성 및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8(3).

임재택(1992).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안의 모색. 유아교육논총, 2(단일호), 5-28.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황성온·김미나(2012). 201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전길양·최인숙·김미경(2006). 직장보육서비스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지현(2011). 교육과정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를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의 의미

- 와 쟁점. 유아교육연구, 31(6), 285-307.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b).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a).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1983, 1984, 2001, 2015). 출생통계.
- 표갑수(2006).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46, 71-9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6). 공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 현황 내부자료.
-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행정자치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등록인구 통계.
- 허아랑·김예린·김근세(2015).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09-344.
- 황해익·김병만(2011).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교원의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2), 245-266.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 유치원알리미 사이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www.kcpi.or.kr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기 사】

- KBS뉴스(2016. 11. 7). 직장어린이집 '절반'만 설치, 강제금 '0원'. (2016. 12. 30 인출).
- TV조선 뉴스(2014. 12. 20). 인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 학대... 두 살배기 '내동댕이'. (2016. 12. 30 인출).
- YTN(2014. 12. 12). 공립유치원 입학 '하늘의 별따기'. (2016. 12. 30 인출).
- 국민일보(2013. 5. 7). 어린이집 태반이 보조금 빼먹고 부실 급식. (2016. 12. 30 인출).
- 국민일보(2014. 12. 30).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별따기'... 대기 4000명 넘는 곳도. (2016. 12. 30 인출).
- 국민일보(2016. 9. 5). 보육교사 40분 자리 비워 '방치' 7개월된 영아 질식사. (2016. 12. 30 인출).
- 베이비뉴스(2016. 12. 16).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디에?-내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겨우 90곳...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2016. 12. 30 인출).
- 문화일보(2015. 9. 7). 유치원 입학 경쟁률 '양극화'. (2016. 12. 30 인출).
- 문화일보(2016. 12. 14). 직장어린이집 의무설립 이행률 52% 그쳐. (2016. 12. 30 인출).
- 세계일보(2014. 8. 29). 대학 등록금 맞먹는 사립유치원 학비 (2016. 12. 30 인출).
- 아시아경제(2012. 12. 12). 매년 '추첨대란' 공립유치원, 왜 못늘리나 봤더니 (2016. 12. 30 인출).
- 연합뉴스(2016. 12. 7).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상당수 '나 몰라라'. (2016. 12. 30 인출).
- 이데일리(2014. 8. 21).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경쟁률 47대1. (2016. 12. 30 인출).
- 이데일리(2015. 12. 31). 어린이집 쏠림, 보육서비스 평준화로 해결해야. (2016. 12. 30 인출).
- 주간동아(2016. 1. 20). 누리과정 4년의 악몽, 착한 정책 나쁜 결과 (2016. 12. 30 인출).

- 한겨레(2010. 7. 23). “유치원 공립-사립 차별정책 철폐를” (2016. 12. 30 인출).
- 한국일보(2015. 12. 23). 수도권 일대 ‘보육대란’ 째깍째깍. (2016. 12. 30 인출).
- 헤럴드POP(2014. 3. 17). 대입보다 힘든 유치원 입학 ‘유아 10명 중 6명 유치원 못들어가’. (2016. 12. 30 인출).
- 헤럴드경제(2016. 12. 4). 직장어린이집 없는 기업 2곳 중 1곳 ‘앞으로 설치계획 없다’. (2016. 12. 30 인출).

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 of the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Supply Policy

Mi-sun Yang Gyurim, Lee Jung-Min Kim

This study reviews the progress status and key issues of the policy to supply state-run, workplace, and public type child care centers and public kindergartens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a child care and education environment where parents can entrust their children to the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seek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supply policy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an analysis framework and evaluating the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supply policy through this framework, and by assessing opinions and needs of concerned public officials,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parents and etc. about the supply of the public childcare and education. For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amined related laws, systems and previous research,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the National Child Care Actual Conditions Survey and the satisfaction survey of users using child care centers, and analyzed the financial accounting material of child care centers. At the same time, a survey was hel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professional officials from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field specialists,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parents using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childcare and education supply policy should be promoted through an objective and rational demand projection. Although child 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are in a substitutive relationship, the child care supply and demand plan and the early childhood accommodation plan are

established independently. The child care supply and demand plan applies the child care demand rate derived from the survey of child care real condition that is held once every three years, and the early childhood accommodation plan reflects the result of the survey of the demand for kindergarten services that is conduc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nce every three years, thus the calculation method or the criteria also diff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bjective and rational demand calculation method that can encompass both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apply in the supply policy.

Second, an adequate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supply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The "Saessak Plan" (the middle and long term child care development plan) stipulates that the public child care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by 30% of the supply rate, and the Third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defines that state-run, workplace, and public type child care centers shall be expanded by up to 45%. However, these materials do not provide any basis of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infant-toddler population shall sharply decline from 2020, therefore an adequate supply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multi-faceted assessment such as the supply system of the current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decline of infant-toddler pop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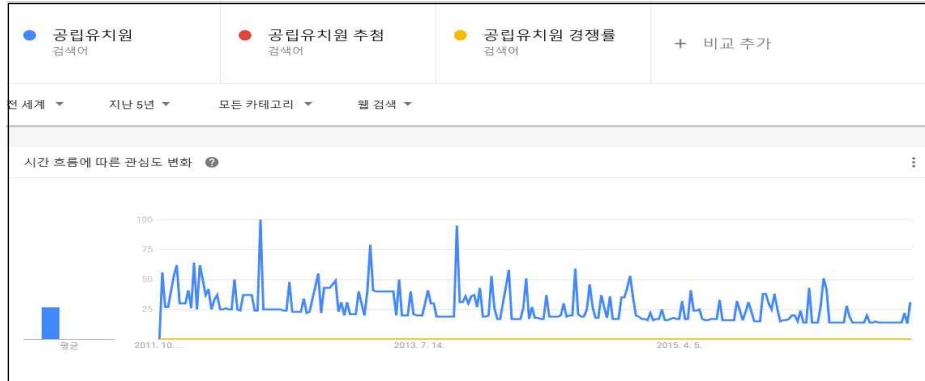
Third, a standard on selecting priority regions for establishing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Unlike the Handbook for the Child Care Business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is study found that places that required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public kindergartens were urban areas or areas densely populated by infants and toddlers. Therefore, a standard should be provided to allow areas other than priority regions to have precedence in establishing facilities if there are demand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조사표

1. 부록 표



[부록 그림 III-2-1] 구글 트렌드

<부록 표 IV-2-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시간 연장형	휴일 보육	24시간	계(수)
2013년									
국공립	2.2	1.5	23.9	1.0	1.3	63.2	4.6	2.6	100.0(2,732)
민간	1.9	0.2	0.9	0.1	0.5	16.1	0.4	0.6	100.0(13,279)
가정	0.2	-	0.1	-	-	16.0	0.2	0.4	100.0(20,644)
공공형_민간	-	-	-	-	2.0	35.2	1.2	0.3	100.0(1,152)
공공형_가정	-	-	-	-	-	41.1	0.7	0.5	100.0(603)
2014년									
국공립	2.3	1.5	24.3	1.0	1.9	64.6	4.8	2.8	100.0(2,489)
민간	2.0	0.2	0.9	0.2	0.6	16.4	0.4	0.7	100.0(13,737)
가정	0.2	-	0.1	-	-	15.5	0.1	0.4	100.0(22,790)
공공형_민간	-	-	3.4	-	2.3	34.1	0.9	0.3	100.0(1,085)
공공형_가정	-	-	-	-	-	40.2	0.6	0.4	100.0(528)
2015년									
국공립	2.2	1.5	24.4	1.0	1.5	64.4	4.8	2.7	100.0(2,629)
민간	2.0	0.2	0.9	0.1	0.5	16.1	0.4	0.6	100.0(13,463)
가정	0.2	-	0.1	-	-	15.8	0.2	0.4	100.0(21,460)
공공형_민간	-	-	3.4	-	2.1	35.9	1.2	0.3	100.0(1,163)
공공형_가정	-	-	-	-	-	40.4	0.7	0.5	100.0(614)

주: 각 년도 12월 말 자료를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f, 2014e, 2015e). 월별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

양미선 외(20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마련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8.

〈부록 표 IV-2-2〉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대도시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중	기타운영비	기타	총세출	(수)
전체	304,327	46,968	10,362	361,657	25,563	221,655	583,312	(5,327)
공인유형1								
공공형	318,091	46,939	14,887	379,917	18,623	223,673	603,590	(432)
일반	298,938	46,485	9,307	354,731	27,901	219,265	573,995	(4,564)
국공립	360,671	53,654	19,007	433,332	2,385	251,977	685,310	(331)
F	71.2***	62.2***	98.3***	113.2***	258.3***	34.1***	135.6***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23,255	51,655	7,152	482,062	14,059	234,081	716,143	(153)
공공형_민간	260,627	44,363	19,033	324,023	21,355	218,723	542,746	(276)
일반_가정	327,716	48,584	6,612	382,912	27,309	221,433	604,345	(2,761)
일반_민간	254,870	43,273	13,434	311,576	28,806	215,944	527,520	(1,803)
국공립	360,671	53,654	19,007	433,332	2,385	251,977	685,310	(331)
F	330.6***	107.3***	139.5***	330.9***	133.5***	20.0***	257.4***	
차이								
공공형-일반	19,153	454	5,580	25,186	-9,278	4,408	29,595	
공공형-국공립	-42,580	-6,715	-4,120	-53,415	16,238	-28,304	-81,720	
가정(공공형-일반)	95,539	3,071	540	99,150	-13,250	12,648	111,798	
민간(공공형-일반)	5,757	1,090	5,599	12,447	-7,451	2,779	15,226	
배수								
공공형-일반	1.064	1.010	1.600	1.071	0.667	1.020	1.052	
공공형-국공립	0.882	0.875	0.783	0.877	7.808	0.888	0.881	
가정(공공형-일반)	1.292	1.063	1.082	1.259	0.515	1.057	1.185	
민간(공공형-일반)	1.023	1.025	1.417	1.040	0.741	1.013	1.029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부록 표 IV-2-3〉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중소도시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기타운영비	기타	총세출	(수)
전체	312,536	49,248	8,815	370,599	28,469	237,996	608,595	(11,341)
공인유형1								
공공형	348,248	50,116	12,906	411,271	17,351	236,840	648,110	(625)
일반	308,831	48,879	7,963	365,672	30,682	237,509	603,182	(10,113)
국공립	337,663	54,535	18,860	411,059	2,872	247,367	658,425	(603)
F	65.4***	55.9***	138.6***	108.6***	313.4***	3.6*	72.8***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45,760	54,785	7,177	507,722	14,379	254,405	762,127	(297)
공공형_민간	260,020	45,913	18,182	324,114	20,107	220,748	544,862	(326)
일반_가정	334,289	50,715	5,318	390,322	31,495	239,813	630,135	(7,133)
일반_민간	247,893	44,485	14,293	306,671	28,737	231,994	538,664	(2,980)
국공립	337,663	54,535	18,860	411,059	2,872	247,367	658,425	(603)
F	680.9***	177.0***	249.6***	640.4***	163.2***	11.5**	411.8***	
차이								
공공형-일반	39,417	1,237	4,943	45,599	-13,331	-669	44,928	
공공형-국공립	10,585	-4,419	-5,954	212	14,479	-10,527	-10,315	
가정(공공형-일반)	111,471	4,070	1,859	117,400	-17,116	14,592	131,992	
민간(공공형-일반)	12,127	1,428	3,889	17,443	-8,630	-11,246	6,198	
배수								
공공형-일반	1.128	1.025	1.621	1.125	0.566	0.997	1.074	
공공형-국공립	1.031	0.919	0.684	1.001	6.041	0.957	0.984	
가정(공공형-일반)	1.333	1.080	1.350	1.301	0.457	1.061	1.209	
민간(공공형-일반)	1.049	1.032	1.272	1.057	0.700	0.952	1.012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부록 표 IV-2-4〉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읍면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중	기타운영비	기타	총세출	(수)
전체	306,156	48,601	11,275	366,033	24,098	233,697	599,730	(4,019)
공인유형1								
공공형	305,881	47,376	14,048	367,305	17,958	221,208	588,514	(459)
일반	301,730	48,209	9,581	359,520	27,467	230,713	590,233	(3,165)
국공립	341,947	53,167	21,627	416,741	4,234	272,115	688,856	(395)
F	25.2***	28.2***	116.3***	49.2***	194.0***	44.9***	80.9***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37,462	54,930	9,272	501,663	14,885	242,854	744,517	(118)
공공형_민간	260,816	44,887	15,764	321,466	19,051	213,796	535,262	(335)
일반_가정	341,997	50,884	6,248	399,129	27,537	232,490	631,619	(1,893)
일반_민간	241,804	44,229	14,541	300,573	27,363	228,068	528,641	(1,272)
국공립	341,947	53,167	21,627	416,741	4,234	272,115	688,856	(395)
F	314.5***	82.7***	124.6***	310.4***	97.5***	25.3***	206.9***	
차이								
공공형-일반	4,151	-833	4,467	7,785	-9,509	-9,505	-1,719	
공공형-국공립	-36,066	-5,791	-7,579	-49,436	13,724	-50,907	-100,342	
가정(공공형-일반)	95,465	4,046	3,024	102,534	-12,652	10,364	112,898	
민간(공공형-일반)	19,012	658	1,223	20,893	-8,312	-14,272	6,621	
배수								
공공형-일반	1.014	0.983	1.466	1.022	0.654	0.959	0.997	
공공형-국공립	0.895	0.891	0.650	0.881	4.241	0.813	0.854	
가정(공공형-일반)	1.279	1.080	1.484	1.257	0.541	1.045	1.179	
민간(공공형-일반)	1.079	1.015	1.084	1.070	0.696	0.937	1.013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부록 표 IV-2-5〉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특광역시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기타운영비	기타	총세출	(수)
전체	304,227	47,121	10,507	361,855	25,506	222,616	584,471	(5,766)
공인유형1								
공공형	319,239	47,243	15,001	381,482	18,966	222,589	604,072	(471)
일반	298,867	46,634	9,398	354,898	27,861	220,519	575,418	(4,925)
국공립	356,465	53,451	19,554	429,470	2,478	250,559	680,029	(370)
F	69.9***	61.8***	113.2***	114.3***	283.6***	30.8***	130.1***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23,091	52,129	7,837	483,056	14,515	232,604	715,660	(173)
공공형_민간	259,128	44,416	19,071	322,615	21,768	217,471	540,086	(295)
일반_가정	327,467	48,753	6,718	382,939	27,322	222,935	605,874	(2,976)
일반_민간	255,196	43,397	13,490	312,083	28,685	216,830	528,913	(1,949)
국공립	356,465	53,451	19,554	429,470	2,478	250,559	680,029	(370)
F	348.5***	114.7***	148.4***	350.5***	146.3***	18.9***	266.3***	
차이								
공공형-일반	20,372	609	5,603	26,584	-8,895	2,070	28,654	
공공형-국공립	-37,226	-6,208	-4,553	-47,988	16,488	-27,970	-75,957	
가정(공공형-일반)	95,624	3,376	1,119	100,117	-12,807	9,669	109,786	
민간(공공형-일반)	3,932	1,019	5,581	10,532	-6,917	641	11,173	
배수								
공공형-일반	1.068	1.013	1.596	1.075	0.681	1.009	1.050	
공공형-국공립	0.896	0.884	0.767	0.888	7.654	0.888	0.888	
가정(공공형-일반)	1.292	1.069	1.167	1.261	0.531	1.043	1.181	
민간(공공형-일반)	1.015	1.023	1.414	1.034	0.759	1.003	1.021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부록 표 IV-2-6〉 공공형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 시도

단위: 원(개소)

구분	기본급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항목3종	기타운영비	기타	총세출	(수)
전체	311,098	49,082	9,376	369,555	27,399	236,948	606,503	(14,921)
공인유형1								
공공형	330,247	48,894	13,283	392,424	17,416	230,954	623,378	(1,045)
일반	307,395	48,725	8,287	364,407	29,987	235,875	600,282	(12,917)
국공립	340,115	54,086	19,783	413,984	3,417	257,920	671,904	(959)
F	65.6***	76.6***	248.7***	128.7***	483.3***	30.2***	124.0***	
공인유형2								
공공형_가정	444,492	54,780	7,504	506,776	14,346	252,630	759,406	(395)
공공형_민간	261,106	45,399	16,877	323,382	19,330	217,755	541,138	(642)
일반_가정	336,190	50,746	5,451	392,386	30,743	238,181	630,567	(8,811)
일반_민간	245,604	44,390	14,374	304,367	28,366	230,928	535,295	(4,106)
국공립	340,115	54,086	19,783	413,984	3,417	257,920	671,904	(959)
F	978.3***	252.4***	371.6***	929.8***	248.7***	29.3***	608.0***	
차이								
공공형-일반	22,852	169	4,996	28,017	-12,571	-4,921	23,096	
공공형-국공립	-9,868	-5,192	-6,500	-21,560	13,999	-26,966	-48,526	
가정(공공형-일반)	108,302	4,034	2,053	114,390	-16,397	14,449	128,839	
민간(공공형-일반)	15,502	1,009	2,503	19,015	-9,036	-13,173	5,843	
배수								
공공형-일반	1.074	1.003	1.603	1.077	0.581	0.979	1.038	
공공형-국공립	0.971	0.904	0.671	0.948	5.097	0.895	0.928	
가정(공공형-일반)	1.322	1.079	1.377	1.292	0.467	1.061	1.204	
민간(공공형-일반)	1.063	1.023	1.174	1.062	0.681	0.943	1.011	

주: 서울은 서울형어린이집 별도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2015년 9월말 기준).

〈부록 표 V-1-1〉 직장어린이집 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직장 내에 있어 등·하원 편리	집 주변에 자녀 보낼 만한 어린이집 없음	직장에서 운영하므로 급식, 프로그램, 교 사 등 신뢰	시설, 환경 우수	직장 이용 권유	비용 저렴	기타	계(수)
전체	34.2	0.9	57.1	2.7		4.1	0.9	100.0(219)
영유아구 분 ³⁰⁾								
영아	31.5	2.7	61.6	2.7		-	1.4	100.0(73)
유아	30.1	-	59.3	2.7		7.1	0.9	100.0(113)
영유아	54.5	-	39.4	3.0		3.0	-	100.0(33)
지역구분								
대도시	36.5	1.6	54.0	3.2		1.6	3.2	100.0(63)
중소도시	31.6	0.9	59.8	3.4		4.3	-	100.0(117)
읍면지역	38.5	-	53.8	-		7.7	-	100.0(39)

주: 영유아 구분은 직장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1-2〉 어린이집 등원방법

단위: %(명)

구분	사업체 근무 부와 함께	사업체 근무 모와 함께	사업체 근무 부모와 함께	사업체 근무자 아닌 부나 모와 함께	부모 외 친인척, 비혈연인과 함께	기타	계(수)
전체	24.2	34.7	15.1	17.8	4.1	4.1	100.0(219)
영유아구분							
영아	19.2	41.1	17.8	16.4	4.1	1.4	100.0(73)
유아	30.1	25.7	14.2	20.4	3.5	6.2	100.0(113)
영유아	15.2	51.5	12.1	12.1	6.1	3.0	100.0(33)
지역구분							
대도시	20.6	39.7	14.3	17.5	0.0	7.9	100.0(63)
중소도시	28.2	34.2	13.7	16.2	6.0	1.7	100.0(117)
읍면지역	17.9	28.2	20.5	23.1	5.1	5.1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30) 영유아 구분은 직장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의 연령을 의미함. 영아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유아인 경우, 영유아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직장어린이집 이용 관련 표 해석 시, 각각을 영아 부모, 유아 부모, 영유아 부모로 기술함.

〈부록 표 V-1-3〉 어린이집 하원방법

단위: %(명)

구분	사업체 근무 부	사업체 근무 모	사업체 근무 부모	사업체 근무자 이외 부모	부모 외 친인척, 비혈연인	기타	계(수)
전체	16.4	35.2	13.7	20.5	7.3	6.8	100.0(219)
영유아구분							
영아	9.6	42.5	17.8	17.8	8.2	4.1	100.0(73)
유아	22.1	26.5	11.5	23.0	7.1	9.7	100.0(113)
영유아	12.1	48.5	12.1	18.2	6.1	3.0	100.0(33)
지역구분							
대도시	14.3	41.3	14.3	20.6	0.0	9.5	100.0(63)
중소도시	17.9	37.6	9.4	20.5	12.0	2.6	100.0(117)
읍면지역	16.4	35.2	13.7	20.5	7.3	6.8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1-4〉 어린이집 등·하원 교통수단

단위: %(명), 분

구분	등하원 시 교통수단				등원시간 (분)	직장근처 이사 경험		계(수)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있음	없음	
전체	13.2	1.8	81.3	3.7	15.5	27.4	72.6	100.0(219)
영유아구분								
영아	9.6	2.7	84.9	2.7	16.5	20.5	79.5	100.0(73)
유아	15.9	1.8	77.9	4.4	15.0	26.5	73.5	100.0(113)
영유아	12.1	0.0	84.8	3.0	14.8	45.5	54.5	100.0(33)
$X^2(df)/F$			-		0.52	7.17(2)*		
지역구분								
대도시	6.3	6.3	84.1	3.2	18.3	34.9	65.1	100.0(63)
중소도시	12.8	0.0	85.5	1.7	14.1	28.2	71.8	100.0(117)
읍면지역	25.6	0.0	64.1	10.3	15.2	12.8	87.2	100.0(39)
$X^2(df)/F$			-		3.24*	6.0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p < 1.0$, * $p < .05$

〈부록 표 V-1-5〉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없음	아이 데리고 출퇴근 불편	운영 시간 짧음	야근 등 근시간 일정하지 않아 불편	학원 등의 이용 기회 없음	대기 기간 너무 길	기타	계(수)
전체	53.0	16.9	2.7	9.6	10.0	3.7	4.1	100.0(219)
영유아구분								
영아	50.7	21.9	1.4	9.6	8.2	4.1	4.1	100.0(73)
유아	52.2	14.2	2.7	9.7	11.5	4.4	5.3	100.0(113)
영유아	60.6	15.2	6.1	9.1	9.1	-	-	100.0(33)
지역구분								
대도시	52.4	17.5	3.2	9.5	6.3	6.3	4.8	100.0(63)
중소도시	51.3	17.9	2.6	10.3	13.7	2.6	1.7	100.0(117)
읍면지역	59.0	12.8	2.6	7.7	5.1	2.6	10.3	100.0(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1-6〉 직장어린이집 요구사항

단위: %(명)

구분	기타 비용 추가 지원	이용 편의 고려해 주는 분위기 조성	어린이집 입지조건 이나 시설환경 개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 위한 지원 확대				계(수)
전체	21.9	10.5	22.8	15.5	11.0	5.0	13.2	100.0(219)
영유아구분								
영아	21.9	13.7	23.3	4.1	11.0	12.3	13.7	100.0(73)
유아	23.9	8.0	19.5	20.4	11.5	1.8	15.0	100.0(113)
영유아	15.2	12.1	33.3	24.2	9.1	0.0	6.1	100.0(33)
$X^2(df)$				-				
지역구분								
대도시	19.0	15.9	15.9	12.7	20.6	7.9	7.9	100.0(63)
중소도시	23.9	7.7	27.4	14.5	7.7	5.1	13.7	100.0(117)
읍면지역	20.5	10.3	20.5	23.1	5.1	0.0	20.5	100.0(39)
$X^2(df)$				21.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부록 표 V-1-7〉 직장어린이집 계속 이용 의향 및 중단 시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장어린이집 계속 이용 의향					이용 중단계획 시 이유			
	자녀가 초등학 교 입학	이용 제한 연령 까지 보낼 계획	유치원 보낼 계획	영어학 원 등 다른 교육기 관 보낼 계획	계(수)	직장까지 거리가 멀거나 이동시간 길어서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 받게 하고 싶어서	기타	계(수)
전체	70.8	25.1	3.7	.5	100.0(219)	11.1	77.8	11.1	100.0(9)
영유아구분									
영아	47.9	47.9	2.7	1.4	100.0(73)	0.0	100.0	0.0	100.0(3)
유아	82.3	13.3	4.4	0.0	100.0(113)	20.0	60.0	20.0	100.0(5)
영유아	81.8	15.2	3.0	0.0	100.0(33)	0.0	100.0	0.0	100.0(1)
지역구분									
대도시	58.7	36.5	4.8	0.0	100.0(63)	33.3	33.3	33.3	100.0(3)
중소도시	76.9	18.8	3.4	.9	100.0(117)	0.0	100.0	0.0	100.0(5)
읍면지역	71.8	25.6	2.6	0.0	100.0(39)	0.0	100.0	0.0	10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현황과 요구」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1-8〉 일·자녀양육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없음	이른 출근으로 자녀 돌볼 수 없음	늦은 퇴근으로 자녀 돌볼 수 없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휴가 어려움	부모교육, 상담, 행사 등 참여 위해 휴가 어려움	토요일, 근로자의 대체휴일 출근 시 돌볼 수 없음	기타	계(수)
전체	5.9	14.7	11.8	42.6	7.4	11.8	5.9	100.0(68)
영유아구분								
영아	15.4	3.8	11.5	46.2	7.7	11.5	3.8	100.0(26)
유아	0.0	21.7	13.0	39.1	8.7	13.0	4.3	100.0(23)
영유아	0.0	21.1	10.5	42.1	5.3	10.5	10.5	100.0(19)
지역구분								
대도시	3.4	13.8	6.9	48.3	6.9	17.2	3.4	100.0(29)
중소도시	5.9	17.6	14.7	44.1	5.9	5.9	5.9	100.0(34)
읍면지역	20.0	0.0	20.0	0.0	20.0	20.0	20.0	100.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자녀양육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1-9〉 설치 현황

단위: %(명)

구분	설치유형		설치장소		설치 형태				계(수)
	단독	공동	사업장 내	사업장 밖	신축	사업체 건물 시설 전환	시설 매입 후 시설 전환	시설 임대 후 시설 전환	
전체	78.0	22.0	54.8	45.2	46.7	45.2	3.0	5.2	100.0(134)
사업체유형									
국가	90.0	10.0	50.0	50.0	51.6	48.4	0.0	0.0	100.0(31)
지자체	83.3	16.7	63.6	36.4	41.9	53.5	2.3	2.3	100.0(43)
학교, 기업	68.3	31.7	50.8	49.2	47.5	37.7	4.9	9.8	100.0(61)
X ² (df)	6.5(2)*		2.1(2)		-				
정원									
39인 이하	81.3	18.8	68.8	31.3	31.3	50.0	6.3	12.5	100.0(32)
40~79인	83.6	16.4	59.4	40.6	41.3	57.1	1.6	0.0	100.0(63)
80인 이상	66.7	33.3	35.9	64.1	67.5	22.5	2.5	7.5	100.0(40)
X ² (df)	4.2(2)		8.7(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 $p < .05$

〈부록 표 V-1-10〉 운영 형태 및 위탁체 유형

단위: %(명)

구분	운영형태			위탁체 유형			
	직영	위탁	계(수)	법인	대학	개인	계(수)
전체	13.4	86.6	100.0(134)	23.9	30.4	45.7	100.0(92)
사업체유형							
국가	6.5	93.5	100.0(31)	5.0	55.0	40.0	100.0(20)
지자체	4.8	95.2	100.0(43)	9.7	29.0	61.3	100.0(31)
학교, 기업	23.0	77.0	100.0(61)	43.9	19.5	36.6	100.0(41)
X ² (df)	8.8(2)*			20.6(4)***			
정원							
39인 이하	12.5	87.5	100.0(32)	10.5	21.1	68.4	100.0(19)
40~79인	14.3	85.7	100.0(63)	22.2	28.9	48.9	100.0(45)
80인 이상	12.8	87.2	100.0(40)	35.7	39.3	25.0	100.0(28)
X ² (df)	.08(2)			9.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록 표 V-1-11〉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업장 담당자의 어린이집 운영·보육 등 이해 부족	사업장과 동일 기준으로 자료 및 문서 요구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민원 제기	기타	계(수)
1순위	52.8	15.0	28.3	3.9	100.0(127)
2순위	23.4	37.4	28.0	11.2	100.0(107)
1+2순위	76.2	52.4	56.3	15.1	(1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원장 조사」 조사 결과임.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보육 공급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시군구 보육 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조사표 번호				시·도 번호		지역규모
						① 특·광역시의 동 ② 시도의 동 ③ 특광역시,시도의 읍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1. (문항 5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확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② 사업장의의지 부족
 ③ 정부의 법적 제재사항 미비 ④ 직장 내 보육수요 부족 ⑤ 기타()

6-1. (문항 6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② 정부의 의지 부족 ③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적근거 미비
 ④ 사업장의 의지 부족 ⑤ ⑥ 기타()

7-1. (문항 7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의 인식 부족 ② 부모의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부담
 ③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④ ⑤ 기타()

8-1. (문항 8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부모 선호도,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이 확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② 표준보육료에 미달하는 보육료 지원단가
 ③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공공성 부족 ④ 기타()

※ 다음 【보기】를 보고 문항 13~12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보 기 】	
1.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5. 직장어린이집 확충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3. 어린이집 서비스 계약제(공공형어린이집) 도입	7.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
4.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8. 부모 선호도, 체감도 높은 어린이집 확충

3. 위의 8가지 어린이집 확충 및 균형배치 세부과제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달성한 과제**는 무엇인지 1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번

4. 위의 8가지 어린이집 확충 및 균형배치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1가지만 골라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번

5.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II.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질문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 시군구의 지역 특성이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음 ② 대체로 많은 편임 ③ 적정함
 ④ 대체로 부족한 편임 (☞ 질문 1-1로) ⑤ 매우 부족함 (☞ 질문 1-1로)

1-1. (질문 1에서 ④,⑤에 응답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면, 귀 시군구에 몇 개소 정도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소 더 확충 필요

1-2. (질문 1에서 ④,⑤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귀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로 어떤 지역에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① 농·산·어촌 지역 ② 취약지역(다문화가족 등) ③ 저소득 밀집지역
 ④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⑤ 산업단지 ⑥ 기타()

2. 다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매입, 설치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② 민간어린이집 매입 ③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④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⑥ 민관연대 무상 임대 ⑦ 기타 ()

3. 귀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② 민간어린이집 매입 ③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④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⑥ 민관연대 무상 임대 ⑦ 기타 ()

3-1.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4. 귀 시군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① 예산 부족 ② 부지 확보 ③ 민간 어린이집 반대
 ④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⑤ 유치원 이용률 증가 ⑥ 기타 ()

5.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기준입니다.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기준	지원기준의 적절성			기준이 낮다, 또는 높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낮다	② 적정	③ 높다	
1) 신축	1-1) 개소당 330㎡까지 지원 1-2) 1,270천원/㎡				
2) 기존시설 전환	국비지원한도액 251,460천원				
3)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전환	50,000천원/개소				
4) 장애아 전문시설 신축	4-1) 개소당 396㎡까지 지원 4-2) 1,270천원/㎡				
5) 기자재 구입비	5-1) 신축(전환등 포함): 10,000천원/개소 5-2) 공동주택: 30,000천원/개소				

6.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비율(전체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을 30%라고 합니다. 귀하는 민간중시의 공급 구조와 저출산 심화, 정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동의 ② 부동의 ③ 동의 ④ 매우 동의

6-1. (① 매우 부동의, ② 부동의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수준을 적어 주십시오.

전체 영유아의 ()%

Ⅲ. 직장어린이집 관련 질문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무사업장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1)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2) 근로자 500명 이상				

2. 귀하는 다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낮다	② 적절	③ 높다
1) 시설전환비 단독 3억, 공동 6억			
2) 산단형 시설전환비 15억(90%), 시설매입비 40%			
3) 교재교구비(유구물품비) 5천만원(교체비 3년단위 3천만원)			
4) 융자지원 단독 7억, 공동 9억			
5) 인건비 월 80만원(중소기업 120만원)			
6) 중소기업 운영비			
- 40인미만 200만			
- 40-59인 280만			
- 60-79인 360만			
- 80-99인 440만			
- 100인이상 520만			

- 2-1. (문항 2에서 ① 낮다 ③ 높다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시설전환비 단독 3억, 공동 6억	
2) 산단형 시설전환비 15억(90%), 시설매입비 40%	
3) 교재교구비(유구물품비) 5천만원(교체비 3년단위 3천만원)	
4) 융자지원 단독 7억, 공동 9억	
5) 인건비 월 80만원(중소기업 120만원)	
6) 중소기업 운영비	
- 40인미만 200만	
- 40-59인 280만	
- 60-79인 360만	
- 80-99인 440만	
- 100인이상 520만	

3.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외에 세제혜택 등의 간접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업장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 ①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③ 개별소비세 면제
④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3-1. 문항 3의 보기 외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간접지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4. 최근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산업단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지원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낮다	② 적정	③ 높다
1) 무상지원			
시설건립 (전환)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 90%			
교재교구비 :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소요비용의 90%			
2) 용자지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연이율 1%			

4-1. (문항 4에서 ① 낮다 ③ 높다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무상지원	
시설건립 (전환)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산업단지형 15억원 소요비용 90%	
교재교구비 : 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소요비용의 90%	
2) 용자지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9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연이율 1%	

5.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의무 이행형태를 설치, 위탁, 수당 3가지에서 2015년 설치, 위탁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6. 다음은 위탁보육 시 기준입니다. 다음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합니까?

구분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1)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 부담				
2) 위탁률 30% 이행				

6-1. 문항 6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합니까?

1) 영유아 보육비용의 50/100 이상 부담	
2) 위탁률 30% 이행	

7. 정부는 미이행사업장에게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8.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업주, 근로자,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비교적 큼	⑤ 매우 큼
1)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2)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					
3) 가족친화경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					
4) 자녀양육 부담 경감					
5) 자녀양육비 경감					
6)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V.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5. 귀하는 보육업무를 맡은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년 ()개월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기관장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시도번호		지역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사업체 유형	① 국가	② 지자체	③ 학교	④ 기업
			③ 읍면지역	

※ 표 참고하여 ‘시도 번호’ 칸에 적어주세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 직장어린이집 현황 및 의견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 하거나 응답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 어린이집 설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단독

② 공동(대표 사업장 포함 개소)

2. 귀 어린이집의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사업장 내

② 사업장 밖 (☞ 사업장과 어린이집 간 거리: 차량 이용 시 _____분)

3. 귀 어린이집의 설치 형태는?

① 신축

② 사업체 건물 시설 전환

③ 시설 매입 후 시설 전환

④ 시설임대 후 시설 전환

4. 귀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직영

② 위탁

☞ 4-1. 위탁체 유형은?

① 법인

② 대학

③ 개인

5. 귀 어린이집의 맞춤반과 종일반 아동은 각각 몇 명입니까? 2016년 8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맞춤반 : () 명

2) 종일반 : () 명

- 12. 귀하는 사업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 법 준수 ② 직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③ 사회적 기여 ④ 기타()
- 13.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더 높여서라도 사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 14. 귀하는 어린이집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사업장 담당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사업장과 동일 기준으로 자료 및 문서 요구
- ③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및 민원 제기
- ④ 기타 (무엇:)

II. 인적사항

※ 다음은 응답자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 4. 귀하의 어린이집 총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개월
현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총		개월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본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6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시·도 번호		조사표 번호			지역규모
					① 특·광역시의 동
					② 시도의 동
					③ 특광역시,시도의 읍면

어린이집 명	
--------	--

I. 아동과 부모 관련 질문

1.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귀댁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이용 아동 ()명 연령 ()세, ()세, ()세

2.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아버지와 어머니 칸에 각각 적어주십시오.

(※ 빈 칸에 보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아버지	어머니
1) 만 연령	만()세	만()세
2) 부모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⑧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 부모의 취업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종일제 및 시간제 출근) ② 휴직 중 ③ 재택(가내) 작업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⑤ 미취업 ⑧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1) 취업 중인 경우, 직종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전문직 ④ 서비스 및 판매직 ⑤ 무직(전업주부 포함) ⑥ 부재 ⑦ 기타()		
4) 현 직장에서 근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년 개월
5) 현 직장에서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정규직(풀타임) ② 비정규직(풀타임) ③ 시간제		
6) 평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7)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기타()		
8)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II. 직장어린이집 이용 관련 질문

※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개월

2. 귀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내에 있어 함께 등·하원하기 편리해서 ② 집 주변에 자녀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③ 직장에서 운영하므로 급식, 프로그램, 교사 등 신뢰할 수 있어서
④ 시설, 환경이 우수해서 ⑤ 직장에서 이용하기를 권유해서
⑥ 비용이 저렴해서 ⑦ 기타(무엇:)

4.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업주, 근로자,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비교적 큼	⑤ 매우 큼
1)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2)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					
3) 가족친화경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					
4) 자녀양육 부담 경감					
5) 자녀양육비 경감					
6)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5. (문항 I-1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어느 정도 그러함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6. 귀하는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① 계획 있음 ☐ (문항 6-1로) ② 계획 없음 ③ 잘 모르겠음

6-1.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면,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어느 정도 그러함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7. 귀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근로자(영유아 부모)를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수당 지원 ② 보육료·교육비 지원 ③ 필요 없음 ④ 기타()

8.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으로 일반 어린이집 이용 시보다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1인당 월 ()원

IV. 직장어린이집 이용 애로 및 요구 관련 질문

1. 귀하는 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한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움 없음 ② 아이 데리고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③ 운영시간이 짧음 ④ 야근 등으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편함
⑤ 어린이집 외에 학원 등의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없음 ⑥ 입소하기까지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음
⑦ 기타()

2. 현재 직장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비용 추가 지원
② 직장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고려해 주는 분위기 조성(수유시간,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
③ 직장어린이집 현재 입지조건이나 시설환경 개선
④ 직장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⑤ 기타()

3. 귀 자녀가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 여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01) 원장					
02) 교사					
03) 주변환경					
04) 시설설비, 실내환경					
05) 교재교구 및 장비					
06) 내부 분위기					
07) 비용					
08) 건강관리					
09) 급간식관리					
10) 안전관리					
11) 교육내용					
12) 부모참여					
13) 부모교육 및 상담					

4.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이용
- ② 직장어린이집 이용제한 연령까지 계속 이용
- ③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임 ☞ (문항 4-1로)
- ④ 중간에 그만두고 유치원에 보낼 계획임 ☞ (문항 4-1로)
- ⑤ 중간에 그만두고 영어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에 보낼 계획임 ☞ (문항 4-1로)
- ⑥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돌볼 계획임 ☞ (문항 4-1로)

4-1. 현 직장어린이집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 계획으로
- ② 이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 ③ 직장까지 거리가 멀거나 이동시간이 길어서
- ④ 보다 질 높은 보육,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어서
- ⑤ 직장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 ⑥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 ⑦ 기타()

5. 귀하는 사업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법 준수
- ② 직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 ③ 사회적 기여
- ④ 기타()

6.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더 높여서라도 사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 ② 반대
- ③ 찬성
- ④ 매우 찬성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 및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본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6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시·도 번호		조사표 번호			지역규모
					① 특광역시의 동
					② 시도의 동
					③ 특광역시,시도의 읍면

사업체 명	
-------	--

I. 아동과 부모 관련 질문

1. 귀댁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포함) 가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조사 중단)
2. 귀댁의 자녀는 몇 명이고, 이중 미취학 자녀는 몇 세입니까? 미취학 자녀의 연령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이용 아동 ()명 연령 ()세, ()세, ()세
3.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아버지와 어머니 칸에 각각 적어주십시오.
 (※ 빈 칸에 보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아버지	어머니
1) 만 연령	만()세	만()세
2) 부모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⑧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 부모의 취업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종일제 및 시간제 출근) ② 휴직 중 ③ 재택(가내) 작업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⑤ 미취업 ⑧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1) 취업 중인 경우, 직종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전문직 ④ 서비스 및 판매직 ⑤ 무직(전업주부 포함) ⑥ 부재 ⑦기타()		
4) 현 직장에서 근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개월	년 개월
5) 현 직장에서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정규직(풀타임) ② 비정규직(풀타임) ③ 시간제		
6) 평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7)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기타()		
8)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II. 어린이집 이용 관련 질문

※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이 자녀의 양육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등) ② 유치원 ③ 학원(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④ 부모 직접 양육 ⑤ 혈연 양육(조부모, 친인척 등) ⑥ 비혈연 양육(보육모, 아이돌보미 등)
2. 귀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문항 2-1로) ② 집 주변에 자녀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③ 아이 데리고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문항 2-1로) ④ 아이를 돌봐줄 양육자가 있어서
 ⑤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⑥ 대기자가 많아서
 ⑦ 직장어린이집 입지조건 또는 시설이 열악해서 ⑧ 직장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⑨ 상사 및 동료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⑩ 기타(무엇:)

2-1.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고민해 본적 있음 ② 고민해 본적 없음

3. 귀하는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대기하였습니까?

- ① 현재 대기신청 중 ☞ (개월) ② 대기 신청한 경험 있음☞ (개월) ③ 대기 경험 없음

4. 귀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이용할 것임 ② 어느 정도 의향 있음 ③ 보통
④ 거의 이용 의향 없음 ⑥ 전혀 이용할 의향 없음 ⑥ 잘 모르겠음

5. (문항 1에서 '① 어린이집' 응답한 경우) 귀 자녀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만족 여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01) 원장					
02) 교사					
03) 주변환경					
04) 시설설비, 실내환경					
05) 교재교구 및 장비					
06) 내부 분위기					
07) 비용					
08) 건강관리					
09) 급간식관리					
10) 안전관리					
11) 교육내용					
12) 부모참여					
13) 부모교육 및 상담					

Ⅲ.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 관련 질문

1. 현재 직장 근무를 결정하거나 지속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그러함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2. 귀하는 직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근로자의 일-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됨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도움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되지 않음

3. 귀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다음의 측면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기여	② 어느 정도 기여	③ 보통	④ 기여하지 않음	⑤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자녀 안전에 대한 안도감					
2) 자녀가 보다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					
3)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4) 직장에 대한 애사심					
5) 업무 몰입도					
6) 직무 만족도					
7) 자녀양육 부담					
8) 자녀양육비 지출					

4. 귀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업주, 근로자,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비교적 큼	⑤ 매우 큼
1)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2)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					
3) 가족친화경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					
4) 자녀양육 부담 경감					
5) 자녀양육비 경감					
6)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5. 귀하는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① 계획 있음 (문항 5-1로) ② 계획 없음 ③ 잘 모르겠음

5-1.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자녀양육 방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그러함 ② 어느 정도 그러함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7. 귀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미이용 근로자(영유아 부모)를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수당 지원 ② 보육료·교육비 지원 ③ 필요 없음 ④ 기타()

8. 귀하는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이용 직원이 미이용 직원보다 어느 정도 비용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1인당 월 ()원

IV. 자녀양육 애로 및 요구 관련 질문

1. 귀하는 일-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움 없음
 ② 이른 출근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
 ③ 잦은 야근 등 늦은 퇴근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
 ④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휴가를 자유롭게 내기 어려움
 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부모교육, 상담, 행사 등 참여 위해 휴가 내기 어려움
 ⑥ 토요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등에 출근할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음
 ⑦ 기타()

2. 귀하는 현 직장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② 보육수당 지원
 ③ 육아휴직 기회 및 기간 보장 ④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⑤ 기타()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교육 인프라 공급 정책 평가에 관한 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수용계획 및 설립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공교육 인프라 확충 중심-을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유치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소속 지역

_____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유치원 공급 정책 성과 평가

※ 다음은 2007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유아교육 중장기계획(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유아교육 선진화 등) 중 「공립유치원과 공공성이 높은 유치원의 증설 및 균형 배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과제의 성과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각 과제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성과 평가							향후 지속추진 필요성				
	1	2	3	4	5	6	7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성과 전혀 없음			보통			성과 매우 큼					
1.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설치되었는가												
2.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가												
3.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확충되었는가												
4.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희시설을 활용하였는가												
5. 농산어촌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 모델이 육성되었는가												
6.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 해당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었는가												
7. 직장어린이집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계 운영하는가												
8. 시도별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는가												
9.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를 제시하고 있는가												

↑ _____ ↑
☛ ①~③ 응답시 문항 1-1~9-1 이동

※ (문항 1~9에서 ① ~ ③에 응답한 경우), 성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문항 1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아 수 부족 ② 설치비 등 예산 부족
 ③ 부지 확보의 어려움 ④ 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 ⑤ 기타()

2-1. (문항 2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원 우선순위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② 온라인 취원 신청 시스템 부재
 ③ 원아 수 부족으로 순위 적용 불필요 ④ 우선순위 지침 미준수 ⑤ 기타()

3-1. (문항 3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확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② 설치비 등 예산 부족
 ③ 부지 확보의 어려움 ④ 교사 TO 확보의 어려움 ⑤ 기타()

4-1. (문항 4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희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초등학교의 비협조 ② 초등학교 유희 공간 부족
 ③ 초등학교 시설 활용 시 환경개선 예산 부족 ④ 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 ⑤ 기타()

2. 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증설 실적과 2017년 증설 계획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증설실적이 없거나 계획이 없으면 '0' 을 적어 주십시오.(※ 해당년도는 유치원 설립 완료 시점을 의미함.)

구분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수	정원	유치원 수	정원	유치원 수	정원	유치원 수	정원
공립유치원 단설								
공립유치원 병설								

2-1. (문항 2에서 2016~2017년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이 있는 경우) 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은 공립유치원을 주로 어떤 지역에 확충하고 있습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농·산·어촌 지역 ② 취약지역(다문화가족 등) ③ 저소득 밀집지역
- ④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⑥ 기타()

3. 귀하는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운영 및 관리하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공립 단설 ()학급 ② 공립 병설 ()학급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장제16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원아 수는 관찰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학급당 원아수 차이가 큼니다. 시도별로 규정이 달라 국가 전체의 유치원 증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는 학급당 원아수를 17개 시도가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5. 만약 학급당 원아수를 17개 시도가 일괄 적용한다면,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독 연령 학급, 방과후과정반, 혼합연령 학급 별로 적정 유아 수를 적어 주십시오.

구분	단독 연령 학급			혼합 연령			방과후과정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1학급 당 원아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6. 공립유치원 설치 시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력에 대해 빈 칸에 ✓표해 주십시오. 공립 단설과 공립 병설 유치원(3학급 이상)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공립 단설						
공립 병설(3학급 이상)						

6. 귀하는 공립유치원이 주로 어떤 지역에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 ① 농산어촌 지역 ② 취약지역(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 ③ 저소득 밀집지역
- ④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⑤ 기타()

7. 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우선순위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1, 2순위로 나누고,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을 부여한 후 합산한 총점으로 입소 아동을 정합니다.

유치원 우선순위도 교육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각각의 조건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 **공공형유치원 도입 및 운영**

8.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으로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선정조건을 통과한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교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공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공형유치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문항 8-1) ② 반대 (☞문항 8-1)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공형유치원’이란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엄격한 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8-1. (문항 8에서 ‘반대’ 한다고 응답한 경우) 공공형유치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② 정부의 재정 낭비
③ 근본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어려움 ④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의 교사 자질 향상 어려움
⑤ 기타()

8-2. (문항 8에서 ‘찬성’ 한다고 응답한 경우) 공공형유치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 공공형유치원 제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계의 투명성 확보 ② 교육의 질 확보
③ 재정운영의 안정성 ④ 교사의 전문성 확보
⑤ 학부모 만족도 향상 ⑥ 학부모의 비용 부담 절감 ⑦ 기타()

9. 귀하는 공공형유치원을 전국 확산할 경우, 다음의 선정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with 5 columns: 구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Rows include 12 selection criteria for public kindergartens such as land availability, teacher salaries, and information disclosure.

9-1. 문항 9에 제시한 1)~7)번 보기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Empty box for additional comments]

III. 인적사항

-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① 7급 ② 6급 ③ 5급 ④ 장학관
⑤ 장학사 ⑥ 연구관 ⑦ 연구사 ⑧ 기타()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교육 인프라 공급 정책 평가에 관한 조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표 번호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국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공교육 인프라 확충 중심-을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유치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김정민 연구원(02-398-7757, cjdwnsk@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기관명	유치원				
기관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전화번호	() -				
응답자 성명		조사일자	2016년	월	일

I. 유치원 일반 사항

1. 귀 유치원의 기관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공립 단설

② 공립 병설

2. 귀 유치원의 연령별 학급수와 현원(2016년 3월 기준)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학급과 원아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십시오.)

구분	전체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3-5세 혼합반
학급 수	반	반	반	반	반
원아 수	명	명	명	명	명

3. 귀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수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원장	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II. 유치원 공급 정책 성과 평가

※ 다음은 2007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유아교육 중장기계획 중 「공립유치원과 공공성이 높은 유치원의 증 설 및 균형 배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과제의 성과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각 과제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성과 평가							향후 지속추진 필요성				
	1	2	3	4	5	6	7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성과 전혀 없음			보통			성과 매우 큼					
1.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위주로 설치되었는가												
2.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하는가												
3.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확충되었는가												
4.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희시설을 활용하였는가												
5. 농산어촌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 모델이 육성되었는가												
6.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 당해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었는가												
7. 직장보육시설과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하는가												
8. 시도별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는가												
9.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를 제시하고 있는가												

↑ ↑
 ☞ ①~③ 응답시 문항 1-1~9-1 이
 등

※ (문항 1~9에서 ① ~ ③에 응답한 경우), 성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문항 1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아 수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부지 확보의 어려움 ④ 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 ⑤ 기타()

2-1. (문항 2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원 우선순위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② 취원 시스템 부재
③ 원아 수 부족 ④ 기타()

3-1. (문항 3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확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② 예산 부족
③ 부지 확보의 어려움 ④ 교사 TO 확보의 어려움 ⑤ 기타()

4-1. (문항 4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의 비협조 ② 초등학교 유휴 공간 부족
③ 초등학교 시설 활용 시 환경개선 예산 부족 ④ 교육청의 의지 부족 ⑤ 기타()

5-1. (문항 5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농산어촌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 모델이 육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아 수 감소 ② 부모들의 혼합연령 학급 기피
③ 인력 부족 ④ 예산 부족 ⑤ 기타()

6-1. (문항 6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 당해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수요 부족 ② 해당 기관의 의지나 필요성 부족 ③ 유치원 설립기준 충족의 어려움
④ 정부의 지원 부족 ⑤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비 부족 ⑥ 기타()

7-1. (문항 7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직장보육시설과 시설 및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처간 협력 부족 ② 시설 및 운영기준, 교사 자격체계의 상이성
③ 조정자(cordinator) 부재 ④ 기타()

8-1. (문항 8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시도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어려움 ② 예산 부족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신뢰성 확보 실패 ④ 기타()

9-1. (문항 9에서 ①~③ 응답한 경우)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의견 조율 실패 ② 유치원 취원조사의 신뢰도 확보 실패
③ 기관의 인건비 부담 가중 ④ 기타()

※ 다음 【보기】를 보고 문항 10~12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0. 【보기】에 제시한 공립유치원 확충 관련 세부과제 중 성과를 가장 많이 달성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제 1가지만 골라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번

11. 【보기】에 제시한 공립유치원 확충 관련 세부과제 중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제 1가지만 골라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번

【 보 기 】

- | | |
|-----------------------------------|---------------------------------------|
| 1.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없는 지역 위주로 설치 | 6.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 당해기관 내 부설유치원 자율 설립 |
| 2. 공립유치원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 적용 | 7. 직장보육시설과 시설 및 인력 등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 |
| 3.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 확충 | 8. 시도별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실시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
| 4. 공립유치원 확충 시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 9.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
| 5. 농산어촌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 모델 육성 | |

12.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Ⅲ. 유치원 설치 및 운영

1. 귀하는 재직 중인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 공립유치원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함 ② 대체로 부족한 편임 ③ 적정함
④ 대체로 충분한 편임 ⑤ 매우 충분함

2. 귀하는 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 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공립 단설 ()학급 ② 공립 병설 ()학급

3. 귀하는 공립유치원에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력에 대해 빈 칸에 ✓표해 주십시오. 공립 단설과 공립 병설 유치원(3학급 이상)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원장	원감	부장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공립 단설						
공립 병설(3학급 이상)						

4. 귀하는 공립유치원이 주로 어떤 지역에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가지 선택)

- ① 농산어촌 지역 ② 취약지역 ③ 저소득 밀집지역
④ 공립유치원 미설치 지역 ⑤ 기타()

5. 귀 유치원은 취원아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까?

- ① 예(☞ 문항 5-1로) ② 아니오

5-1. 귀 유치원이 취원아 선정 시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순위	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6. 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우선순위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1, 2순위로 나누고,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을 부여한 후 합산한 총점으로 입소 아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우선순위도 교육의 필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누고, 각각의 조건에 점수를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연구보고 2016-09

공보육교육 공급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80-6 93330